사회복무·동원분야 등

- 사회복무요원 ····· 15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99
- 승선근무예비역 ····· 199
- 병력동원소집 ····· 221
- 병력동원훈련소집 ····· 251
- 향토예비군 편성 ····· 311
- 병적증명 ····· 331
- 병역공개 ····· 349
-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등 ····· 361
- 병역관련 기타 참고사항 ····· 373

목 차

01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의의 ····· 17
- 사회복무요원의 종류 및 복무형태 ····· 17
- 사회복무요원 배정 ····· 19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 19
-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 ····· 20
- 선복무 ····· 21
- 소집기일 연기 ····· 22
-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 22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선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연기 안내 ····· 23
- 복무기본교육 ····· 23
- 복무지도교육 ····· 26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 27
- 분할복무 ····· 30
- 복무기관 재지정 ····· 31
-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31
- 질의/응답
  - 사회복무요원 소집 제도란? ····· 40
  - 사회복무요원 종류와 임무 및 복무기간을 알려주십시오 ····· 41
  -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42
  -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절차는? ····· 43
  - 예술·체육요원의 선발 및 추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44
  - 행정관서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하는 지역기준(소집단위)은? ····· 45
  -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 46
  - 인터넷 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방법 및 절차는? ····· 47
  - 복무기관과 복무 분야의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49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된 사람의 소집연기 절차는? ····· 51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입영여비 지급방법은? ····· 57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한지? ····· 58
● 사회복무요원의 입영부대 귀가자에 대한 조치 사항은? ····· 59
● 사회복무요원 4주 기초 군사훈련 종료 후 첫 출근은 언제인지? ····· 60
● 선복무 신청절차는? ····· 61
●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시 복무단축은 얼마나 되나요? ····· 62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 63
● 사회복무 소집해제 일자에 근접하여 국외여행이 가능한가요? ····· 64
● 질병으로 복무 분야나 근무지를 변경 할 수 있습니까? ····· 65
● 복무기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지방병무청에 재검신청이 가능한지? ····· 66
●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 그 근무시간에 대한 적용 범위는? ····· 67
● 주5일 근무제가 아닌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은 별도휴가 등 보상여부? ····· 68
● 복무 중에 방송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수학 가능 여부는? ····· 69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70
● 행정관서요원이 복무 중에 분할복무 신청 방법 및 사유는 무엇인가요? ····· 71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 72
●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 73
● 중식비와 교통비가 복무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74
● 실제 소요되는 출·퇴근 교통비를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 75
● 복무 중 질병이 발생 시 치료비를 복무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 76
● 복무 중 순직, 공무상 부상으로 소집 해제된 경우 보상내용과 절차는? ····· 77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실시할 수 있는 연가기간은? ····· 78
●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이월 가능여부? ····· 79
● 「주·야간근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무는? ····· 80
● 사회복무요원의 병가기간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는지요? ····· 81
● 복무기관장이 병가를 허가 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 82
● 복무 중에 지병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상 병가인가요? ····· 83
●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부상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 여부? ····· 84
● 직계 존·비속이 사망 또는 결혼을 할 경우 공가 처리기준은? ····· 85

- 선임 사회복무요원이 근무기강을 이유로 부당 대우를 하는 경우는? ····· 86
- 전산관련 업무 수행시 현역병 전역자와 같이 주특기경력 인정여부? ····· 87
- 공무원시험 응시나 취업 시 경력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 88
- 복무이탈 및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내용은? ····· 89
- 복무 중 전 가족 이사 시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 90
- 외항선 선원으로 승선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병역관계는? ····· 91
-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4년 동안 소집되지 아니할 경우 면제가 되나요? ····· 92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사유와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 93
- 소집 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94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 95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복무기간은? ····· 96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지도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 97
- 사회복무포털 로그인 오류시 조치? ····· 98

0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의 ····· 101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 102
-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 108
- 업종변경 통보 등 ····· 109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 110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 111
- 전문연구요원 편입 ····· 113
- 기간산업(방위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 115
-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병역판정검사 ····· 120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 121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122
-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 122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겸직, 전직, 파견, 국외여행, 교육 등) ····· 123
■ 신상변동통보 ····· 134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 135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 137
■ 휴가·병가 등 ····· 139
■ 의무복무 기간의 만료 ····· 140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병역처분변경 ····· 142
■ 실태조사 ····· 142
■ 질의/응답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와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 146
● 병역지정업체 선정 접수처 및 추천권자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 148
● 각 지역 중소기업청 접수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 149
●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순위 결정 ····· 150
● 병역지정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할 때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152
●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 153
● 병역지정업체 명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 154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기준은 어떠한지요? ····· 155
● 병역지정업체의 인원배정이 제한되는 경우는? ····· 156
●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는 어떠한지요? ····· 158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159
●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161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63
● 대학원 학력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 164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구비서류와 제출기일은? ····· 165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는? ····· 166
● 농·어업 분야 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과 절차는? ····· 167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자원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 168
● 의무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 169
●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분야는 무엇인지요? ····· 170
● 의무복무 기간 중에 다른 직무의 겸직이나 수학이 가능한지요? ····· 171

- 의무복무 기간 중에 전직이 가능한지요? ····· 172
- 승인전직절차는 어떠한지요? ····· 174
- 전직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175
- 전직 대기 기간은 어떠한지요? ····· 176
-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 시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한가요? ····· 178
- 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179
-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 180
- 국외여행을 할 경우 범위와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 181
- 복무 중 국내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가 가능한지요? ····· 182
- 군사교육소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 184
-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보수 지급 ····· 185
-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복무기간 단축은 어떻게 되는지요? ····· 186
-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187
-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무엇입니까? ····· 188
- 의무복무 기간 끝났을 때 복무만료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189
- 신상변동통보 사유는 무엇입니까? ····· 190
-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192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관리 위반시 처벌은? ····· 193
- 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구제절차는? ····· 195
- 휴가 등 복무관련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 196
- 대학생이 현역으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한지요? ····· 198

03 승선근무예비역

- 승선근무예비역 의의 ····· 201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 203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 205
-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등 ····· 206
- 실태조사 등 ····· 206

■ 질의/응답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업체가 해당되는 지요? ····· 208
● 승선근무예비역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및 배정 절차는? ····· 209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대상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 210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과 휴가나 병가 등은 어떻게 되나요? ····· 211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 다른 업체로 이직하고 싶은데, 조건은? ····· 212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 213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와 복무기간 단축은? ····· 214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 퇴직 등 신상변동 사유와 조치사항은? ····· 215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방법은? ····· 216
●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군사훈련) 기간, 시기 등은 어떻게 되나요? ····· 217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이 끝나는 경우 복무만료 절차는? ····· 218
● 승선근무예비역을 채용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 219

04 병력동원소집

■ 병력동원소집의 의의 ····· 223
■ 병력동원지정 ····· 224
■ 전시근로소집 ····· 225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 225
■ 질의/응답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편성 연령은? ····· 228
● 병력동원 단계는? ····· 229
● 병력동원소집 방침은? ····· 230
● 병력동원소집 지정보류 대상자는? ····· 231
● 동원지정 방침은? ····· 233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및 관리는? ····· 234
● 병력동원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차이는? ····· 236
● 연차초과자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처리절차 및 기준은? ····· 237

- 전시근로소집대상자 소집점검 및 불참자 처리는? ····· 238
- 국방동원정보체계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 239
-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절차는? ····· 240
- 병력동원소집 초과 및 착오 입영자, 지연 도착자 처리는? ····· 241
- 국외체재 귀국자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처리는? ····· 242
-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대상 직위는? ····· 243
- 국가동원령 선포와 동시 후순위조정 대상 직위는? ····· 245
-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승인절차는? ····· 247
-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취소 요건은? ····· 248
- 후순위조정자 신상변동(퇴직, 보직변경 등) 미통보 시 벌칙규정은? ····· 249

05 병력동원훈련소집

- 병력동원훈련소집 의의 ····· 253
- 전시근로소집점검 ····· 253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및 통지서교부 ····· 254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리 ····· 255
- 권역화부대 동원지정자 훈련소집 ····· 257
- 훈련소집 자원입영 희망자 처리 ····· 258
-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연기 ····· 258
- 질의/응답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 및 훈련기간은? ····· 264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전국단위 및 휴일훈련 포함여부는? ····· 265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재소집 훈련 대상은? ····· 266
  - 연차 이내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미참석자 훈련시간은? ····· 267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별 소집시간 및 방법은? ····· 268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일정 사전확인은? ····· 269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자 여비 지급기준은? ····· 270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개별입영 신청 방법 및 여비 지급은? ····· 272
● 거주지 이동자 통지취소 및 입영기준은? ····· 273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연기처리 절차 및 기준은? ····· 275
● 예비역 간부 진급시험 합격자 동원훈련 부과 및 면제여부? ····· 276
● 현역복무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고 싶을 때 신청 절차 ····· 277
● 올해 동원훈련을 받았는데 충무훈련 통지서가 나온 경우 ····· 278
● 장기출타자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통지서 수령방법? ····· 279
● 부분동원 제도 도입배경 및 개념은? ····· 280
● 부분동원 대상자 부분동원령 선포 시 입소 방법은? ····· 281
● 동원미참 훈련 등 훈련 일부이수자 처리는? ····· 282
● 동원미참 훈련과 동원훈련 통지서 중복수령 시 훈련 참가 우선순위는? ····· 283
● 동원훈련통지자 중 동원지정 삭제 통보시 동원훈련 입소여부는? ····· 284
● 거주지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까? ····· 285
● 질병사유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연기신청 및 처리는? ····· 286
● 주요업무수행사유 연기신청 시 구비서류 및 출원 절차는? ····· 287
● 중학교 기간제 교사 재직자 연기신청 및 처리는? ····· 289
●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기준 및 동원훈련은? ····· 290
● 신분증 분실자 동원훈련 입영 시 조치방법은? ····· 291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필증 분실자 재발급 신청 및 발급절차는? ····· 292
● 질병(중증질환자 포함)사유 병역처분 변경원 출원절차는? ····· 293
● 동원훈련 및 동원미참(향방훈련)교육 대상자 훈련시간은? ····· 294
● 법규 및 방침보류 직종은? ····· 295
● 동원훈련과 예비군교육훈련(향방훈련)의 차이점은? ····· 301
● 공중보건의사 등 소집해제자 동원지정 및 동원훈련 실시 여부는? ····· 302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물은? ····· 303
● 각 군별 병력동원 훈련 입영 및 퇴소 시간은? ····· 304
●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입영신체검사 귀가자 처리는? ····· 305
● 국외 출국자 예비군 훈련 부과는? ····· 306
● 전역증 재발급 ····· 307

- 예비군 복무위반자 벌칙규정은? ····· 308
- 동미참 8시간 이수했는데 동원훈련 통지되었을 때 ····· 309
- 동원훈련 일부시간 이수 후 조기퇴소한 경우 잔여훈련 시간? ····· 310

06 예비군 편성

- 예비군 임무 ····· 313
- 예비군 편성 ····· 313
- 예비군 편성(제외)대상 및 훈련 ····· 314
-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 교육훈련 ····· 316
- 질의/응답
  - 예비군 편성 대상은? ····· 322
  - 재복무 후 전역한 자 연차 적용은? ····· 323
  - 예비군편성 제외 대상은? ····· 324
  - 직장예비군부대 편성방침 및 기준은? ····· 325
  -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승인, 승격, 격하 및 해체절차는? ····· 326
  - 예비군 자원관리 책임은? ····· 328
  - 예비군자원 신규편성 절차는? ····· 329
  - 수형자 예비군훈련 부과 및 면제는? ····· 330

07 병적증명

- 병적증명서 ····· 333
- 군입영 사실확인서 ····· 333
- 복무확인서 ····· 334

■ 병역증, 전역증 재발급 ····· 334
■ 지방병무청 민원실 연락처 ····· 334
■ 병적기록 등 개인정보 열람 ····· 335
■ 질의/응답
● 병적증명서 발급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336
● 공직자신고용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 338
●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 339
●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340
● 사병 복무중 장교로 임관 전역시 군경력 확인용 병적증명서 발급절차? ····· 341
● 병역증과 전역증 재발급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 342
● 영문병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343
● 군입영사실확인서, 대체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 절차 ····· 344
● 병적기록표 사본 발급 절차 ····· 345
● 군번을 모를 경우 군번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 346
● 현역부적합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편입 후 소집해제된 사람의 병적증명서 ····· 347
● 사회복무요원으로 관용차량 운전시 군운전경력 병적증명서 발급 가능한지 ····· 348

08 병역공개

■ 질의/응답
●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신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351
●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대상자 및 신고 시기,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 353
●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요? ····· 354
● 만18세 되는 아들의 병역사항은 생일이 지난 후에 신고해야 되나요? ····· 355
● 최초 병역사항 신고와 병역사항 변동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356
● 질병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질병 명을 비공개로 할 수는 없나요? ····· 357
● 병무청으로 병역사항 신고서류 제출 시 원본을 보내야 되나요? ····· 358
●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 이후 퇴직 등 직위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359
●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요? ····· 360

09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등

■ 질의/응답

- 병무사범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 363
-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안내하여 주십시오. ····· 364
- 36세가 아닌 38세로 의부부과 면제연령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나요? ····· 365
- 병역의무 불이행자들은 사회적 활동 및 각종 인·허가 제한 내용은? ····· 366
- 입영기피자를 채용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367
-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368
- 병무사범에 대한 벌칙 및 제재내용이 궁금합니다. ····· 369

10 병역관련 기타 참고사항

■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2017년도) ····· 375

■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비교 ····· 376

■ 현역병과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비교 ····· 376

■ 소집의 종류 ····· 377

■ 병력동원훈련과 향토예비군 훈련의 비교 ····· 377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378

■ 스마트 앱 서비스「병역안내」이용 ····· 380

■ 병무청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 382

■ 유관기관 연락처 안내 ····· 383

■ 질의/응답

- 병역명문가 신청 자격과 선정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387
- 스마트폰에서 병무청 앱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 389
-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며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 391
- 군복 중 사망 의병제대를 하였을 경우 국가보훈 혜택을 받는 절차는? ····· 392
-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수정 ····· 393
- 홈페이지 이용시 병무민원포털 접속에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394

01 사회복무요원



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제도의 의의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필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95년부터 시행)

사회복무요원의 종류 및 복무형태

행정관서요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업무	복무분야	주 임 무	부수 임무	복무형태	복무기관 또는 근무처
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물품관리 복지사무 등 지원 • (사회복지관련 공공단체)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지원	• 기관 운영과 관련된 지원 업무 * 부수임무 수행조건 - 공익목적 수행 범위 -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 부수임무 예시 - 청소, 제설 작업, 행사 지원 등 * 부수임무 제한 -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 풍속사범 단속	주간 또는 주·야간	사회복지시설, 보훈요양원, 대한적십자사,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관련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물품전달 업무 등 사회복지 담당업무 지원		주 간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국민건강 보호·증진업무 지원	• 방역·소독·식품위생 등 주민건강사업 활동 등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국립검역소, 보건(지)소
	환자구호업무 지원	• 약품관리·119응급구조·환자이동 등 의료지원 활동 등 지원		주간 또는 주·야간	국·공립병원, 소방서,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국립대학병원

업무	복무분야	주 임 무	부수 임무	복무형태	복무기관 또는 근무처
교육문화	교과·특기적성 지도 등 학습 지원	●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학생에 대한 교과·특기적성 지도, 학습활동, 등·하교 지도 등 지원	●기관운영과 관련된 지원업무 * 부수임무 수행조건 - 공익목적 수행 범위 -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 부수임무예시 - 청소, 제설작업, 행사지원 등 * 부수임무제한 -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 풍속사범 단속	주 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포함)
	장애학생활동 지원	●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활동, 승·하차 지도·취식 등 지원		주 간	교육청 및 초·중·고(사립포함)
	문화재관리 지원	● 궁·능 등 유형 문화재를 보호·감시		주간 또는 주·야간	궁·능관리소, 지방자치단체
환경안전	환경 보호·감시지원	● 산림방재·녹지정화, 하천·해양·대기·토양 등 오염방지, 취·정수장 등 보호·감시		주간 또는 주·야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녹지정화 등)
	재난·안전 관리 지원	● 자연재해(지진 · 태풍 · 홍수 · 해일 ·가뭄 등)나 인재(화재 및 주택붕괴 등 안전사고)의 예방·관찰·지도, 사회질서(재래시장 등) 유지		주간 또는 주·야간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해양항만청,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행정	일반행정 지원	●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기관 경비지원 분야 외의 복무분야에서 사무보조·민원안내·상담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각종 공사·공단, 공공단체, 교육청 및 초·중·고
	행정기관 경비지원	● 관공서 등 시설의 방호·경비 등		주간 또는 주·야간	행정기관, 항만공사

* 단속, 금전 취급, 개인정보 취급 등 비리 또는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는 담당직원과 합동 근무

● 예술·체육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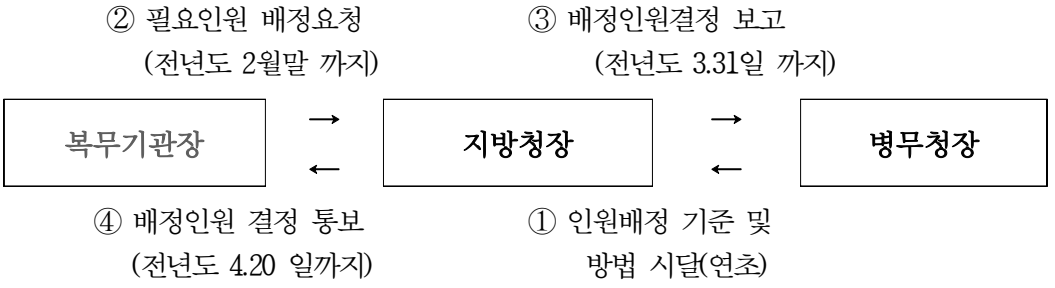
보충역, 현역병 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을 받고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해당 특기 분야 근무

사회복무요원 배정

의의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의 다음 해 사회근무요원 필요인원에 대하여 지역별로 예측된 가용자원을 복무기관 단위로 할당하는 것을 말함

배정업무 흐름



배정순위

기관 / 분야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	1	2	3	4
보건의료	×	5	6	7
교육문화/환경안전	×	8	9	10
행정지원	×	11	12	13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행정관서요원

- 매년 병무청장이 정하는 병역처분 기준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결과 학력, 신체등급, 나이 등 자질을 고려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2016년 : 고등학교중퇴 이하, 신체등급 4급, 36세 이상 ('1979. 12. 31. 이전 출생자는 31세 이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상이 정도 6급 이상)이 있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그 밖의 군간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중방역수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에의 편입이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및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전시근로역 중 질병, 심신장애 치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예술·체육요원

- 예술 분야
  -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에 한함)하거나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 국제 음악경연대회 인정범위 [별표 2], 국제 무용경연대회 인정범위 [별표 3], 국내예술경연대회 인정범위 [별표 4] 참조
  - 「문화재 보호법」 제24조(중요 무형문화제의 지정)에 따른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자격을 얻은 사람(연극, 음악, 무용, 공연예술, 의식, 놀이, 용구의 제작수리 등)
- 체육 분야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 입상한 사람
    ※ 단체경기 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함

■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

●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제외자(전시근로 소집 대상자)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제21조의2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산 6개월이 초과된 사람
  -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 포함)된 사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107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제외자

- 현역병 외의 신분으로 복귀된 후 2년 이내에 현역병(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제9항에서 같다) 또는 승선근무예비역·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예술 · 체육요원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거나 의무복무하게 되는 사람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그 밖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
- 1990년 이전 출생 정신과 4급인 자 및 문신4급자로 정신과 3급인 자 군사교육소집 제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개정사항(17.1.1.부 시행)]

■ 선복무

● 대상자 및 선복무 시기

-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인 사람 : 매년 3월 이전
  ※ 30세 이후에 소집 대상자로 된 사람은 자원인수 즉시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다만, 기피,행방불명자,통지 후 타도전출 사유 우선의무부과 의뢰된 자, 위장 전입자 제외)로서 선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귀가 또는 퇴영일로부터 30일 이내 선복무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3개월 범위 내
  ※ 다만, 귀가 또는 퇴영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소집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소집일자 연기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 준용
  다만, 질병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사람이 5회를 초과하여 연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소집일자를 연기 할 수 있음
- 「병역법 시행령」 제52조제7호(현역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에 따른 별도소집 대상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자, 선 복무신청 또는 선 복무 중 군사교육소집, 우선복무신청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8호(기타사유)의 연기 제한(선복무자의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는 2회로 제한, 연령제한은 없으며, 소집일자 연일자수는 합산하지 않음)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이 곤란하다고 지방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

참고사항

- 소집일자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소집통지 전일까지는 취소 가능 및 재선택 1회 가능, 소집통지 후에는 취소불가하며 연기는 질병, 직계존비속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국외여행, 각급학교 입학시험 응시 사유만 가능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배 경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남는 지역과 낙도· 원거리 거주로 장기간 대기로 인한 사회진출 지장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자 일정기간 소집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보충역 편입년도를 감안 전시근로역에 편입

대기기간 등

- 대기기간 및 편입시기 : 4년 대기, 5년차 1월1일 전시근로역 편입
  다만, '03년 12월 31일부로 종전 규정 해당자는 종전규정 적용 처분
-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중인 사람, 주민등록 말소 중인 사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제외

장기대기기간 기산

- 보충역 처분 또는 연기 사유가 해소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하며, 병역판정검사·재신체검사·정밀검사 시 신체등급·전공상·수형·학력 사유로 이미 보충역 처분 요건을 갖추었으나 행정처리, 서류보완, 재신체검사 또는 정밀검사로 다음 해에 보충역 처분된 경우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
-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학력 및 실거주 여부 확인 실태조사 실시
- 국외입영연기자의 해외체류기간 합산 180일까지는 장기대기기간에서 미공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선원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연기 안내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처분된 이후, 최초의 승선 출국일로부터 3년 이상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때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 선원의 연기 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 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하고, 하선 후 6월 이내 재승선한 때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하선 기간은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하선 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하선기간이 1년 기간 내에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원연기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됨

복무기본교육

교육 목적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공무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 자세 확립, 책임의식 및 봉사정신 등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 양성

교육주관 : 병무청장(사회복무연수센터)

※ 직무교육 : '10년부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 실시

대상자 선발기준

- 기본과정

- 1순위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가 빠른 순
- 2순위 : 생년월일이 빠른 순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선발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 선발

1.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3호)
2.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사람(「병역법」 제55조3항)
3. 기초군사훈련실시 대상자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선 소집된 사람(「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제1호)
4. 전·공상 사유보충역

• 리더양성과정

- 교육대상 : 기본과정을 수료한 사회복무요원 대표자 또는 1년 이상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

※ 중증 정신질환사유로 2회 이상 연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교육선발을 보류하고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교육 실시

● 교육실시 시기

• 기본과정

-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군사교육소집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

• 리더양성과정

- 사회복무요원대표자 : 기본과정 수료 후 실시
- 1년 이상 성실복무자 : 지방청별 복무인원 및 당해연도 계획 인원을 고려하여 복무기관별 적정인원 선잘 실시

● 교육기간 및 과정

• 기본과정 교육기간 : 4박5일(합숙)

- 교과목 및 시간표

<table>
<tr><th>구분</th><th>1일차(5h)</th><th>2일차(9h)</th><th>3일차(9h)</th><th>4일차(9h)</th><th>5일차(2h)</th></tr>
<tr><td>09:00~10:00</td><td rowspan="3">이동 및 입교</td><td rowspan="3">성격유형 검사를 통한 자기이해</td><td rowspan="3">셀프리더십을 통한 자기관리</td><td rowspan="2">갈등해결을 위한 소통방법</td><td>나눔의 의미와 사회복무실천다짐 (09:30~10:30)</td></tr>
<tr><td>10:00~11:00</td><td>반별수료식, 설문 (10:30~11:00)</td></tr>
<tr><td>11:00~12:00</td><td>공익광고발표③</td><td>수료식대강당(11:00 ~11:30)</td></tr>
<tr><td>12:00~13:00</td><td colspan="4">점심식사</td><td>점심식사 (11:30~12:30)</td></tr>
<tr><td>13:00~14:00</td><td>입교식/OT</td><td rowspan="2">공익광고 제작①</td><td rowspan="2">공동체와 나</td><td rowspan="2">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td><td rowspan="6">귀 가</td></tr>
<tr><td>14:00~15:00</td><td>팀빌딩</td></tr>
<tr><td>15:00~16:00</td><td rowspan="2">사회복무요원의 역할 이해</td><td rowspan="2">국가안보의 중요성 이해</td><td rowspan="2">공익광고 제작②</td><td rowspan="2">복무윤리와 기본예절</td></tr>
<tr><td>16:00~17:00</td></tr>
<tr><td>17:00~18:00</td><td>복무규정의 이해</td><td colspan="3">저녁식사</td></tr>
<tr><td>18:00~19:00</td><td>저녁식사</td><td rowspan="2">실내외 활동</td><td rowspan="2">사회재난과 안전</td><td rowspan="2">화합 · 소통의 장</td></tr>
<tr><td>19:00~20:00</td><td>〈숙소 정리〉</td></tr>
</table>

• 리더양성과정 교육기간 : 2박3일(합숙)

- 교과목 및 시간표

<table>
<tr><th>구분</th><th>1일차(6h)</th><th>2일차(9h)</th><th>3일차(4h)</th></tr>
<tr><td>09:00~10:00</td><td rowspan="3">이동 및 입교</td><td rowspan="3">능동적 Followship</td><td rowspan="2">긍정 에너지 발휘
(09:30~11:30)</td></tr>
<tr><td>10:00~11:00</td></tr>
<tr><td>11:00~12:00</td><td>설문, 수료
(11:30~12:00)</td></tr>
<tr><td>12:00~13:00</td><td colspan="3">점심식사</td></tr>
<tr><td>13:00~14:00</td><td>입교식/오리엔테이션</td><td rowspan="2">실내외 활동(야외)</td><td rowspan="8">귀가</td></tr>
<tr><td>14:00~15:00</td><td rowspan="3">팀빌딩/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나의 가치 찾기</td></tr>
<tr><td>15:00~16:00</td><td rowspan="2">주도적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td></tr>
<tr><td>16:00~17:00</td></tr>
<tr><td>17:00~18:00</td><td colspan="2">저녁식사</td></tr>
<tr><td>18:00~19:00</td><td rowspan="2">리더십 UP(리더십 영화감상)</td><td rowspan="2">공동체 게임 및 간담회</td></tr>
<tr><td>19:00~20:00</td></tr>
</table>

● 교육장소

• 사회복무연수센터 :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 교육센터 약도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청 모바일 홈페이지(m.mma.go.kr)의 "찾아가는 길" 참조

● 복무기본교육 연기 대상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 퇴교 및 유급자 처리 기준

- 퇴교처분사유 : 교육태만, 수업거부,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유급처분 사유 :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결석한 때

※ 퇴교자는 교육센터에서 경고장 교부, 교육불참자는 복무기관에서 사유확인 후 명령위반 경고 또는 복무이탈자로 처리

■ 복무지도교육

● 개 요

복무규율 위반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복무부실예방 및 성실복무 유도

● 업무흐름도

	연간계획 공지	⇒	월 계획 공지	⇒	교육생 추천	⇒	선발 및 통지	⇒	
시기	연 초		실시 전월 초 (매월)		교육실시 전월 (지정일자 공지)		교육생에게 2주전 통지		교육실시
방식	사회복무포털		사회복무포털		사회복무포털		최종선발 : 병무청 (추천자 우선선발)		
주체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복무기관담당자 복무지도관		지방병무청		

● 교육과정

과 정 명	교육기관(장소)	기간
나 래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2박3일
소시오드라마	한국드라마치요연구소/사회복무연수센터	2박3일

※ 교육기관의 운영여건 등에 따라 교육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선발 기준

구 분	비상과정	소시오드라마과정
교육중점	행동교정(성찰/팁 중심)	원인해소(상담/치료중심)
선발 우선 순위	① 복무위반자 ② 추천자	① 반복부실자(2회 이상) ② 복무중단 후 재복무자(시행령 제66조) ③ 추천자

※ 복무이탈자, 근무태만자 순으로 선발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최근 발생자 순으로 선발

※ 소집해제 1개월 미만 제외 가능

● 처리절차

교육대상자선발 및 교육통지, 수송 등 업무처리는 복무기본교육 처리절차 준용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 수행으로 보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지휘감독 책임, 복무기간, 복무형태 등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
지휘감독	복무기관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복무기간	24개월	34개월
복무형태	집에서 출·퇴근, 주간 또는 주·야간 근무	특기분야근무
보 수 등	복무기간 기준 3개월까지 – 이등병 보수 4개월~10개월 – 일등병 보수 11개월~17개월 – 상등병 보수 18개월 이상 – 병장보수 ※ 보수 외 교통비, 급식비 추가 지급	없 음
연 가	통산 31일 이내	없 음

소집해제 처분

-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장으로부터 만료되는 전달 10일까지 명단, 복무기록표 등 제출받아 소집해제 되는 달의 1일에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해제 처분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병무청 지정병원 또는 수술하였거나 1월 이상 입원치료, 6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경력이 있는 병원의 병무용진단서를 발급 받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5급 또는 6급 판정자에 대하여는 소집해제 처분

보수지급 및 권익보장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한 보수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복무 중에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복무 만료된 자에 대한 권익보장은 아래와 같음

-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지급 : 복무기관장이 지급(교통비, 중식비 포함)
- 복무 중 순직, 부상당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보상
  -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 받은 경우는 복무기관의 장이 치료비용(간병을 포함)을 지급
- 복무를 마친 사람
  - 복무 전 직장 복직 또는 학교에 복학 보장 및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기간을 재직기간(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연금합산 등 혜택
  - 행정관서요원 복무만료자의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 복무 중 전사·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 상 질병 전역 등의 사람 및 가족 보상

복무이탈 등 처리

• 복무이탈 사유별 처리기준

구 분		사 유	처 리
복무이탈 (법제33조, 법제89조의2)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	이탈 일수의 5배수 연장근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	고발(3년 이하의 징역)
복무 의무 위반	명령위반(법제33조,법제89조의3)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3회 이내 경고: 1회 경고 시 마다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 고발(1년 이하의 징역)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때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가혹행위를 한 때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때	
	임무수행 태만 행위 (법제33조, 법89조의3, 영제65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에 출근한 때	7회 이내 경고: 1회 경고 시 마다 5일 연장복무 8회 이상 경고: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1회 경고 시 마다 계속하여 5일 연장복무
		「초·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 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 제외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 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을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 형사 처분 종료(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구속해제, 출소 시)된 사람은 복무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 복무중단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재복무

분할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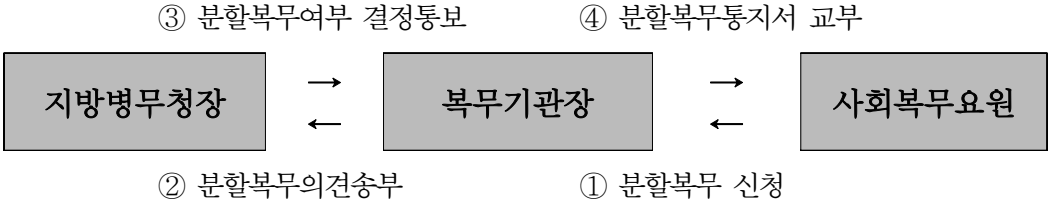
개 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등 가사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일정기간 복무중단 후 재복무

관련법령

- 병역법 제31조의3
- 병역법시행령 제65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4조

업무흐름도



분할복무 대상

- 1개월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 분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분할복무 기간 : 통산 6개월 범위 내

※ 본인의 질병치료 경우는 기간 제한 없음

재복무

- 복무중단 기간 종료일 다음날 복무기관장에게 재복무 신고
  - 복무중단 만료일 이전에 재복무를 원하는 경우 복무기관장을 경유하여 즉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재복무를 신고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이탈자로 처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9조 준용)

분할복무중 산업기능요원편입 가능

복무기관 재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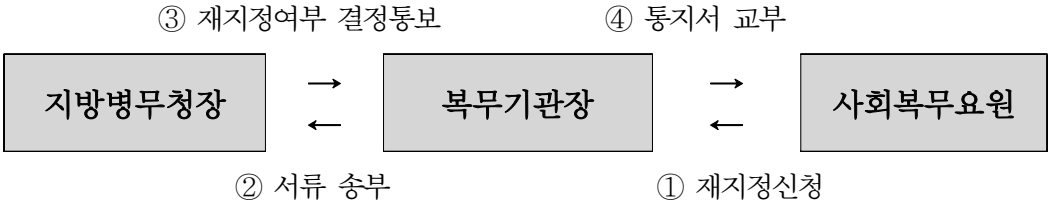
개 요

동거가족의 주소지 이전 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등으로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기가 곤란한 경우의 복무기관 재지정 처리절차

관련법령

- 병역법 제32조
- 병역법시행령 제65조2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5조

업무흐름도



재지정 사유

- 동거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복무하고 있는 기관이 폐쇄 또는 이동된 때
- 복무기간 중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

구비서류

- 주소지 이전 : 주민등록표 등본
  ※ 지방병무청장이 G4C를 통하여 주민등록지 이전사항 확인으로 갈음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의료기관 진단서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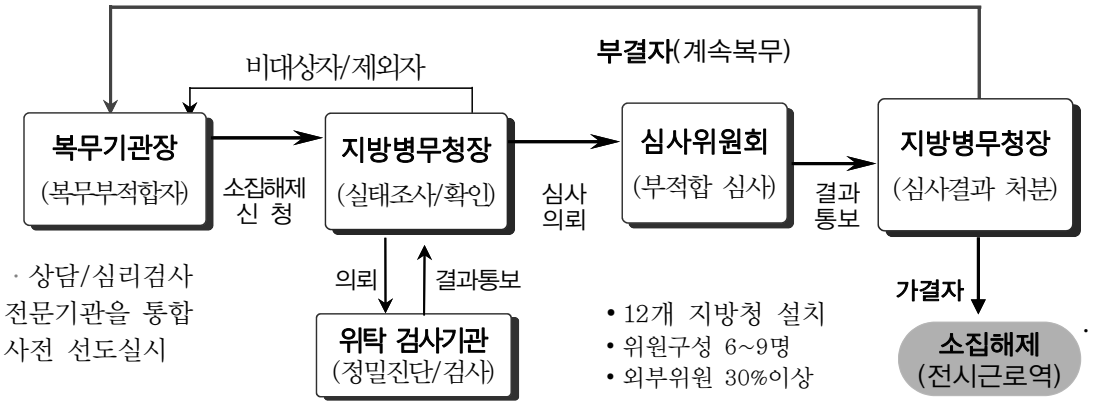
개 요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이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전시근로역 편입) 처분

관련법령

-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제136조제2항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업무흐름도



신청대상

-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135조제4항 또는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복무부적합자로 결정한 사람
- 복무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지역 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상담 또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소집해제 신청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음

심사대상

-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부적합자로 소집해제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 등을 거쳐 심사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 기타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부적합하여 지방청장이 소집해제 심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람

위탁검사 전문병원 지정·운영

-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질병·심신장애 정도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

병무청별로 “위탁검사 전문병원” 지정 운영

- 위탁검사 대상
  - 복무부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 다만,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가 확인된 사람은 외부 의료기관의 위탁검사 생략 가능

● 심사기준

구 분	소 집 해 제 기 준
질병/ 정신적 장애 등	○ 법 제65조제1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접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같은 질병이나 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라 한다)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지능 정도가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단순한 직무수행도 곤란한 사람 –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 정신질환자로서 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
수 형 자	○ 병역법시행령 제1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 직무태만, 직무명령 반복불이행, 잦은 복무이탈 등으로 직무를 부여할 수 없는 사람 –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피해를 끼치는 등 지휘·감독이 매우 어려운 사람

● 심사제한

- 복무이탈 또는 재감으로 복무가 중단된 사람
- 복무이탈 또는 복무위반으로 고소 또는 고발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 소집해제 예정일 기준으로 남은 복무기간이 3개월 이하인 사람

※ 단, 자살·폭력 등의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소집해제 예정일 전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소집해제심사위원회

• 소집해제심사위원회 설치

- 위원회 설치 : 12개청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지방병무청, 인천, 경기북부병무지청

- 심사의뢰 : 2개청

· 제주지방병무청 : 부산 또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으로 심사 의뢰

· 강원영동지청 : 서울 또는 강원지방병무청으로 심사의뢰

• 위원회 구성

구 분	내 용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병역판정관이 없는 지방청의 경우 소집해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내부위원 – 지방청 5급 이상 공무원(위원회 성원이 어려운 경우 6급이상 공무원) – 병역판정전담의사 ○ 외부위원 : 40% 이상 –「의료법」에 의한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 대학교수 등 부적합 처분 기준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
위원회 개최	○ 월 1회 개최 – 심사대상자 발생 시 수시 개최 가능

• 회의운영

- 서류심사 원칙, 필요시 참고인 및 심사대상자 출석

- 회의는 위원6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출석위원 중 3명 이상은 반드시 외부위원이어야 함

- 위원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함

◐ 예술·체육 분야 ◑

[별표 1]

구 분		복 무 분 야
예술	공 통	○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예술 분야 교직 근무 (단, 대학 강사는 주 4강좌 이상) ○ 개별(창작)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발표 및 전시회를 연 2회 이상 개최
	음 악	○ 교향악단(KBS, 시립) ○ 합창단 및 오페라단(국립, 시립) ○ 국악 관현악단(국립, 시립, KBS) ○ 국립 창극단
	무 용	○ 국립 발레단 ○ 무용단(국립, 시립)
	연 극	○ 극단(국립, 시립)
	중요무형문화재	○ 사회복무요원 편입 당시의 예술 분야
체육	체 육	○ 선발 당시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 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 종목에서 선수 활동 ○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 분야에 종사 ○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 등으로 종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 ※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서 입상한 후 체육요원에 편입되어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됨.
	바 둑	○ 한국기원 소속 바둑기사로 활동

◐ 국제 음악경연대회 ◑

[별표 2]

연번	대 회 명	개최 주기	개최국가	개최도시	인정부문
1	"Jean Sibeliu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5년	핀란드	Helsinki	바이올린
2	"Henryk Wieniawaski" 국제바이올린콩쿠르	5년	폴란드	Poznan	바이올린
3	"Frederick Chopin" 국제피아노콩쿠르	5년	폴란드	Warsaw	피아노
4	Indianapolis 국제바이올린콩쿠르	4년	미국	Indianapolis	바이올린
5	"Pablo Casals" 국제첼로콩쿠르	4년	독일	Kronberg	첼로
6	Van Cliburn 국제피아노콩쿠르	4년	미국	Fort worth	피아노
7	하노버 "Joseph Joachim" 국제바이올린콩쿠르	3년	독일	Hannover	바이올린
8	"Max Rostal" 국제비올라,바이올린콩쿠르	3년	독일	Berlin	바이올린, 비올라
9	"Franz Liszt" 국제피아노콩쿠르	3년	네덜란드	Utrecht	피아노
10	"Géza Anda" 국제피아노콩쿠르	3년	스위스	Zurich	피아노
11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	3년	일본	Sendai	피아노, 바이올린
12	"Premio Paganini" 국제바이올린콩쿠르	2년	이탈리아	Genoa	바이올린
13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	2년	프랑스	Toulouse	성악
14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	2년	이탈리아	Bolzano	피아노
15	"Long-Thibauds" 국제피아노,바이올린콩쿠르	2년	프랑스	Paris	피아노, 바이올린
16	chartres 국제오르간콩쿠르	2년	프랑스	chartres	오르간
17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	2년	프랑스	Besancon	지휘

연번	대 회 명	개최 주기	개최국가	개최도시	인정부문
18	뮌헨 국제음악콩쿠르(ARD)	1년	독일	Munich	성악, 클라리넷, 피아노, 오르간, 오보에, 트럼펫, 첼로, 플루트, 호른, 피아노듀오, 바이올린, 타악기, 피아노트리오, 더블베이스, 하프, 바순
19	"Reine Elisabeth de Belgique" 국제음악콩쿠르	1년	벨기에	Brussels	성악, 피아노, 작곡, 바이올린
20	Geneva 국제음악콩쿠르	1년	스위스	Geneva	피아노, 성악, 첼로, 오보에, 작곡, 타악기, 비올라, 클라리넷
21	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	1년	체코	Prague	첼로, 하프시코드, 피아노, 트롬본, 바이올린, 트럼펫, 플루트, 바순,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지휘, 오르간
22	윤이상 콩쿠르	1년	대한민국	Tongyeong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23	"Carl Nielsen" 국제음악콩쿠르	1년	덴마크	Odense	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오르간
24	서울 국제음악콩쿠르	1년	대한민국	Seoul	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25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1년	러시아	Moscow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첼로
26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	1년	캐나다	Montriol	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27	제주국제관악콩쿠르	1년	대한민국	제주	호른, 튜바, 트럼펫, 트롬본
28	“Michele Pittaluga"국제 클래식기타&작곡콩쿠르	1년	이탈리아	Alessandria	클래식기타
29	"Dr.Luis Sigall"국제음악콩쿠르	5년	칠레	Vina del Mar	클래식기타

◐ 국제 무용경연대회 ◑

[별표 3]

연번	대 회 명 (한글)	개최주기 (창립년도)	주최국	인정 부문
1	Helsinki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4년 (1984)	핀란드	발레
2	US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USA 국제발레콩쿠르(잭슨발레콩쿠르)	4년 (1979)	미국	발레
3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and Contest of Choreographers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	4년 (1969)	러시아 모스코바	발레
4	New York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3년 (1984)	미국 뉴욕	발레
5	Rudolf Nureyev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	3~4년 (1994)	헝가리 부다페스트	발레
6	Competition Arabesque Ballet Competition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펌 국제콩쿠르)	2년 (1990)	러시아	발레
7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Varna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	2년 (1964)	불가리아	발레
8	Prix de Lausanne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로잔 콩쿠르)	매년 (1973)	스위스 로잔	발레
9	Youth America Grand Prix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매년 (2000)	미국	발레
10	Seoul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매년 (2004)	한국 서울	발레, 현대무용
11	Kore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매년 (2007)	한국 서울	발레
12	Korea International Modern Competition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매년 (2010)	한국 서울	현대무용

※ 주니어, 시니어 구분이 있는 경우 시니어에 한함

◐ 국내 예술경연대회 ◑

[별표 4]

연번	대 회 명	인정부문	창립연도	대회순기	비 고
1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현악분야(가야금,거문고,아쟁) 관악분야(피리,대금,해금) 성악분야(정가,민요,판소리) * 분야별 최우수자 예술요원 추천	1981	1년	국립국악원
2	동아국악콩쿠르	부문별 격년제 시행(가야금, 해금 제외) 가야금, 해금, 아쟁, 가야금병창·민요, 작곡, 판소리, 정가, 거문고, 피리, 대금 * 격년제 시행 부문은 병무청, 문체부와 사전 협의	1961	1년	동아일보사
3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기악, 판소리 일반, 무용	1977	1년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4	전국연극제	연출, 연기	1982	1년	(사)한국연극협회
5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 공예, 한국화, 양화, 조각	1982	1년	(사)한국미술협회
6	동아무용콩쿠르	한국무용 전통 한국무용 창작	1960	1년	동아일보사
7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한국무용 전통 한국무용 창작	1962	1년	(사)한국무용협회

※ 학생부, 일반부 구분이 있는 경우 일반부에 한함

문 의 1

사회복무요원 소집 제도란 무엇입니까?

답 변

-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 분야,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사회·문화발전 지원 분야 또는 문화 창달 및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에서 소정의 복무를 마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제도 찾아보시면 상세히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26조

문 의 2

사회복무요원 종류와 임무 및 복무기간을 알려주십시오.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은 행정관서요원, 예술·체육요원으로 구분되는데, 사회복무요원별 소집대상·임무 및 복무할 분야별 임무와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소 집 대 상	임 무	복무기간
행정관서 요 원	보 충 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 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 지원 및 행정업무 등 지원	24개월 ※ 2011. 1. 1 소집자부터
예술·체육 요원	보충역, 현역병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해당 특기 분야 근무	34개월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제도 찾아보시면 상세히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65조제10항,
병역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6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5조제1항

문 의 3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복무기관의 장이 소속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부적합자가 있을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소집해제 신청을 하면, 소집해제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이 현지방문 등 실태조사와 필요한 경우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임상심리사의 자문을 거쳐 소집해제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이 소집해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심사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심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 정도에 대한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위탁검사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해당 질병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복무부적합자의 소집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는 다른 소집해제 제도와 달리 민원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복무기관의 신청과 지방병무청의 엄격한 처리 및 심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3항 및 제136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제2장

문 의 4

사회복무요원으로 분할 복무 중인데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나요?

답 변

- 사회복무 분할 복무중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고, 편입 가능분야는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 생산품의 운송분야, 국내 또는 해외 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선박승선 분야 등이 있습니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원 출원 절차는
  - 병역의무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편입원 접수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을 접수 받은 나로부터 7일 이내에 출원

-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사람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 완화('09.12.10)로 기술자격증 미소지자도 편입 가능하며, 편입 시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38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79제1항제2호

문 의 5

예술·체육요원의 선발 및 추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예술요원 추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또는 국내 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한 사람
- 「문화재 보호법」 제24조(중요 무형문화제의 지정)에 따른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서 자격을 얻은 사람(연극, 음악, 무용, 공연예술, 의식, 놀이, 용구의 제작수리 등)

● 체육요원 추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 단체 종목은 출전한 사람에 한함

●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에 입상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원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자 명단을 14일 이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33조의7(예술 · 체육요원의 편입)

문 의 6

행정관서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하는 지역기준(소집단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변

- 행정관서요원은 출·퇴근 복무하기 때문에 복무기관 소재지 시·군·구 단위로 출·퇴근 가능 범위 내에서 소집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시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소집단위를 설정하여 형평성 있게 의무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출·퇴근 근무가 가능한 지역 범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노선 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 이내 지역
  - 정기노선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왕복 3시간 이내 소요지역
  -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 가능한 낙도지역

관련규정 : 병역법 제28조, 제31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61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0조

문 의 7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복무하기 때문에 거주지 시·군·구 단위로 소집순서를 정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으로 소집하게 되며, 소집순서는

-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별도소집 대상자
- 일반순위 소집 대상자, 수형자 및 정신질환 4급 보충역 편입자

※ 위 각 사항 내의 소집순서는 다음과 같음

1.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보충역 편입 통보일자 순
2. 별도소집 대상자 : 사유 발생 월이 빠른 순
   * 사유 발생월이 동일한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
3. 일반순위 소집 대상자, 수형자 및 정신질환 4급 보충역 편입자 : 병역판정검사년도가 빠른 순, 학력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

관련규정 : 병역법 제28조
병역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6조, 제17조

문 의 8

인터넷으로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변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은 배정된 인원에서 전산 추첨 및 선착순 선택이 가능하며, 선착순 선택시 복무기관별로 배정된 인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산추첨시도 우선순위인 전년도('15. 12.) 본인선택 탈락한 사람 중에서도 출생년도가 빠른 사람이 우선 추첨선발 (생년월일이 아니고, 출생년도임)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대상은 재학 및 국외거주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에 있는 사람, 일자연기 중인 사람 등입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사람은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소집통지 후 기피·행방불명(직권말소 포함) 사유가 있는 사람, 귀가 사유가 해소된 사람, 군사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퇴영 되어 다시 입영할 사람, 우선 의무부과 의뢰된 사람, 재학생입영원신청자, 우선소집원신청자, 선복무신청자, 소집되는 해에 30세 이상자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신청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택범위는 주소지 지방병무청 관할권 복무기관(복무 중에는 복무기관 재지정이 되지 않으니 출·퇴근 거리를 감안하여 선택)

- 신청 시기는 연 2회(6월, 12월)로 정례화 2018년도 연간 본인선택 소집일정 전체를 2017년 12월부터 접수 후 추점(6월은 추가 선착순 접수)

☞ 유의사항

-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선택한 사람은 소집통지 전까지는 취소 가능. 그러나 소집통지가 되면 취소는 불가하고, 질병, 직계 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국외체재 및 거주, 각 군 지원, 국외출국대기자, 각급 학교 입학시험 응시예정자 등만 연기 가능(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당해 연도 1회에 한하여 재선택 가능)
- 출·퇴근이 곤란한 복무기관을 선택한 경우와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직계 비속이 부모가 근무하는 복무기관을 선택한 경우에는 직권 취소됨.
- 취소 시 해당 공석 말소, 실시간 재선택 불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입영연기 관리규정 제10조, 제22조, 제23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6조

문 의 9

복무기관과 복무 분야의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은 소집 통지 시 지방병무청장이, 복무 분야와 근무지는 복무기관 배치 후에 복무기관의 장이 지정하게 됩니다.

-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임무 특성상 개인의 전공·자격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산에 의하여 복무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시·도 교육청, 의료관련 기관은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복무 분야와 관련 있는 자격이나 면허, 전공을 갖춘 사람을 해당 소집 월의 소집 통지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 다만, 수형,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 분야에 지정 제한)
  - 특정 자격·전공자 등 소집순위

복 무 기 관	복 무 분 야	소 집 순 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관련 자격 취득자 또는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
시·도 교육청	학습지원	○ 1순위 : 교대·사대재학 및 졸업자, 교사 자격 취득자 ○ 2순위: 예·체능 전공자, 영어·수학 등 대학 전공자
의료관련기관	환자구호 업무지원 및 국민건강 보호·증진 업무 지원	○ 의료 관련 자격(면허)취득자 또는 의학 관련 전공자 ※ 한의사 자격 취득자(한의학 전공자 포함)
지방병무청	행정지원 (임상병리 및 심리검사)보조	○ 1순위: 임상병리사 면허취득자 또는 임상병리학 관련 전공자,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임상심리학 전공자 ○ 2순위 : 의료관련 자격(면허)취득자 또는 의학 관련 전공자
법원 등 법률 관련 기관	행정지원	○ 변호사자격 취득자
기획재정부 등 경제관련 기관	행정지원	○ 회계사자격 취득자
특허청 등 특허관련 기관	행정지원	○ 변리사자격 취득자

• 사회복지 시설 운영 지원분야 및 초중고 장애학생 지원분야 지정 제한

-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 및 특별법 위반범죄에 해당하는 사람

구 분	세 부 사 항
형법범죄 중 강력범죄*	○ 살인의 죄 ○ 강도의 죄 ○ 방화의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 폭행의 죄 ○ 상해의 죄 ○ 협박의 죄 ○ 공갈의 죄 * 공갈죄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으로 처벌 받은 자 포함 ○ 약취와 유인의 죄 ○ 체포와 감금의 죄
특 별 법 위반범죄	○ 「국가보안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구)「향정신성 약품관리법」 및 구)「마약법 위반자 포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구)「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자 포함」 ○ 「직업안정법」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정신과 질환 또는 신경과의 경련성 질환자)

※ 복무기간이 6개월 이하인 사회복무소집 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 지정 제한



관련규정 : 병역법 제29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4조 내지 25조

문 의 10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된 사람이 그 소집을 연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변

● 사사회복무요원의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이나 FAX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사회복무→ 입영(소집)일자 연기원/포기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실시간(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민원안내→ 민원처리결과 조회)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
- 인터넷을 통한 연기 신청 시 구비서류 제출 방법
  -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해당 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병역관리과)로 제출
  - 주소 또는 팩스번호는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지방청 소개 - 업무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는 30세까지 연기 가능하며, 사유에 따라 그 연기기간이 다르지만 연기기간을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가능하고, 연기횟수 또한 통틀어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과 행방불명으로 인한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당초 연기는 29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되었으나 '12.11.20.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제23조의 제한연령 규정이 삭제되었고, 병역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30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 가능하도록 함
- 다만, 사회복무소집대상자 중 3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연기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선복무하도록 되어 있고, 선복무 통지된 사람은 병역법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사유 연기를 제한하고 있음

※ 연기 횟수 적용은 '10. 8. 1.부터 발생한 연기 건부터 계산

※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영 제129조의2) : 24세 범위내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의 통상근로자로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 취업자는 비해당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카지노, PC방, 카페,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전화방,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안마업소, 무도학원 등)
  - 도소매업, 운수업(대리운전, 택시기사), 여신금융업(대부업체), 보험대리 및 중개업(보험설계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분양, 임대차)
  - 기타 고용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관련규정 : 병역법 제61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 제129조의2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5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제25조

자기가 나서고 싶으면 먼저 남을 내세워 주고
자기가 발전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발전시켜 준다.
이것이 인자(仁者)의 태도이다.
– 논어 –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1.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1호)	가.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입영통지 된 사람은 최초 신체검사일정 까지 연기 다. <삭 제>	○ 병무용진단서 ※ 영제129조 제3항에서 따로 규정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2호)	30일의 범위에서 가사정리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그 사유가 계속될 때에는 30일의 범위(통산 60일)에서 다시 연기	사실 확인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3호)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사실 확인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4호)	행방불명 사유 해소 시까지 연기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인
5.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자 30일전까지 각 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만 해당한다. (영 제129조제1항제5호)	가.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 포함)의 모집에 지원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해당 모집계획에 따른 합격자발표 시까지 연기하고 합격자는 그 입영일까지 다시 연기. 다만, 한 차례만 연기하되 1차(면접시험)와 2차시험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합격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나. 지원에 의하여 군 선발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입영일자까지 한 차례만 연기(군 지원 사유로 한 차례 입영 일자를 연기 받은 사람을 포함)	○ 사실 확인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6.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6호)	가.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하되 그 연기기간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출국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6개월의 범위에서 다시 연기. 다만, 그 연기로 인하여 30세가 초과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30세까지 연기 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기	○ 여권발급여부
7. 각급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영제129조제1항제7호)	가. 대학진학(중·고등학교 진학·복학 예정자 포함)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 능력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 까지 연기 나. 대학원진학 예정자(박사과정수학 예정자 포함)는 대학(원)을 졸업하는 다음 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다만, 후기대학 졸업자 중 다음연도 후기대학원 진학예정자는 다음 해 10월 말일 까지 연기 다. 대학편입학 예정자는 대학수료 또는 졸업하는 다음해 5월 말일 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 졸업(예정)확인 ○ 전년도 응시, 수능접수, 학원 등 수강 여부 또는 기타사실 확인 ○ 졸업(예정)확인 ○ 졸업(수료)확인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8호)	가. 친권자가 6세 이하(임신 중인 태아 포함, 미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의무자가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사실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의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 나. 형제가 동시에 현역병(의무경찰,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포함), 상근예비역 소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게 될 경우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 1명은 입영일자연기 범위에서 복무자의 전역 시까지 연기	○ 사실 확인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영제129조제1항제8호)	다. 각종 시험응시 및 응시예정자 등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세 번까지만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하되 두 번 이상 연기시는 지난 시험의 응시 결과를 확인 후 연기하고, 미응시자는 같은 사유 연기를 제한	○ 시험접수 또는 1차시험 합격 확인
	2)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단체 포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 및 면허시험(운전면허시험 제외)과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중 국가의 공인을 받은 자격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해당 시험일정까지 한 차례만 연기. 다만, 시험시행 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에 접수한 사람은 2회까지 연기. ※ 위 "다"목 1)과 2)의 경우 접수일부터 발표일까지의 시험일정이 6개월 이상인 때에는 1차 또는 2차 시험을 각각 구분하여 해당 시험합격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이 경우 해당 1차시험 합격자로서 이어서 시행하는 다음해의 2차 시험 접수예정자는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	○ 접수증 또는 수험표
	3)공무원채용후보에 등록한 사람은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공무원채용 등록 확인
	4)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자(자격미달 등으로 미응시자 포함)로서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응시 예정자는 원에 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삭제 >
	5)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 접수자는 그 시험일정까지 연기(불합격자는 추후 접수시 추가연기 가능)	○ 일부과목 합격 여부 확인
	6)위 "다"목 1)과 2)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수련) 예정인 사람이나 연수(수련)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연기	○ 합격 또는 재직 여부 확인

연 기 사 유	연 기 기 간	첨부·확인서류
8.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영 제129조제1항제8호)	라. 고등기술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공공 직업훈련원에 재원 중인 사람과 고용노동부 지정(허가) 직업훈련시설(법인)에서 교육비, 훈련수당 등을 지원받는 과정에 재원 중인 사람으로 매일(주말제외) 4시간 이상 수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졸업(수료)시 까지 연기	○ 재학(원)확인
	마. 학력이 학사 미만자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목을 출석수업형태로 수강중인 사람은 한 차례만 입영일자 연기 범위에서 연기	○ 사실 확인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취업사유로 입영일자연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입영일자연기 범위에서 연기(이 경우 실태조사와 관련한 사항은 제25조 제3항을 준용한다)	○ 수급자, 취업여부 확인
	사. 공익 또는 국가업무수행상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 사실 확인
	아. 각급학교(전문대학이상)의 1년 이내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로서 학업계속 희망자는 1년의 범위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휴학자 제외)	○ 재학여부 확인 ○ 수료사실, 졸업가능여부 확인
	자. 벤처기업창업가, 벤처기업예비 창업가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최·주관 "창업경진대회" 3순위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은 입영일자연기 범위에서 연기	○ (벤처기업)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처기업확인서(경진대회입상)사업자등록증사본 경진대회입상실적(예비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확인서
	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3개월의 범위(연기사유가 계속 될 경우에는 3개월 추가연기)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연예분야(영화·드라마 촬영, 공연 등) 및 체육분야(대회참가 등)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연기	○ 사실 확인

문 의 11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입영할 때 여비는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의 여비는

-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 신청을 한 사람과 재학생입영원 출원자는 인터넷 지원 시 입력한 개인 및 나라사랑 카드 계좌로 입영 후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 미파악시 : 지급계좌를 파악하여 군사교육소집 종료 후 10일까지 계좌 입금

- 소집일 전 여비지급 신청자 : 소집일 5일전까지 계좌입금

  단, 소집일자 연기 등으로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여비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령한 여비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79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

문 의 12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하여 소집일자 5일 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통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 시 구비서류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 조건이행서약서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민원서식)

  ※ 지방병무청별 보충역 배정인원 범위내 선착순접수

- 병역지정업체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나 취업 후 일정 기간 수습이 필요한 회사의 규정 등에 따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재직증명서 첨부)를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소집일자를 연기한 이후에 산업기능요원 편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38조,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5조

문 의 13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치유기간 2개월로 귀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소집부대의 신체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퇴영)된 때에는 그 질병 정도에 따라 처리합니다.
  -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소집
  -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한 질병으로서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소집부대 신체검사일로부터 합산하여 24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그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입영 신체검사와 귀가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17조,
병역법 시행령 제25조 내지 26조, 제111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3조

문 의 14

사회복무요원은 4주 기초 군사훈련이 끝나면, 바로 다음 날 복무기관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이 군사교육소집 부대에 입소하여 기초군사 훈련을 마친 다음, 퇴소는 입소한 날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부대별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 목요일에 퇴소하는 경우는 다음 날 금요일에 복무기관으로 출근을 하면 되며,
  - 금요일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주말(토, 일)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을 하여 복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 군사교육소집 부대별 군사교육소집(해제)일 및 복무기관 배치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군사교육소집 부대	군사교육소집일	군사교육소집 해제일	복무기관 배치일자
육군훈련소	목요일	목요일	군사교육소집일로부터 4주후 금요일
향토사단	월요일	금요일	군사교육소집일로부터 4주후 월요일

관련규정 : 병역법 제11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조

문 의 15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후 귀가되었습니다. 선복무신청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신청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답 변

- 선복무제도란 일반적으로 기초군사 훈련을 마치고 복무를 시작하는 것과는 달리 먼저 복무를 시작하고, 복무 중에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제도입니다.

- 귀가 및 퇴영된 사람으로서 선복무을 원하는 사람은 귀가 또는 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병무(지)청으로 선복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귀가 또는 퇴영된 후 재신체검사를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 처분된 사람은 처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복무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통지 후에 선복무 희망시기변경 또는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관련규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7조

문 의 16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퇴사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야 하는데, 복무기간이 단축 되는지요?

답 변

-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에 업체를 퇴사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에 따라서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92조, 개정 2012.12.20.부)
  -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 : 4일마다 1일씩 단축

- 그러나 전·공상 사유로 6개월 복무 대상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41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문 의 17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변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경우,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다른 업무와 겸직을 원한다면, 사전에 복무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겸직 허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기타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규정 : 병역법 제33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

문 의 18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일자에 근접하여 국외여행이 가능한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일 까지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으로 보고 있어 복무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해당 복무기관 장의 추천서를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의 허가로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범위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소집해제일에 근접하여 연가를 사용할 경우는 유학절차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 참고로, 분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국외여행을 허가 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6조

문 의 19

허리 질병으로 외근근무가 어려운 상태인데, 복무 분야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복무기간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장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재지정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복무기관을 재지정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 2개 이상의 복무 분야가 있어 자체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무 분야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출원에 의해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 실시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병무용 진단서(수술을 받았거나 1월 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당해병원의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 제44조

문 의 20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정신과 질환이 있어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사생활 문제로 복무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가 곤란하여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에 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제출을 받은 복무기관장은 즉시 해당 지방병무(지)청에 송부하여 재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병무청으로 직접 재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니 양해 바라며, 어렵더라도 복무기관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복무기관을 통해서 제출하는 이유는 복무기관에 아무런 통보 없이 재신체검사를 통해 소집해제가 된다면, 복무기관에서 대체인력 확보 등 인력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

문 의 21

복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 그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 「주간근무」와 「주·야간근무」로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에 불구하고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시간외 근무는 복무기관의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휴식과 급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복무기관장이 시간외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제4항

문 의 22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은 기관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사회복무요원보다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별도휴가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주5일 근무는 해당 토요일에 전 행정기관이 동시에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4시간 교대근무기관이나 사회 안전·질서유지 기관 등은 그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복무관리를 복무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소속기관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도 그 실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사회복무요원보다 초과 근무하게 되는 시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일 중에 휴무일을 지정, 휴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문 의 23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방송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수학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복무를 마쳤을 때에 복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 수업, 사이버수업으로의 수학은 허용하고 있으나, 주간 근무자로서 대학(원)의 야간 강좌에 수강은 다음 날 근무지장 및 다른 사회복무요원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73조,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문 의 24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는 주간 근무와 주·야간 근무로 구분됩니다. 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09:00-18:00까지입니다.

- 국가보안시설 경계 등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주·야간 근무의 경우에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는 주 단위로 윤번 교대 근무를 하고 야간 2개조는 격일 단위로 근무합니다.
  - 야간 근무자는 주간 근무자의 일과 종료 시간에 맞추어 교대 근무하며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 평일과 같이 교대 근무 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58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문 의 25

행정관서요원이 복무 중에 분할복무 신청 방법 및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 변

●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복무를 중단하고 재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을 해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중단 여부 및 중단기간을 결정하여 분할복무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분할복무 사유 및 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를 요하는 경우(의료기관 진단서 1부)
- 본인 이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심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병간호가 어려운 경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자연재해 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로 가옥·농경지 유실에 의한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 가족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사망이나 실직 등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그 밖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련규정 : 병역법 제31조의3, 병역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7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4조

문 의 26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지원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 독거노인(장애인) 보조 생활지도 분야에서 근무를 원할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신청함으로써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은 재학 사유 입영연기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 신청 제한대상
  - ○ 형법 범죄 중 10대 강력범죄 및 8개 특별법 위반 범죄 경력자(「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별표3), 정신과 질환 및 문신 등으로 보충역 편입자
  - ○ 정신과 질환,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경련성 질환 사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편입자
  -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사회복지 시설 분야를 선택한 사람은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재가 독거노인 기능회복, 보호활동, 재활업무 보조, 재활지도원·사회복지사 업무보조,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상담·안내 등의 업무에 종사합니다.

- 단, 소집일자/복무기관을 선택한 사람은 소집통지 후 및 질병, 직계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취소 및 소집일자연기를 제한하고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사회복무 →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신청에서 출원하시면 됩니다.

문 의 27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및 교통비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교통비, 중식비는 복무기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현역병과 같은 수준의 봉급을 매월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지급하게 됩니다.
  - 소집월로부터 3개월까지는 이등병의 보수인 163,000원
  - 소집월로부터 4개월에서 10개월까지는 일등병의 보수인 176,400원
  - 소집월로부터 11개월에서 17개월까지는 상등병의 보수인 195,000원
  - 소집월로부터 18개월 이상은 병장의 보수인 216,000원

  ※ 중식비 1일 기준액 : 6,000원

- 봉급 외에 중식비와 교통비를 실 근무 일수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야간근무는 근무일수를 2일로 인정하여 지급합니다.

- 복무 이탈일과 통산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 및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전액 지급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문 의 28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중식비와 교통비가 복무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변

-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보수, 급식비 및 교통비를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게 되는데, 보수는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액수, 급식비와 교통비는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식비와 교통비가 실비로 지급됨에 따라 복무기관의 급식환경, 개인별 출·퇴근 노선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그리고 대부분 복무기관의 급식비는 공무원 매식비 단가 기준(1식 6,000원), 교통비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왕복 이용요금으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문 의 29

거주지에서 복무기관까지 출·퇴근에 소요되는 사회복무요원의 교통비가 복무기관에서 지급되는 금액보다 많은데,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복무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보수(보수, 교통비, 중식비)는 복무기관장이 지급하여야 하고, 교통비는 정기노선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차량을 이용하는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를 주는 이유는 개인에 따라 차량 이용 횟수, 이용 방법 등이 상이하여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입석버스를 이용하여도 출퇴근에 지장이 없음에도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복무기관에서 입석버스 요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복무기관에서 정기노선 대중교통 차량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실제 비용보다 적게 교통비를 지급 한다면, 복무기관장에게 실비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는 복무기관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실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당초 출·퇴근 가능 지역을 벗어난 원거리 복무기관을 본인선택으로 정한 경우의 교통비는 복무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지급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1조

문 의 30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치료비를 복무기관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이 직무수행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의료시설에서 치료(간병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치료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직무수행 중 부상·질병"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국한하며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등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질병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비용부담 주체인 복무기관의 장이 의학적 소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복무 중에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악화되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복무기관의 장에게 치료신청서(시행규칙 제13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75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 60조, 제62조

문의 3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부상으로 소집 해제된 경우 보상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소집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복무기관으로부터 사망 또는 장애보상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기 위한 절차
  - 대상자가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순직·공상 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본인, 가족 또는 유족이 신청가능(「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신청주의가 원칙)
  - 복무기관장 :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관련서류 통보 요청 시, 진단서 기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관할 지방병무청장: 복무기관장이 송부한 사실 입증 서류와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
  - 국가보훈처장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 심의 의결
  - 관할 지방보훈청장 : 인정된 사람 중 상이등급결정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 후 대상 여부 결정
-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되는데, 사망보상금은 상사18호봉 보수 월액의 36배의 금액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은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중사 1호봉 보수 월액의 12배~6배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장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공상의 경우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장애등급이 1급~3급에 해당되어야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75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52조 내지153조의 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0조 내지 제6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조의3~제6조의4

문 의 32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간 중 실시할 수 있는 연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복무기관장은 행정관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연 15일 이내의 연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복무기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24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6일
23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5일
22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4일
21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3일
20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2일
19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10일
18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9일
17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8일
16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6일
15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5일
14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4일
13개월	○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 소집된 날부터 1년 초과: 2일
12개월	○ 소집된 날부터 소집 해제 시까지: 16일
11개월	○ 소집된 날부터 소집 해제 시까지: 15일
10개월	○ 소집된 날부터 소집 해제 시까지: 13일
9개월	○ 소집된 날부터 소집 해제 시까지: 12일
8개월	○ 소집된 날부터 소집 해제 시까지: 11일
7개월	○ 소집된 날부터 소집 해제 시까지: 9일
6개월	○ 소집된 날부터 소집 해제 시까지: 8일
5개월	○ 소집된 날부터 소집 해제 시까지: 7일
4개월	○ 소집된 날부터 소집 해제 시까지: 5일
3개월	○ 소집된 날부터 소집 해제 시까지: 4일

문 의 33

사회복무요원이 정해진 기간에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시기에 일괄하여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와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지요?

답 변

- 행정관서요원에게는 통산 31일 이내의 연가를 허가할 수 있는데, 연가는 복무기관에서 매년 소속 사회복무요원의 연가 희망일정을 받아 동일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연가”라 함은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을 실시하여야 하는 휴가의 일종인 바, 정해진 기간에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연가일수가 다음 시기로 이월되어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무기관에서 공무수행 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학교 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이 연가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무수행 상 부득이 하거나 행정관서요원이 복학을 위하여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복무기관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연가를 합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면 최단 일자 내에 연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연가를 계속 이월하여 한꺼번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정해진 연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여 그 기간만큼 복무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

문 의 34

복무형태가 「주·야간 근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근무는 주간 근무와 주·야간 근무로 구분되는데 근무 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평일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야간 교대 근무자의 토요일 근무시간은 공휴일이 아닌 평일과 같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 일률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복무형태에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일요일 등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게 다음 정상근무일 중에서 휴무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공휴일에 평일처럼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복무기관장은 근무일 중에서 별도 휴무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18조

문 의 35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받은 경우 그 병가 기간이 복무 기간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 병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병가는 공무상 병가와 공무 외 병가로 구분합니다. 공무상 병가는 그 병가 기간이 복무 기간에 산입이 되지만, 공무 외 병가는 통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 복무하게 됩니다.

-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병가 기간이 3일 이내의 단기간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하거나, 병가기간이 1일이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4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 교부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입퇴원 사실이 있는 사람에 한함) 제출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

문 의 36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여 병가를 신청할 경우 복무기관장이 병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면 복무기관장은 진단서나 질병상태를 확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당해 질병·부상이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확인되면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해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하다고 복무기관장이 인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당해 질병으로 복무가 곤란한 상태는 아니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복무기관장은 조퇴 등을 활용하여 치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3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

문 의 37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지병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여 입원 치료 중 인 경우 공무상 병가에 해당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병가는 공무상 질병과 공무 외의 질병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됩니다.

- 여기서 '공무상 질병' 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국한하며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해 질병이 공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지휘·감독권자인 복무기관의 장이 의학적 소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복무 중에 지병이 악화되어 치료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질병을 '공무상 병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처리권자인 당해 복무기관의 장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3조, 제60조

문 의 38

사회복무요원이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다가 부상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가료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이 직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수행 중 부상'이라 함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에 국한합니다. 그러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본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 등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소속기관의 체육행사 또는 직원의 정당한 업무명령 등의 정황에 따라 공무상 질병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복무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해 부상의 공무상 관련 여부는 비용 부담 주체인 복무기관의 장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75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60조, 제62조

문 의 39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 또는 결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휴가의 사유와 구비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휴가 대상 및 기간
  - 본인의 결혼 : 5일 이내
  - 배우자의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이내
  - 직계비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2일 이내
  -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3일 이내
  - 배우자의 출산 : 5일 이내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 휴가일수에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 실시
- 구비서류
  -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
  - 사 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
  - 간 호 : 의료기관 진단서
  - 출 산 : 병(의)원의 확인서 등 입증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2조

문 의 40

선임 사회복무요원들이 근무기강 등을 이유로 부당 대우를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자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원활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기강확립 등을 명분으로 비인격적인 행위나 사적 제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부당한 대우 등 신상문제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관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충심사청구권은 사회복무요원의 권리인바, 선임 사회복무요원의 사적 제재나 잘못된 관행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조속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사회복무요원들의 부당행위 등 고충사항이 있으면, 복무관리 책임자이자 처리권자인 복무기관장에게 알려 공정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64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3조

문 의 41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전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역병 전역자와 같이 복무기간이 전공(주특기) 경력으로 인정되어 전산관련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경력합산에 활용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현역병은 군사특기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되는데 기초군사훈련 이수 후에 부여된 군사특기별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부대에 배치되어 특기 분야에 복무하게 됩니다. 전역 후에 군사특기와 관련한 분야에 취업하거나 기술자격/면허시험 응시 할 경우에는 군에서 군사특기를 받아 복무한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특성상 현역병과 같은 군사특기 또는 병과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소속기관에서 특정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군사특기와 같은 특정기술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1종 및 2종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관용차량 운전을 임무로 수행한 사람은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무요원 운전경력 적용기준
    - 2년 이상 임무수행자 : 21개월
    - 2년 미만 임무수행자 : 실제 임무수행기간

관련규정 : 공무원 연금법 제23조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문 의 42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공무원 시험 응시나 취업 시 경력인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고 소집이 해제된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이 군 경력으로 인정되어 현역병 전역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연장
  - 1년 미만 복무자 : 1세 연장
  -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자 : 2세 연장
  - 2년 이상 복무자 : 3세 연장
- 회사근무 중 입영(소집): 휴직 후 복직보장, 승진 시 의무복무 기간을 실제근무 기간으로 산정, 군 복무 보수와 복무 전 보수(회사 월급)의 차액 범위 내에서 보수 지급 가능
-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결정 시 근무경력에 포함(사기업은 강제사항 아님)
-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 보충역(사회복무요원)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 징집에 의하여 입영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범위 내인 21개월, 복무기간이 21개월 미만인 사람은 실제 복무기간

관련규정 : 병역법 제74조, 제74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제151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문 의 43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이탈 및 근무 태만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내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이 무단결근으로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분야에 근무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지참 등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따라 연장복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연장 사유에 따른 연장복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기간 중 모두 합하여 7일 이내 복무 이탈(무단결근)한 경우, 이탈일수의 5배 기간 연장
- 무단지참 등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3회 이내의 경고를 받은 경우, 1회 경고시마다 5일 연장복무
- 폭력, 강·절도 등의 일반 사회범죄로 인한 구속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분 종료 후 연장복무

● 다음의 경우는 고발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기간 중 모두 합하여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복무 기간 중 모두 합산하여 4회 이상경고 처분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합산하여 8회 이상 경고 처분된 사람 (1년 이하의 징역)

※ 1년6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형사처분 종료 후에 재복무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 제89조의2~3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제165조제2항 및 제3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 내지 제32조

문 의 44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전가족이 이사를 하면 복무기관을 재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동거 가족의 전부나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현 복무기관까지 출·퇴근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복무기관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는데, 복무기관 재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관서요원이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 등본을 첨부하여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출 예정자의 경우에도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속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복무기관의 장이 거주지 이동사실 및 출·퇴근근무 불가능 여부를 사실 확인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재지정 신청
-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을 재지정하고 재지정 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
- 재지정이 된 일시에 신 복무기관의 장에게 신고
  ※ 새로운 복무기관으로 이동하는 기간은 2일이며,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관련규정 : 병역법 제32조제1항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5조

문 의 45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서 외항선 선원으로 승선 근무하고 있는데, 저와 같은 사람의 병역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에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 승선 출국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되며, 3년 이상 승선연기 사유가 계속된 때에는 하선 후에 4주간 군사교육소집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처리됩니다.

- 선원의 연기 사유는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 기간 중에 계속되어야 하고, 하선 후 6월 이내 재승선한 때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하선 기간은 1년의 기간 내 통산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하선 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하선기간이 1년 기간 내에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원연기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됨

관련규정 : 병역법 제65조제7항
병역법 시행령 제138조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7조

문 의 46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입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4년 동안 소집이 되지 아니하면 면제가 된다는데,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사람이 일정 기간 소집되지 않으면, 보충역 편입 연도를 감안하여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장기대기 기간 기산시점은
  - 보충역 처분 또는 연기사유가 해소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이며
  - 고령, 병역자원 수급 등으로 그 해 1월 1일부로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그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대상자는 학력과 관계없이 장기대기 기간 기산시점으로부터 4년이 경과된 사람입니다.

- 전시근로역 처분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분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 거주여부 등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처분
  - 다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중인 사람, 주민등록이 말소 중인 사람,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과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는 사람, 위장전입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시근로역 처분에서 제외가 됨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제도안내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65조제9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7항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48조 내지 제52조

문 의 47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사유와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사유와 복무기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 제 사 유		복 무 기 간	비 고
복무기간 만료	행정관서요원	24개월 ※ 2011년 1월 1일 소집자부터	• 30일 이상 공무 외 병가기간, 복무중단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예술·체육요원	34개월	
독자	'73년 이후 '74년 이전 출생자	18개월	• 행정관서요원에 해당
	'72년 이전 출생자	6개월	
전사·순직 또는 전·공상 가족		6개월	• 행정관서요원에 해당 • 가족 중 1인에 한해 복무기간 단축
질병, 심신장애		복무기간과 무관	•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급 5~6급자
수 형		복무기간과 무관	• 1년 6월 이상 형 선고자 (집행유예, 누범자 제외)
전가족 국외이주		복무기간과 무관	• 1년 6월 이내 미출국 시 잔여기간 재복무
고 아		복무기간과 무관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영·육아 시설 5년 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생계유지곤란		복무기간과 무관	•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출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복무기간과 무관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급이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

문 의 48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해도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88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

너무나 사랑하면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가 없다.
– A. 카뮈 –

문 의 49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에게 복무기본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은 공무수행자로 갖추어야 할 책임의식과 기본역량을 갖춘 사회복무요원으로 양성시키기 위해서 입니다.

- 교육은 4박5일(합숙) 과정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주요 교과 과정은 사회복무요원의 역할과 성격유형검사를 통한 자기이해, 셀프리더십을 통한 자기관리, 복무윤리와 기본예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교육장소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 교육실시 시기는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 날(군사교육소집한 경우에는 군산교육소집을 해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합니다.

문 의 50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복무기간은?

답 변

-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은 2년 2개월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그 남은 기간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 이 경우는 복무중단 사유에 해당하여 분할복무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며, 복무중단 중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무 복무중단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했을 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24개월 중, 남은 잔여기간만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보충역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편입가능)

- 참고로, 산업기능요원은 편입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산입되며 병역지정업체 휴업, 3개월 초과 병가 등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산입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29조제1항2호
병역법시행령 제65조제6항

문 의 51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은 어떤 것인가요?

답 변

●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교육은 복무규율 위반자 등에 대한 의식전환 및 정신무장을 통한 복무기강 확립 및 성실복무 유도로 복무부실 예방을 위해 실시됩니다.

● 교육과정

과 정 명	교육기관(장소)	기간
나 래	병무청/사회복무연수센터	2박3일
소시오드라마	한국드라마치료연구소/사회복무연수센터	2박3일

※ 복무이탈자, 근무태만자 순으로 선발하고 동일순위 내에서는 최근 발생 순으로 선발(소집해제 1개월 미만자 제외 가능)

● 교육장소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 교육통지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이 거부되거나 교육 불참자는 근무명령위반 또는 복무이탈로 처리됩니다.

- 복무기관으로 출근자 : 교육태만자로 경고 처분
- 복무기관 미출근자 : 복무이탈로 처리

문 의 52

사회복무포털 로그인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답 변

● 로그인 오류시 우선 조치 안내

정상 사용중 갑자기 포털 로그인 오류시에는

1. 본인 PC에 업무 화면이나 다른 인증서 사용 화면 닫음.
2. 로그인 전에 우측상단 포털오류 해결방법-5번 방법으로 임시파일,쿠키도 삭제 후 재 로그인 -> 필요시 PC를 껏다 켜서 재시작 해봄(90%는 해결됨)
3. 인증서 프로그램이 설치요청이 반복되면 삭제하고 재설치
   ->PC 시작-제어판-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AnySign4PC 제거(설치일2016.6.30.이후이면 정상)
   ->파일이 다운이 제대로 안되었으면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첫 화면 하단, 뷰어다운로드- 10번 공인인증서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4. 그래도 안되면 인증서 전문업체(1644-0128)에 문의
5. 로그인 인증 성공 후 권한이 없거나 등록후 사용하라고 나오면 복무기관이나 관할 지방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의 의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석·박사 등 우수 연구 인력을 학문과 과학기술의 연구 분야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기술·기능 인력을 산업체의 제조·생산 분야에 복무토록 하여 국가과학기술 및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 내용

- 업체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아야 함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소와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하고, 산업체는 등록된 공장이나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어야 함
- 인원 배정된 병역지정업체는 해당분야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해야 하며, 일정기간 채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함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변동통보 등의 의무가 있음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복무시켜야하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복무하여야 함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의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당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전직 포함)하거나 해당 업체로의 파견을 할 수 없음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한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병역지정업체가 폐업·선정 취소된 경우 등에는 3개월(부득이한 경우 3월 연장가능)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함

-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병역지정업체에 대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들의 복무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며, 조사결과 행정처분 또는 불합격 평가된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서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때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병역지정업체의 정의

「병역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이 선정한 연구기관 및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을 말함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

- 연구기관

분 야 별			추 천 기 준	추천권자(접수처)
자연계	기업부설 등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2인) 이상 확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학	대학원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 대학원	교육부장관 (한국연구재단)
		대학부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연계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초과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역혁신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분 야 별			추 천 기 준	추천권자(접수처)
자연계	국가/자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공공법인	정부출연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특정기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으로서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의료연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	
	방위산업		「방위사업법」에 의해 위촉된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계	기업부설, 국가기관 등		인문사회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	소관행정기관의장 (소관행정기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국무총리실장 (국무조정실)
	대학	대학부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인문사회계 대학부설 연구기관	교육부장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연구기관 지정을 위한 자격요건

인적요건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연구전담요원 확보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 연구전담요원 확보
물적요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연구공간 및 연구기자재 포함)

- '연구전담요원'이라 함은 연구소·연구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함
- '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 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 및 연구기자재를 포함함
-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라 함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기자재'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함

연구전담요원 산정(算定)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한 사람

○ 연구전담요원이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주간의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 중인 경우
○ 연구개발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산업체

분 야	추 천 기 준	추천권자 (접수처)
○공업분야 ○광업분야 ○에너지산업분야 ○통신기기업 ○정보처리분야	○ 제조업 경영 업체(종업원 수 10인 이상. 단, 산학연계(3자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공장등록) ○ 광물(석탄은 제외)의 채굴사업 경영 업체(종업원 수 10인 이상), 선광·제련사업 경영 업체, 연간 1만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 경영 업체 ○공업분야와 동일 ○ 정보처리업 경영 업체(종업원 수 10인 이상, 사업자등록)	중소기업청장 ○지방중소기업청
○게임 S/W 제작업 ○애니메이션제조업	○정보처리 분야와 동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한국컨텐츠진흥원
○영상게임기제조업	○공업분야와 동일	
○의료·의약업	○ 공업분야와 동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식품업	○ 공업분야와 동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식품산업협회
○농산물가공업 ○동물의약품업	○ 공업분야와 동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식품산업협회 ○시.도
○해운업분야 ○수산업분야 ○수산물가공업	○ 총톤수 1천5백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경영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어선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 경영 업체 ○공업분야와 동일	해양수산부장관 ○ 한국선주협회 ○ 한국선박관리업협회 ○ 한국해운조합 ○ 한국원양어업산업협회 ○ 시.도
○건설업분야	○ 종업원 수가 100인 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국토교통부장관 ○ 대한(전문)건설협회 ○ 대한설비건설협회 ○ 해외건설협회

분 야	추 천 기 준	추천권자(접수처)
○임산물가공업	○ 공업분야와 동일	산림청장 ○ 산림청
○방위산업분야	○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방위산업진흥회

● 병역지정업체 선정

• 선정 처리절차

연구기관/산업체	→	추천권자	→	병무청	→	연구기관/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제출 (매년 6월말까지) ※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은 1월말, 6월말		평가등급, 순위 부여 (매년 7월 말까지 추천) ※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의 경우 매년 2월말, 7월말		병역지정업체 선정 (매년10월 중) ※ 중소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 (4월, 10월 중)		선정결과 통보

• 신청 시 구비서류

- **연구기관**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신청서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학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연구기관)
  :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청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연구기관 중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2인 이상 5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부설연구기관에 한함)
- **산 업 체** :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신청서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공장등록증명서(공업 분야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정보처리 분야에 한함)

: 광업원부등본(광업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만 해당)
: 당해업체의 사업에 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에너지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해운업분야에 한함)
: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분야에 한함)

- 연구기관 선정기준
  - 기업부설연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접수하고, 추천권자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업체별로 평가등급을 부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
  - 병무청장은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이 낮은 업체에 대하여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제외할 수 있음
- 산업체 선정기준
  - 공업분야(제조·정보처리업) 업체로서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정보처리 관련업체로서 S/W개발·게임S/W제작·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주된 사업 기준에 의함) 주된 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된 업체
  - 동일법인내의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업체
  - 중소·중견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정보처리분야 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 또는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건축물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 병역지정업체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상시근로자수의 합을 12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고 실태조사 당일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매월 말일 기준)
    ※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명 이상인 업체

- 선정 제외대상 업체
  - 병역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또는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산업체에 한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연구요원·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선정 추천권자의 평가 추천 등급이 낮은 업체
  - 공업·에너지산업·건설업·광업분야의 대기업(산업체에 한함)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산업체에 한함)

- 선정 결과 통보
  병역지정업체 선정결과 및 인원배정 내용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도 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승계

- 병역지정업체 또는 비병역지정업체가 병역지정업체를 인수· 합병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지위를 승계 받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승계를 원할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병역지정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때에는 인수 또는 합병한 업체가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의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승계하고자 하는 업체가 병역지정업체의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만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승계 불허
- 병역지정업체가 두 개 이상으로 분할(분사 포함)된 경우 승계 불허

〈승계 관련 증빙서류〉

연 구 기 관	산 업 체
1. 승계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2. 양도·양수(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3.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4.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만 해당) 7.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의 경매에 한함) 8. 고용승계 확인서	1. 승계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2. 양도·양수(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업 분야에 한함) 4.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 광업, 건설업, 해운업에 한함) 5. 방위산업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에 한함) 6. 선박보유현황서(해운·수산업에 한함) 7.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및 낙찰목록 사본 (법원의 경매에 한함) 8. 고용승계 확인서 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병역지정업체 승계 시 선정연도 적용기준

- 비병역지정업체가 병역지정업체를 인수 : 인수된 병역지정업체 선정연도
- 병역지정업체가 다른 병역지정업체를 인수 : 인수한 병역지정업체 선정연도
- 비병역지정업체와 병역지정업체가 합병 : 합병 전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
- 병역지정업체간 합병 : 나중에 선정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연도

인원배정 제한 대상 병역지정업체를 승계한 경우 처리

- 비병역지정업체가 병역지정업체를 승계 : 인원배정 제한 미적용
- 병역지정업체간 인수·합병 : 인수.합병한 병역지정업체가 제한대상인 경우 인원배정 제한
- 병역지정업체간의 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 : 인원배정 제한 미적용

업종변경 통보 등

병역지업업체가 소속된 법인의 규모(대.중견.중소기업)가 변경되거나 업종, 연구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신상변동통보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기업규모, 업종/연구분야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연구기관은 추천권자에게도 통보

제출서류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산업체)의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 감사보고서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중소.중견기업확인서 사본
- 연구기관이 연구분야를 변경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사본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 신고결과통보서 사본(벤처기업 부설연구소로 변경한 경우에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 산업체가 업종을 변경한 경우
  - 공업분야 제조업으로 변경한 때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정보처리업, 게임S/W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선정취소 사유

-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연구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구소의 인정·지정 등이 취소된 경우
- 방위산업분야의 병역지정업체가 「방위사업법」에 의한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병역법 시행령」 제72조)에 미달된 후 1년이 지나도록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 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였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법 제84조제1항제1호, 제85조, 제92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제1호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하여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업체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선정취소 절차

-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 병역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원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병역지정업체가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사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업체
- 병역지정업체장 의견제출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제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선정취소 대상으로 확정된 업체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
- 병무청장은 선정취소 여부 결정 및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필요인원의 신청

병역지정업체 장은 다음 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하며,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는 매년 7월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

※ 필요인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원배정을 받지 못함

※ 병무청장은 추천 평가등급과 복무관리 평가결과등을 고려하여 병역지정업체별 신청인원 범위내에서 우수업체 위주로 차등배정합니다

- 특성화고, 아미스터고 졸업생을 우선배정

인원배정

• '17년도 배정인원 규모

- 전문연구요원
  : 현　역 : 2,500명
  : 보충역 : 제한 없음(업체 필요인원 만큼 편입)
- 산업기능요원
  : 현　역 : 6,000명
  : 보충역 : 9,000명

• 인원배정 기준('17년도)

- 전문연구요원
  : 추천권자의 평가등급, 복무관리 평가결과, 편입률이 우수한 연구기관 중심 차등 배정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편입인원은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하여 소요인원 신청 범위 내에서 교육부에 총괄 배정
  : 자연계학사 이상의 보충역은 배정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필요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생, 울산과학기술원생은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국비장학생 선발인원 범위에서 배정
- 산업기능요원
  :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와 취업협약을 체결하고 해당학교 졸업생을 채용한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
  : 현역은 중·소기업만 배정(다만, 방위산업 분야는 중견.대기업도 배정),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배정
  : 병역지정업체별 신청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점수),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

※ 해운.수산분야, 농어업분야와 방위산업분야는 별도 배정 가능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시·군·구별 신청인원 범위 내에서 전공자 위주 배정
: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중단된 사람 및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편입

• 인원배정 제한
-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이 복무관리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당해연도 잔여 배정인원 회수 포함)
: 고발업체 : 3년
: 경고업체 : 2년
: 주의업체 : 1년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 평가 업체 : 1년
- 2년간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업체: 1년
- 산업체 중 대기업(해운·수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제외)
※ **대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병역지정업체를 말함
-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 : 1년
- 병역지정업체 중 파산이 확인된 업체(업체의 부설연구기관 포함) : 1년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년
-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위법·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년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 3년
- 「산업안전 보건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산업체 : 2년
- 방위산업체로서 최근 3년 연속하여 방산물자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1년

● 배정인원의 통보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병무청홈페이지에 게재)
※ 인터넷 열람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국·실별 주요정보 → 사회복무국

전문연구요원 편입

편입대상

-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의무복무기간을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한하며, 선발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원성적, 영어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4월, 9월)

전문연구요원 편입기준

- 연구분야별 편입 기준

1. 국내 대학원 수학자의 편입기준

연구 분야	편입 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① 자연계 연구기관 • 특정 연구기관(과학기술원 제외) • 우수집단인 연구기관 •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실시 연구기관 • 자연계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 자연계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방위산업 연구기관	1. 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이학, 공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농학, 약학, 수산학 등) 2. 수의학, 보건학, 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3. 기초의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4. 디자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예술관련분야는 편입 제외 5. 이·공학계열 학과의 이·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 6. 미술학 석사 또는 박사(산업·시각·제품·실내·포장디자인 전공) 7. 심리학 석사 또는 박사(인지심리학, 생물심리학 전공)
②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 인문사회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 인문사회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도서관학, 경제학, 경영학, 상학, 신학, 교육학 등)
③ 자연계대학원 • 과학기술원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전공분야의 박사과정을 수료한 사람

2. 국외 대학원 수학자의 편입기준

• 국내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학과 및 전공은 국내 대학원의 분류기준에 준함)

가. 국내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 Master of Science (미국, 유럽) • 修士 (일본) • Diploma (독일)	Doctor of Philosophy

나. 학위증명서에 의하여 학과·전공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교과목, 성적증명서 등 확인

3. 기초의학 전공

의과대학원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병리학, 법의학, 약리학, 기생충학, 임상약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공학, 의학공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사회의학, 의료관리학, 의사학, 의료정보학, 계량의학, 의학교육학 등
치과대학원	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생물학, 구강병리학, 구강악안면생명과학, 구강악안면기능생물학, 구강악안면감염질환 및 면역학, 환경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약리학, 예방치(과)학, 치과(생체)재료학, 치과경영정보학, 치과생체모방재료과학, 정보기술과치과의료학, 인체생물학 등
한의과대학원	한(방)약리학, 침구경락학, 동서신경과학, 서종양학, 의료공학, 임상영양학, 제3의학, 신약개발학, 한의정보학, 원전학,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생화학 등

● 편입원서 출원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하고 병역지정업체장은 병역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이내의 혈족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배정인원(보충역은 업체 필요인원) 범위에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자나 소집일자 5일 전까지)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참조)
-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위수여 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
-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 수료관계 증명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참조)

■ 산업기능요원 편입

● 현역병입영대상자 산업기능요원 편입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기술 및 기능계(서비스 분야를 제외)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중 병역지정업체에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아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 -시행령 제79조]

학 력	해당 기술자격 등급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기사 ○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는 제외한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이수하고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 기사 ○ 산업기사 ○ 해기사(소형선박조종사는 제외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학사학위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 또는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중퇴·휴학한 사람을 포함한다)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기능사보 포함한다) ○ 해기사

※ 정보처리 분야 병역지정업체는 기술자격 외에 정보처리 직무분야 전공 필요

※ 비고 : 해당기술자격 등급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기술.기능분야 등급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해기사면허 등급을 말한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기술자격이 없이도 편입

업 종 분 야	복 무 분 야
공업, 광업·에너지산업, 방위산업	제조 및 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 제품, 생산품의 운송 분야
건 설 업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수산 및 해운업	「선박직원법」에 의한 선박승선 분야

●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전직 요건

• 편입/전직 대상

- 현역병 입영 대상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취득자로서 다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기술자격 없이도 편입 및 전직가능)

: 고등학교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외대학의 학과는 국내대학의 분류기준에 준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문야 기술훈련과정 이수 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상업체 : 정보처리업체, 게임S/W제작업체, 에니메이션제작업체, 영상게임기 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제조업체, 방위산업체

※ 영상게임기제작업, 정보통신기기제조업은 병무청장이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정함

※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애니메이션제작업은 정보처리 분야만 편입

•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범위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의 별도4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리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 게임 및 애니메이션 직무분야 관련학과 포함
- 지방병무청장이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로 인정한 학과
- 영상게임기 제작업,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은 병무청장이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따로 정함

[「국가기술 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 학과]

건설정보(계열·공학과·공학부·과·전공), 건설정보도시건설과, 건설정보시스템전공, 건설환경정보과, 경영정보시스템(과·전공), 경영정보전공, 경영통계학전공, 경찰사이버보안과, 계산통계학과, 계측정보처리전공, 관광멀티미디어(과·전공), 관광컴퓨터정보계열, 광전자정보공학(과·전공·부), 광전자정보통신과, 광정보미디어공학과, 광정보통신과, 교통정보시스템전공, 국방정보통신과, 군산관학특약계열, 그래픽정보디자인전공, 글로벌미디어(과·학과·학부), 기계·산업정보공학부, 기계설계시스템정보과, 기계·정보산업공학부, 기계에너지생산공학부, 기계자동화(계열,공학부), 기계자동화정보계열, 기계정보경영공학부, 기계정보공학(과·부), 기술정보시스템전공, 기업컴퓨터처리계열, 나노정보공학전공, 네트워크정보과, 네트워크정보통신(과·전공), 데이타정보전공, 데이터베이스응용(공학)전공, 데이터베이스전공, 데이터정보학과, 도시계획정보과, 디지털경영정보(과·전공), 디지털마케팅(과·전공), 디지털콘텐츠개발(과·전공), 멀티미디어네트워크(과·전공), 멀티인터넷(과·전공), 멀티티미디어시스템(과·학과·전공), 모바일정보기술(과·전공), 무역사무자동화과, 문헌정보과,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사무인터넷(과·전공), 사무자동화(과·학부), 사무자동화개발전공, 사무정보(과·전공·계열), 사무정보관리(과·전공), 사무정보시스템(과·전공), 사무정보자동화과, 사무정보처리(과·전공), 사이버보안학(과·전공), 사이버정보관리(과·전공), 산업시스템경영(학)(과·전공), 산업정보과, 수학(과·전공), 시스템엔지니어, 에너지그리드학(과·전공), 영상정보(과·전공), 영상정보공학부, 영상정보소재연계전공, 영상정보시스템계열, 영상정보전자전공, 영상정보처리과, 영상정보통신공학전공, 영상컨텐츠개발전공, 운영분석학(과·전공), 웹모바일정보(과·전공), 웹응용공학(과·전공), 웹정보공학(과·전공), 웹정보산업과, 웹정보처리(과,전공), 위성정보(과)공학과, 위성정보과학과, 유비쿼터스컴퓨팅학(과·전공), 유비쿼터스IT(학)(과·전공), 응용정보처리과, 의료기기과, 의료전산학(과·전공), 의료IT마케팅학(과·전공), 인터넷경영정보(과·전공), 인터넷미디어(학)(과·전공), 인터넷부동산전공, 인터넷비지니스전공, 인터넷사무자동화(과·전공·계열), 인터넷상거래(과·전공), 인터넷정보(과·계열), 인터넷정보공학(과·전공), 인터넷정보과학과, 인터넷정보관리전공, 인터넷정보기술(과·계열), 인터넷정보미디어(학과·계열), 인터넷정보보안(과·전공), 인터넷정보보안해킹과, 인터넷정보시스템전공과전공, 인터넷정보전공, 인터넷정보전자계열, 인터넷정보처리(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과·전공·학과), 인터넷정보통신계열, 인터넷정보통신공학(전공), 인터넷정보학(과·부·전공), 인터넷통상(과·전공), 인터넷학과전산학과, 자산관리정보과, 전기전자정보(전공·계열), 전기전자정보공학(과·부), 전기전자정보시스템공학부, 전산사무과, 전산사무자동화과, 전산사무정보학부, 전산수학콘텐츠학(과·전공), 전산전자공학부, 전산정보(학)(과·부·전공·계열), 전산정보공학과, 전산정보과학과, 전산정보관리학과, 전산정보보호학(과·전공), 전산정보수학(과·부·전공), 전산정보응용통계학부, 전산정보처리(과·부·전공), 전산정보통신(과·계열), 전산정보통신공학부, 전자거래학(과·전공),

전자상거래학(과·전공), 전자정보통신(과·전공·계열), 전자정보통신공학(과·부·군·전공), 정보·컴퓨터공학(부·전공), 정보경영공학과, 정보경영전공, 정보계열, 정보공학(과·부·전공), 정보과학(과·전공·부·계열), 정보관리(학)(과·전공), 정보및컴퓨터공학부, 정보보호(학)(과·전공), 정보보호공학전공, 정보분석학과, 정보사무자동화과, 정보산업(학)(과·부·전공·계열), 정보산업공학(과·전공), 정보시스템(학)(과·전공·과군), 정보시스템개발학과, 정보시스템공학(과·부·전공), 정보운영분석학(과·전공), 정보전자(과·전공·계열), 정보전자공학(과·부·전공·과군), 정보전자통신계열, 정보전자통신공학부, 정보전자통신과, 정보처리(학)(과·전공·계열), 정보처리공학과, 정보처리실무전공, 정보처리응용과, 정보컨텐츠과, 정보컴퓨터공학부, 정보컴퓨터학부, 정보콘텐츠과, 정보통신(학)(과·부·전공·과군), 정보통신공학(과·부·전공·과군·계열), 정보통신네트워크전공, 정보통신시스템(과·전공), 중국비지니스정보(과·전공), 컴퓨터·인터넷정보과, 컴퓨터과학(과·학과·부·전공), 컴퓨터네트워크(과·전공), 컴퓨터네트워크보안과, 컴퓨터네트웍·보안전공, 컴퓨터사무자동화계열, 컴퓨터사무정보계열, 컴퓨터시뮬레이션(학)과, 컴퓨터시스템(표준)학과, 컴퓨터시스템(학)(과·전공), 컴퓨터시스템공학(과·전공), 컴퓨터시스템관리전공, 컴퓨터시스템기계과, 컴퓨터시스템정보공학부, 컴퓨터시스템표준화학부, 컴퓨터·경영학(과·전공), 컴퓨터영상정보과, 컴퓨터영상정보통신학과군, 컴퓨터인터넷(과·전공·계열), 컴퓨터인터넷정보(과·계열·전공), 컴퓨터전공, 컴퓨터전기정보학(과·전공), 컴퓨터정보(과·전공·계열), 컴퓨터정보공학(과·전공·부), 컴퓨터정보과학(과·부), 컴퓨터정보관리(과·전공), 컴퓨터정보기술(과·학부·계열), 컴퓨터정보산업공학부, 컴퓨터정보소프트웨어학부, 컴퓨터정보수리학과, 컴퓨터정보수학과, 컴퓨터정보시스템(과·부·전공·계열), 컴퓨터정보시스템공학부, 컴퓨터정보전공, 컴퓨터정보전자공학과, 컴퓨터정보전학(과·전공), 컴퓨터정보제공전공, 컴퓨터정보처리(과·부·계열), 컴퓨터정보처리(학)전공, 컴퓨터정보통신(과·학과·학부·전공·계열), 컴퓨터정보활용과, 컴퓨터제어시스템(과·전공), 컴퓨터튜닝(과·전공), 컴퓨터프로그래밍(과·학과·전공), 테크노과학부, 티미디어시스템과, 하이테크CAD/CAM(과·전공), 해양정보시스템학전공, 행정사무전산학과, 행정정보관리과, 환경/화공·기계·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환경/화공·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군, CAD응용시스템전공, CAD정보처리전공, e-비즈니스학(과·전공), e-비지니스및창업학전공, e-비지니스정보계열, e-비지니스IT((학)과, 전공), e-비지니스IT광고정보전공, e-비지니스IT전자상거래기술전공, e-정보공학과, GIS과, IT계열, IT공학(과·전공·부), IT교육과, IT기반전자공학부, IT기술정보전공, IT디자인계열자율전공, IT-디자인-소방계열, IT마스터학과, IT스페셜리스트(과·전공), IT전자공학(과·부), IT정보계열, IT콘텐츠전공, IT특약계열, IT학부, OA실무정보과, OA정보시스템전공

※ '12. 6. 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게임 및 애니메이션 직무분야 관련학과]

문화체육관광부

3D그래픽(과・전공), 3D애니메이션(과,전공), 게임(전공,학과,학부), 게임, 멀티미디어공학전공, 게임, 미디어전공, 게임, 소프트웨어전공, 게임, 애니메이션학과, 게임개발공학(과,전공), 게임공학(과,전공), 게임그래픽디자인전공, 게임기획학(과,전공), 게임디자인공학(과・전공), 게임디자인컨텐츠표준전공, 게임디지털컨텐츠전공, 게임멀티미디어(전공,학과),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게임・모바일콘텐츠(학)(과・전공), 게임애니메이션(과,전공,학과,학부), 게임웨어(과,학과), 게임제작(계열,학과,전공), 게임창작과, 게임컨텐츠제작(과·전공), 게임컨설팅과, 게임컨텐츠전공, 게임프로그래밍학과, 게임PD전공, 그래픽게임전공, 그래픽애니메이션학과, 디지털게임애니메이션학과, 디지털게임전공, 디지털그래픽디자인(과,전공), 디지털문화콘텐츠공학(과,전공), 디지털미디어(학)(과・전공・부), 디지털애니메이션(과,전공,학과), 디지털애니메이션・디자인(과,학부), 디지털영상애니메이션과, 디지털캐릭터애니메이션전공, 디지털컨텐츠학(과・전공), 디지털콘텐츠(과,전공,학과,학부), 만화·애니메이션학(과・전공・학부), 만화・게임영상학부, 만화・영상애니메이션(과・전공), 만화애니메이션(과,전공), 만화애니메이션디자인(과,전공), 멀티미디어(계열・공학(과・전공)・공학부, 멀티미디어/웹디자인전공, 멀티미디어・게임공학전공, 멀티미디어정보처리전공, 멀티미디어컨텐츠(과,전공), 멀티미디어콘텐츠(과,전공), 멀티미디어학(과,학부,전공), 미디어콘텐츠(과・전공), 미래형게임, 사진·만화애니메이션전공, 사진・애니메이션학부, 사진영상애니메이션학전공, 시각디자인·애니메이션과, 시각디자인・문화컨텐츠학부, 시각디자인・실내디자인・애니메이션전공, 시각・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 애니매이션(과,전공,계열), 애니메이션게임과, 애니메이션디자인(과,전공,계열), 애니메이션미디어와테크닉,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과・전공), 애니메이션영상정보학과, 애니메이션영화과, 애니메이션콘텐츠학과, 애니메이션프로덕트인터렉션전공, 애니메이션학(과,부,과군),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학전공, 영상애니메이션(학)(과,전공), 영상애니메이션디자인전공, 영화방송애니메이션과, 영화애니메이션전공, 웹애니메이션전공, 캐릭터애니메이션(과,전공),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과,전공), 컴퓨터게임(개발)과, 컴퓨터게임(학)(과,전공), 컴퓨터그래픽(스)(과,전공), 컴퓨터그래픽디자인(학)(과,부,전공), 컴퓨터그래픽편집디자인학(과・전공), 컴퓨터그래픽학(과,전공), 컴퓨터문화산업계열, 컴퓨터애니메이션(과,전공)

편입원 출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하고 병역지정업체장은 병역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확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하고 배정인원(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는 업체 필요 인원) 범위 내 에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서식)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가입내역서 등의 서류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면허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

    ※ 정규대학이 아닌 경우에도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편입대상자 추천 시 편입대상자의 학력확인 철저
- 처리결과는 병역지정업체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병역판정검사

출원절차

- 산업기능요원 편입 자격을 갖추고 병역지정업체에 복무 중이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편입을 위하여 우선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장에게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

  ※ 19세자로서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다만, 고졸검정고시 하반기 미접수(미응시, 불합격) 등 학력변동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사람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민원 편의 및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 제고 차원에서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에도 편입 가능(산업지원과-766, 2016.3.3.)

구비서류

-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 병역지정업체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 병역판정검사일자 본인선택을 빠른 날짜로 선택하여 병역판정검사 실시 후 편입도 가능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제한

편입 제한 대상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법 제38조의2)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법 제87조)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법 제87조)
-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법 제88조)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법 제68조)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법 제68조)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훈령 제31조)
- 전문연구요원의 대학원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 복무, 산업기능요원의 취득한 기술자격 등과 다른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훈령 제30조)
-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전무연구요원으로 편입 불가(훈령 제31조)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가능)(훈령 제29조)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을 제한 받은 병역지정업체와 훈령 제20조2항에 따라 인원배정이 제한을 받은 대기업인 산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다만, 훈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훈령 제28조)
- 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훈령 제28조)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 확인 자료 제출

- 병역지정업체장은 법인등기부등본, 4촌 이내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등을 비치 관리하여야 함
-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하여야 함
- 병역지정업체장은 의견진술 시 대리인에게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진술방법은 진술서에 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병역법」 제95조제1항)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편입대상 :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출원기일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제출처

- 병역지정업체 근무자 : 업체 관할 지방병무청
-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하는 사람 :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

※ 편입원서를 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성실복무 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 기능특기자는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편입 가능함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편입대상

- 후계농어업경영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다만, 가족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 제외)
- 농업기계운전요원 :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 농업기계수리요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출원절차 및 기일

-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편입 희망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병역지정업체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후계농어업경영인의 경우만 해당) 또는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

● 구비서류

- 후계 농·어업경영인,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수리요원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후계 농·어업경영인 확인서(후계농어업경영인)
  - 업체현황조사서(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

● 의무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 3년
-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34개월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26개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편입자 :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계산방식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복무한 일수)/종전의 의무복무기간} × 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 복무할 해당 분야

- 전문연구요원
  - 편입당시 연구분야(대학원 전공분야)에 복무, 당초 편입한 연구소에서만 근무
    ※ 대학연구기관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연구조교 겸직 가능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하게 지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 학과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다만, 지도교수 사무실에서의 연구활동은 제외)

: 대학 연구기관(과학기술원 포함) 또는 우수집단인 연구기관의 장이 두뇌한국21 계획에 의한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사업장)의 국가기술자격(면허)의 해당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편입자

: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방위산업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

: 건설업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 분야

: 해운·수산업 :「선박직원법」에 의한 선박 승선 분야

-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부득이한 경우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복무할 수 있는 분야)

※ 정보처리 직무분야로 복무분야를 변경(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처리 분야 편입 요건 해당자에 한함

: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 외의 다른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다른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병역복무변경 ·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결과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에 복무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화재, 폭설, 폭우 등 재해로 공장 및 생산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임차(무료사용 포함)하고 생산설비를 옮겨 임시로 조업하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 일부 생산설비의 폐쇄 • 이전 • 축소 등 제조 • 생산공정의 변화로 편입 당시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 외 제조 • 생산분야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 복무분야변경(겸직) 신청 :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복무분야변경(겸직) 신청서를 제출

겸직금지

- 겸직금지 해당 직무
  - 「민법」, 「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 감사, 상무, 전무 등 임원의 겸직
  -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 겸직
- 겸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 연구업무 또는 제조 ·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 포함)

- 개인 영리활동 금지
  -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 영리활동 금지
  - 병역지정업체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연구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활동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개인자격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영리활동 불가 (단 소속 연구소장이 공동연구협약등에 따른 연구과제 부여 후 연구활동비 지급가능)

전 직

- **당연전직**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에 복무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함(이 경우에도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와 동일한 분야이어야 함)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현입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승인전직**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부당해고자 및 위반행위 신고자 등(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⑥, ⑧~⑫)은 전직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직접 제출가능

①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함)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전직할 업체 채용동의서 첨부)

- 전문연구요원 : 1년 6개월
- 산업기능요원 : 6개월(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

②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전직업체가 결정돼 있어야 함)

③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 기간 만료로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⑤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⑦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전직업체가 결정돼 있어야 함)

⑧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영 제91조의3제3항(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의 따라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결과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전직은 신고자에 한하며,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⑨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사유발생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이란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함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

⑩「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60일 이내까지 제출가능)

⑪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산업재해 보상보험법」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함)가 발생한 경우(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⑫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산업안전 보건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⑬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 폭행 등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기소유예 처분도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독가스, 방사선 등 유해물질 취급 업체 복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전직 승인

※ 용어해설

- 당연전직 : 반드시 다른 회사로 옮겨 복무해야함. 병역지정업체 사정으로 해당업체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을 경우가 해당됨
- 승인전적 : 본인의 원에 의해 다른 회사로 옮김. 지방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전 업체에서 퇴사하고 다른 업체에서 근무가능

• 전직제한

-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다만, 전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
- 편입 및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배정인원의 회수 또는 그 해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인원채용하지 아니한 업체는 제외)
- 당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 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 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 중견기업과 대기업인 산업체로의 전직(단, 보충역의 중견기업 전직은 제외)
-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농업회사 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 편입 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이외의 연구기관으로 전직
- 정보처리 직무 분야 편입요건(관련학과 전공, 복무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의 정보처리 직무 분야로의 전직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 대상업체 : 정보처리 업체, 게임S/W제작업체, 애니메이션제작업체, 영상게임기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방위산업체

– 전직대상 : 2년 이상 정보처리 직무분야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복무경력을 갖춘 사람(현역은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자격증 취득자)

※ 단, '09. 12. 9일 이전에 정보처리 직무 분야에 편입한 사람은 편입 시 자격 조건 적용

• 전직 대기기간

– 대기기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전직의 경우에는 전직 사유 발생일, 승인전직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 승선복무자의 경우에는 하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14일 이내 전직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봄

①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함)부터 의무복무기간이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산업기능요원 6개월을 경과한 경우

②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 전직 대기기간 연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3개월 범위 안에서 전직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당연전직 대상자가 3개월이 지나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지 못한 경우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1호(1년6개월, 6개월 경과 전직), 제2호(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또는, 제7호(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 규정 이외의 사유로 전직

: 기타 부득이하게 전직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직절차

- 전직희망자 :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전직승인신청서

: 옮겨 복무할 병역지정업체장이 발행한 채용동의서

: 정보처리 분야 전공 관련 증명서(정보처리분야 변경신청자에 한함)

: 전직사유 관련 증빙서류

- 병역지정업체의 장

: 전직에 대하여 의견을 기재하여 복무기록표 사본 등을 첨부, 14일 이내(「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는 7일)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병역지정업체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하고도 제출 기한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② 이 경우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 받아 처리

③ 지정한 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결정

: 병역지정업체장의 의견과 전직 희망자의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제도의 목적, 이 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병역지정업체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 전직 승인자의 관리

- 병역지정업체장은 의무자가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와 복무상황부

등을 전직할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새로이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병역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복무기록표와 개인별 복무상황부 등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 전직승인을 얻은 사람이 원래 병역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실상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국내 교육훈련 및 국내파견(출장)근무

• 승인기간

- 국내 파견(출장)근무

: 전문연구요원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2년

: 산업기능요원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 국내 교육훈련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6개월

• 절차 및 방법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파견 : 승인
-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출장), 병역지정업체간 파견 : 신상변동통보

※ 7일 이내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은 복무기록표의 기재, 정리로써 신상변동통보 갈음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파견 제한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 업체로의 파견
-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2년 이상 연속 배정을 받고도 배정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로의 파견(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파견은 가능)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출장 세부 범위

-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출장
- 연구 분야와 관련한 국내 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 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 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 기능요원이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 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출장 제한

- 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와 관련 없는 영업소 출장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 국내 파견 승인 범위

구 분	국 내 파 견	승인사유	승인기간
전문연구요원	○ 관련 업무수행 위한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간 파견 ○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 동일법인 내 비병역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구소로의 근무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에서의 근무 ○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파견근무 중인 비병역지정업체도 실태조사가 실시되도록, 비병역지정업체로 파견근무를 시키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비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협조 요청	○ 공동 연구 ○ 관련 업무수행 또는 공동연구	통틀어 2년 이내
산업기능요원	○ 동일업종 또는 분야의 병역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 동일법인내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의 제조·생산공장에의 파견(무등록공장, 조건부공장, 사업장 제외) ○ 그 밖에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 관련 업무수행	통틀어 1년 이내

● 국외여행 허가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 가능

• 허가기간 : 통틀어 1년 이내

• 의무복무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 기간은 해당 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 단,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국외여행 허가를 얻은 경우는 그 국외여행 기간을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

※ '15.7.1이후 편입자부터 적용(' 15.6.30 이전 편입자 종전규정 적용)

[병무청장이 정하는 1년 범위 국외여행허가 사유]

목 적	세 부 내 용	구 비 서 류
공동연구 (산업기능 요원제외)	국외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기술연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 기관과의 기술도입 계약이나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국외기술 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국외에서 소속 국내 병역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 관계에 있는 OEM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단,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 국외여행허가기간 준수 철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미귀국시 편입취소 대상
  - 국외여행허가 신청시부터 충분한 기간을 요청하고 반드시 허가기간 내 귀국 조치
  -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의 여행목적을 휴가범위 내 개인비용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단기여행으로, 해당분야 복무관련 여행(업체 단체연수 포함)인 경우에는 출장명령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업무출장 등으로 작성

    ※ 여행목적은 단기여행, 업무출장,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선박승무원 탑승, 국외 취업 중 선택

-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서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 규정」『별표2』에 의한 증빙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고 첨부서류는 파일첨부, 우편, FAX 송부(병무청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제재 → 국외여행국외제재 민원신청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신규 편입자 교육

- 교육 대상/시기

- 대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 시기 : 편입 후 2개월 이내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구분하여 실시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그 외 분야와 분리 실시,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기업부설 연구소 등 기타 전문연구요원과 구분하여 실시

• 교육 통보

- 교육일시·장소는 교육일로부터 7일전까지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단, 편입결과 통보 시 교육일지와 장소를 함께 통보 가능
- 교육을 받아야 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교육에 불참 시 재교육 실시

• 교육내용

- 복무규정, 관련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내용
- 위반행위 신고제도 등

※ 위반행위신고 제도 : 위반행위 신고방법, 신고자 보호, 포상금 지급기준 등

- 산업지원 병역일터 시스템(http:work.mma.go.kr) 활용방법 등

● 인사담당자 교육

• 교육 대상/시기

- 대상 :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 시기 : 가능한 연초(1~2월)에 실시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 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관리 담당 공무원은 분리하여 실시

• 교육 내용

- 인원배정절차,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취소, 의무자 복무관리사항
- 근로기준 위반업체 인원배정 제한등 관련법령 위반시 행정처분사항
- 산업지원병역일터 (http:// work.mma .go.kr) 활용방법 등

● 수학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수 없음

• 수학금지 예외

-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경우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6월 범위 내에서 업체

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를 한 후 수학 가능
: 수학의 신상변동통보 기간 : 수학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상변동통보 절차: 의무자 → 업체의 장 → 관할 지방병무청장

- 복무만료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수업 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하지 않는 경우(다만, 연간 잔여 휴가 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신상변동통보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가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사유 및 업체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상변동통보서에 구비서류를 갖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의무자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유 및 구비서류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퇴사 : 사직서, 복무기록표
  - 해고 : 해고예고 통보서, 징계위원회 결정문, 복무기록표
  ※ 자퇴/제적 : 자퇴서, 제적처분 관련서류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 휴직 : 휴직원, 정직 : 징계위원회 결정문, 전입 : 재직증명서
-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 7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
-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 출장 또는 파견 명령서 등 관련 서류
  ※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 · 정리로 갈음
-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등 기타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무단결근 확인서 등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병역지정업체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유 및 구비서류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영업정지 관련 서류
-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로서의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업종변경,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
  - 각종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합병계약서, 고용승계서
- 공장 내에 다른 법인(또는 개인사업장)이 입주하였을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속한 법인의 기업규모가 변동된 경우
  - 전년도 감사보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신상변동통보 유의사항

- 신상변동 사항은 의무자에 대해 편입취소(현역병 의무부과 등) 복무연장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14일 이내에 통보
- 병역지정업체장이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
- 휴직 또는 병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급휴직, 무급휴직, 병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상변동통보(진단서, 산재요양서, 품위서 등의 증빙서 붙임)
-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명칭·소재지 등의 일치 여부 확인
- 구비서류가 늦어질 경우, 서면으로 소재지 이전 신고 후 사후 보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편입취소

- 편입취소 사유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법」 제38조의2(병역지정업체

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병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군 전공의 수련과정이수자의 경우는 37세)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 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수학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병역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편입취소 절차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한 때에는 편입취소 처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

※ 전직대기기간 초과로 편입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직대기기간 경과되기 전에 앞으로 남은 전직대기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됨을 안내

• 의무부과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

• 의무복무 중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때」에는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취소를 유보

• 편입취소 유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

청장에게 편입취소 유보신청서에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소송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유보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편입취소 유보결과 처리

-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 결과 확정시 처리
  : 적법,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 복직하거나 전직이 가능하며,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는 구제신청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 의무자가 복무 중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취하하였을 경우
  : 의무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취하한 경우 : 편입취소
  : 화해가 성립하여 복직과 동시에 취하한 경우: 신분유지
  ※ 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법원 등 화해 성립 시 : 신분유지(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업체장이 법원의 화해성립 이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화해한 경우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업체 2년간 인원배정 제한

● 편입취소된 사람의 군복무기간 단축

- 군사교육소집기간은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은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에 의한 전·공상 보충역 및 구 병역법에 의한 독자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단축되지 않음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군사교육소집

● 군사교육소집 기본 방침

- 편입 후 가급적 6월 이내 실시

- 국외근무 등의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의무복무 중 편입 취소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

-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을 20일 이상 받은 사람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사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 또는 동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3급이 포함된 사람

-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 군사교육소집 제외대상자로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람
  ① 같은 병명으로 반복 귀가(퇴영)된 사람 중 입영신체검사 및 재신체검사에서 명시된 치유기간을 합산하여 그 치유기간이 통틀어 6개월이 초과된 사람
  ② 다른 질병으로 3회 이상 귀가(퇴영)된 사람
  ③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
- 신체등급 4급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사람 중 반복 귀가(퇴영 포함) 등 군사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

•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되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의무자의 신청에 의거 선발하며, 계획인원 충원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선발
- 편입일자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

•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포탈>산업지원>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 신청제한 대상
  ① 군사교육소집일자가 이미 결정된 사람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③ 해당연도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2회 이상 취소한 사람
-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취소 신청은 군사교육소집 통지 전까지 가능, 통지 후는 기일연기 신청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아래 사항의 경우 군사교육소집 실시를 유보할 수 있음
- 전직 대기 중인 때(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전직대기기간에서 제외)
- 30일 이상 병가 중인 때
- 연구요원이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경우
- 국외 근무 또는 승선 중일 경우

● 군사교육소집 기간

군사교육소집은 30일 이내 실시(현행 4주간 군사기초훈련)하며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범위

- 입영부대장은 군사교육소집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영시킬 경우에는 기간, 퇴영 사

유 등을 명시하여 퇴영하는 사람의 병적기록표와 인사명령서 등의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퇴영사유

▶ 훈련기간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때

▶ 범죄사실로 훈련기간중 형사입건 되는 때

▶ 훈련 기간중 범죄행위를 한때

▶ 기타 군사교육소집 부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하는 때

●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송달

입영일 30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입영일 15일 전까지 의무자에게 송달, 다만,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송달 기간 단축 가능

※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의 훈련소 월급은 지급하지 않으며, 지정업체는 군사교육소집기간중의 보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회사사규에 의거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체도 있음

■ 휴가병가 등

● 휴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함
-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경우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복무

※ 신상변동 통보 대상

● 병가

•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때 병가 신청

- 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
- 의무복무기간 통틀어 30일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 복무
-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 「선원법」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병역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에 입게 된 부상·질병 또는 장해(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상으로 인증된 경우만 한정)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한하여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결근

- 지각 · 조퇴 · 외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 조퇴 · 외출 등을 할 때는 사전에 복무상황부에 기재하여 병역지정업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 허가)
  - 지각 · 조퇴 · 외출(업무상 외출 제외).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
  - 1일 결근은 1일 연장복무대상. 그러나 결근이나 병가로 인한 연장복무 대상을 연 · 월차 휴가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연장복무 비대상(신상변동통보 비대상)
- 무단결근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함
  -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무단결근 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무단결근기간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의 계산 시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 (단,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기간 및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 포함)
    ※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 →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의무복무 기간의 만료

전문연구요원은 3년간, 산업기능요원은 34개월간(단,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 해당 분야에 복무한 때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향토예비군 편성 대상)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편입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

-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산입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 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수학을 마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는 날

-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계속하여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에 있는 사람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대학원의 연구요원으로 복무하는 날
-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20일 이상 군사훈련을 받고 전문연구요원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그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 군사교육소집 중 입게 된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제외) 또는 정직 기간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 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또는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 기간(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에 관련된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영 제85조제2항제1호, 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복무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 연간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기간

● 복무만료 대상자 통보

병역지정업체장은 의무복무기간 만료대상자를 복무만료 되는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복무기록표 원본을 첨부, 복무만료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복무만료 처분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게 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 귀가 등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안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병역처분변경

출원사유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발행하는 병무용진단서를 첨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

출원절차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거나 의무자가 직접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

구비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병무용진단서(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 당해 질병으로 1월 이상 입원사실이 있거나 수술을 받은 사람 또는 계속하여 6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사람은 당해 병원의 비지정병원 병무용진단서도 가능

※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복무 기간 중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변동 없이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라 의무복무하여야 하며, 편입취소가 되는 경우 원신분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함(다만, 편입 취소 당시의 병역처분 기준에 의하여 보충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체검사시 평가기준과 편입취소 당시의 징병신체검사 등 신체검사규칙의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해당부령의 과목별 세부 질병 · 심신장애 정도가 같은 경우를 말함)에 한하여 보충역 처분가능)

실태조사

개 요

- 연1회 이상 모든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불시 실태조사
- 복무관리부실 업체 및 민원유발 업체 등에 대하여는 수시 실시

실태조사 사항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해고·퇴직 또는 휴학·제적 여부
- 편입당시의 해당분야 복무 여부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충족 여부
- 편입당시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여부 또는 후계·농업인의 자격상실 여부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폐업·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으로 인한 연구 또는 조업활동 중단 여부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대표자 변경 및 소재지의 변경 여부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와 복무기록표 등 관계서류의 비치 및 정리실태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과 병역지정업체 변경사항의 통보 및 자원관리실태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 국외여행자의 국외여행 목적대로의 업무수행 여부
- 기타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 실태조사 결과처리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실태조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실태조사관은 위반내용 및 기간에 따라 병역지정업체 고발, 경고, 주의, 시정 등의 행정처분 및 의무자는 편입취소, 연장복무, 경고 행정처분
  - 고발 업체 :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인원배정 제한
  - 경고 업체 :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인원배정 제한
  - 주의 업체 : 다음 연도부터 1년간 인원배정 제한

※ 그 해의 배정인원 중에 편입하지 않은 배정인원 회수

-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가능

【병역법시행령 별표 3】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 기간 연장기준 등(영 제91조의3제2항관련)

유 형	내 용	처 리 기 준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연장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통보 없이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에 근무	가.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분야(연구·제조·생산 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연장복무
	나. 편입 당시의 연구·기술자격·면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제조·생산 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3. 겸직금지 규정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 · 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연장복무
		1개월 미만	경고
4. 수학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통보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연장복무
5.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 연장복무 후 다시 연장복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연장복무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병무청 훈령 별표 3】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

유 형	내 용	위반기간	처분
1. 편입 당시 병역지정 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등	가. 편입 당시부터 병역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때		고발
	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킨 때	1월 이상	고발
		1월 미만	경고
	다. 승인 또는 신상변동통보 없이(지연통보 포함)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를 시킨 때	3월 이상	고발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월 미만	주의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등	가. 편입 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 외(사무직, 영업직 등 제조·생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분야에 근무시킨 때	1월 이상	고발
		1월 미만	경고
	나. 편입 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제조, 생산 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시킨 때	3월 이상	고발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월 미만	주의
3. 수학금지 규정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승인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도록 허용한 때	6월 이상	고발
		6월 미만	경고
4. 겸직금지 규정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고 있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도록 한 때	3월 이상	고발
		1월 이상 3월 미만	경고
		1월 미만	주의
5. 신상변동 통보규정 위반	가. 허위통보		고발
	나.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1월 이상	주의
		1월 미만	시정
	다.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3월 이상	주의
		3월 미만	시정
6. 자원관리 소홀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제73조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또는 미정리		시정
	나. 복무기간만료 통보 지연	10일 이상	시정
7.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중처벌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때		고발
	주의 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주의처분을 받게 되는 때		경고
	시정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2회 이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주의 이상 처분 후 다시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의

1. 가중처벌 여부는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내에 위반사항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2. 동일사항이란 위반내용 가, 나, 다, 라 “목”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목”내에서의 내용을 동일사항으로 본다.
3. 제5항 다목의 신상변동통보사항 중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 등 다른 업체 근무사유에 대한 규정위반은 1항 다목을 적용한다.
4.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기간은 각각 발생한 단일 건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문 의 1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와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변

● 병역지정업체 선정절차는

-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갖추어 매년 6월 30일까지(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매년 1월 31일 및 6월 30일까지) 추천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 추천권자는 해당 업체에 대하여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매년 2월 말 및 7월 31일 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 병무청장은 매년 10월 중(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매년 4월 및 10월 중)에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다음연도 배정인원을 매년 11월 말경에 통보하게 됩니다.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기관

1.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선정신청서
2.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이나 대학연구기관은 학칙,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은 연구기관 설치.운영 규정
3.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사본(과학기술원 및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대학설치인가 확인서, 과학기술원 부설 연구소 및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학칙을 말함) 또는 방위산업 연구기관 위촉서 사본
4.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및 학위수여증명서(자연계 연구기관 중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이 2명 이상 5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5. 벤처기업 확인서(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에 한함)

- 기간 및 방위산업체
  1. 병역지정업체(기간·방위산업체)선정신청서
  2. 광업원부등본(광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채굴업체에 한함)
  3. 해당 업체의 사업체 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 산업, 광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에 한함)
  4.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에 한함)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규칙 제48조



문 의 2

기간산업체 병역지정업체 선정 접수처 및 추천권자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기간산업체의 병역지정업체 업종별 추천권자 및 접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통신기기, 정보처리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042-481-4482(인력개발과)
	의료의약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070-8892-3742) 한국제약협회(02-6301-2111) 대한화장품협회(02-785-3898)	보건복지부장관 044-202-2962(보건산업진흥과)
	식품음료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69)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2014(식품정책조정과)
	동물약품	시, 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044-201-2373(방역관리과)
	농산물가공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6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044-201-2133(식품산업진흥과)
	수산물가공	시, 도	해양수산부장관 044-200-5486(수출가공진흥과)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042-481-4205(목재산업과)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콘텐츠진흥원 (031-778-200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044-203-2447(게임콘텐츠산업과)
해운. 수산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수산부장관 044-200-5744(선원정책과)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광 업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042-481-4482(인력개발과)
에 너 지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장 042-481-4482(인력개발과)
건 설		대한건설협회(02-3485-8275) 대한전문건설협회(02-3284-1029) 대한설비건설협회((02-6240-1153),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장관 044-201-3541(건설인력기재과)
방위산업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문의 2

각 지역 중소기업청 접수처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 중 공업, 광업, 에너지분야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증빙서류**는 동 기간동안 **접수기관(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됩니다.

지역	접 수 창 구	주 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지방 중소기업청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우.13809)	02)2110-6344,6368,6369
인천	인천지방 중소기업청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우.21632)	032)450-1120
경기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우.16705)	031)201-6991,6993,6996, 6850,6832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	경기 양주시 평화로 1215 섬유종합지원센터 2층(우.11497)	031)820-9013
충북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우.28119)	043)230-5309,5319
대전 충남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충남사무소(천안,아산,당진,서산,태안,예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2층 (우.31169)	041)564-2283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세종 포함)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우.34111)	042)865-613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구시 달서구 성서 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1111) (우.42724)	053)659-2239,2236,2277, 2249
부산 울산	부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우.46754)	051)601-5128,5123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지방중소기업청(3층) (우.44248)	052)210-0009
경남	경남지방중소기업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신월동) (우.51439)	055)268-2526
강원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우.24427)	033)260-1613
전북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77 (우.54966)	063)210-6434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광주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농성동) (우.61928)	062)360-9142
제주	제주시험연구센터	제주시 월평9길 2-21 (우.63311)	064)723-2102

문 의 3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순위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 변

● **2016년도 기준 병역지정업체 선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1순위	2순위
대상	ㅇ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 업체 ㅇ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협약업체 ㅇ 일·학습병행제 참여 업체 *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예정자 포함)인 경우 해당 ㅇ 산학일체형 특성화고 도제식교육 참여업체	ㅇ 특성화고와 산학연계 협약 (기업-학교, 2자 협약)업체 ㅇ 산학연계사업 미참여 업체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동일한 순위에서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순위 해당 업체는 병무청 실태조사일(10월경) 현재 협약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함 (단, 졸업예정자는 채용예정인 경우에도 선정)

● 2016년도 기준 **인원배정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1순위(19세 이상)	2순위	3순위
대상	○ 특성화고 졸업자 중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자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 - 도제식교육 참여자 ○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졸업자	○ 특성화고 졸업자 (1순위 외)	○ 1,2순위 외

* 중앙행정기관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 중소기업청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취업 맞춤반, 특허청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특성화고 육성사업

*** '99년 출생자('18년 만19세)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1, 2순위 배정 후 잔여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3순위에 우선하여 배정**

* 일·학습병행제 참여자의 경우 현장외훈련(이론교육)이 평일에 주간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근로자는 인원배정 제외('18년 중에 학습종료자는 배정대상)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배정인원에 대해서는 최종학력이 특성화고(대안교육분야 제외)·마이스터고 졸업자의 경우에만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다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업체에 취업한 상태에서 야간, 주말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가능)

* 3순위 인원은 지방청 복무관리 및 추천권자 평가 등을 고려하여 평가점수 상위 순으로 배정

문 의 4

병역지정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할 경우 승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봅니다.
  - 병역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병역지정업체와 합병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로부터 5척 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어선이나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 운송선박을 인수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 관련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승계 시 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만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 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한 경우 승계불허
  - 병역지정업체가 2개 이상으로 분할(분사 포함)된 때 승계 불허
- 승계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구 기 관	산 업 체
1.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양도·양수(인수·합병)계약서 사본 3. 연구기관 변경신청서 사본 4. 연구기관 인정서 사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벤처기업에 한함) 7.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및 낙찰목록 사본(법원의 경매에 한함) 8. 고용승계 확인서	1. 승계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양도·양수(인수·합병)계약서 사본 3.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업 분야에 한함) 4.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증·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에너지, 광업, 건설업, 해운업에 한함) 5. 방위산업지정서 사본(방위산업체에 한함) 6. 선박보유현황서(해운·수산업에 한함) 7. 낙찰허가결정서 사본 및 낙찰목록 사본 (법원의 경매에 한함) 8. 고용승계 확인서 9.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75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

문의 5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지요?

답 변

● 연구기간 및 기간산업 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또는 복무관리 부실 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산업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연구요원,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선정 추천권자의 평가 추천 등급이 낮은 업체
-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 분야 업체로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업체
-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산업체에 한함)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9조, 제11조

문 의 6

병역지정업체 명단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답 변

- 병무청장은 매년 10월 중(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은 매년 4월, 10월 중)에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여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 추천권자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익년도 배정인원을 통보하며,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홈페이지에 매년 11월 말경에 업체별 배정인원을 공고 합니다.

-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편입 가능한 업체목록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국·실별 주요정보 → 사회복무국에서 업체목록 조회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http://work.mma.go.kr) → 병역지정업체 검색 에서 업체목록 검색 가능
  - 해당지역 관할 지방병무청 홈페이지 → 소식·정보 → 자료실 → 업체명단 및 조회 가능

문 의 7

병역지정업체의 인원배정 기준은 어떠한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인원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인원배정은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의 평가등급(점수)과 지방청의 복무관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편입인원은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소요신청 범위 내에서 교육부에 총괄 배정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필요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생은 박사과정 수학 중인 국비장학생 선발인원 범위에서 배정

●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와 취업협약을 체결하고 해당학교 졸업생을 채용한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
- 현역은 중소기업만 배정(다만, 방위산업 분야는 중견.대기업도 배정), 중견기업은 보충역만 배정
- 병역지정업체별 신청인원 범위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지방청의 복무관리 평가결과 고려하여 배정
- 해운·수산업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 농·어업 분야는 별도 배정
-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시·군·구별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전공자 위주로 별도 배정

관련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6조 내지 제18조

문 의 8

병역지정업체의 배정인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답 변

● 복무관리와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경고, 고발 등의 복무관리 부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해의 배정인원 중에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하고 다음 해의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인원배정 제한

- 병역지정업체 또는 병역지정업체장이 복무관리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당해연도 잔여 배정인원 회수 포함)
  : 고발업체 : 3년간 배정제한
  : 경고업체 : 2년간 배정제한
  : 주의업체 : 1년간 배정제한
-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평가결과 불합격 평가 업체 : 1년간 배정제한
- 2년간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채용실적이 없는 업체: 1년간 배정제한
- 산업체 중 대기업(해운·수산업 및 방위산업 분야 제외)

  ※ **대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병역지정업체를 말함
-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미달한 업체 : 1년간 배정제한
- 병역지정업체 중 파산이 확인된 업체(업체의 부설연구기관 포함) : 1년간 배정제한
-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년간 배정제한
-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위법·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 2년간 배정제한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 3년간 배정제한
- 「산업안전 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

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산업체 : 2년간 배정제한
- 방위산업체로서 최근 3년 연속하여 방산물자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 1년간 배정제한

● 배정인원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복무관리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전까지 잔여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

  ※ 단, 위반행위 확인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을 위하여 해당업체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사람은 행정처분 전까지 편입원서 제출 가능 → 취업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처리

-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잔여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받은 병역지정업체장은 잔여 배정인원을 사용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 복무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후 잔여 배정인원 회수



관련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19조 내지 제20조

문 의 9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는 어떠한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 중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사람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 병역법시행령 제78조의 2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한하며, 선발은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원성적, 영어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4월, 9월)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을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37조,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문 의 10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석.박사학위 통합된 과정 포함)을 수료한 사람(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의무복무기간을 37 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교육부에서 선발시험 합격자로 통보한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에 한함(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과학기술원 제외)

● 편입원서 출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병역법 제38조의2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은 배정인원(보충역은 업체 필요인원) 범위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구비서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 박사학위과정 수료증명서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계 대학원(이공계· 기초의학계 분야)에 복무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은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인재양성사업팀에서 주관, 대학원 성적, 영어성적,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구 분		배 점	비 고
공인인증시험 점수	영 어	300점	환산점수 반영
	국 사	0점	3급이상 통과(PASS)
	계	300점	
출신대학 성적반영	대학원 전과정 성적	300점	출신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 환산점수
총 점		600점	

- 영어시험: 서울대언어교육원 TEPS (시험성적을 300점 만점으로 환산, 500점(환산점수 151.52점) 미만은 과락)
- 국사시험 :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인정범위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유효한 성적
  - 인정수준 : 3급 이상 합격자
- 가산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에 대하여는 관련서류 제출 시 영어시험 배점의 5%(15점) 가산점 부여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① 대학원성적 고득점자 → ② 영어성적 고득점자 → ③ 연소자

●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 신청 및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총 2회 (매년도 4월, 9월)
- 지원서 접수
  - 해당 대학에서 지원서를 취합하여 한국연구재단에 일괄접수(개별접수 불가)
  -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공문서+제출서류)
- 접수기관
  -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인재양성사업팀
  - 문의 : Tel 042)869-6454
  - 주소 :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관련규정 : 병역법 제37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문의 11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전직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정보처리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역병 입영 대상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취득자로서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증 취득여부 관계없이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

● 편입대상 업종은 정보처리 업체, 게임S/W 개발업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영상게임기 제작업체,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 방위산업체이며, 정보처리 분야 전공범위 및 관련 학과 범위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 전공, 기술훈련과정 또는 해당 분야 복무경력범위
  - 고등학교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자
  -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국외대학의 학과는 국내대학의 분류기준에 준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 전공으로 관련학과를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복무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 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문야 기술훈련

과정 이수 경력과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 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 정보처리관련 직무분야 학과 범위
  - 「국가기술 자격법」에서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학과
    * 게임 및 애니메이션 직무분야 관련학과 포함
  - 지방병무청장이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 직무 분야 관련 학과로 인정한 학과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내지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27조

문 의 12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답 변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법 제38조의2)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법 제86조)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법 제87조)
-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법 제87조)
-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람(법 제88조)
-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법 제94조)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이탈(1일 이상)한 사람(법 제68조)
- 고의로 병역의무의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법 제68조)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훈령 제31조)
- 전문연구요원의 대학원 전공분야와 다른 분야에 복무, 산업기능요원의 취득한 기술자격 등과 다른 분야에 복무하고자 하는 경우(훈령 제30조)
-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전무연구요원으로 편입 불가(훈령 제31조)
-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 학적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가능)(훈령 제29조)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을 제한 받은 병역지정업체와 훈령 제20조2항에 따라 인원배정이 제한을 받은 대기업인 산업체는 해당 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음(다만, 훈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훈령 제28조)
- 의무사관후보생 중 자연계대학원박사과정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훈령 제28조)

관련규정 : 병역법 제38조의2, 병역법시행령 제81조의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 제28조 내지 제31조, 제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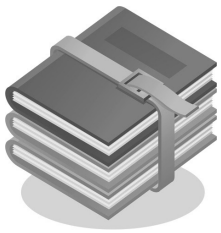
문 의 13

대학원 학력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한가요?

답 변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대학원 입학사실이 있는 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는 대학원 재학·휴학·중퇴 또는 졸업자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79조



문의 14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구비서류와 제출기일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원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연구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를 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업체의 장을 통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업체 및 편입신청자에 대한 편입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편입 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의 장을 거쳐 편입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및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학위수여증명서(또는 학위증 사본), 수료관계증명서(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사람)
- 기간·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정보처리 분야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 편입원서 제출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 졸업 또는 학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입영(소집) 5일 전까지
- 산업기능요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부터 입영(소집) 5일 전까지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78조 내지 제81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51조 내지 제54조

문 의 15

기능특기자(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는 어떠합니까?

답 변

- 기능특기자 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이며,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지정업체 복무자 : 업체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원서 제출
  -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편입원서 제출

  ※ 기능특기자는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편입 가능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편입원서 출원 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부터 입영(소집) 5일 전까지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0조

문 의 16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과 절차는?

답 변

●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계농어업경영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로서 농어업에 복무하는 사람(다만, 가족 중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 제외)
- 농업기계운전요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 운전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 농업기계수리요원 :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운전·운송, 건설기계운전, 기계 또는 재료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사후관리 업체의 농업기계 수리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원 제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인원 범위 안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영 통지나 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이나 소집일 5일전까지)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 후계농·어업경영인확인서(후계농어업경영인)
- 업체 현황 조사서(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1조

문 의 17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 변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발급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 병역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에는 병역지정업체의 변동사항 및 신상변동사항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고,
- 출·퇴근 기록은 개인별로 매일 파악하여야 하고 지문 또는 홍채 인식이나 ID카드에 대한 전자인식 및 기계식 관리 방식에 따라 매월 출퇴근 기록을 출력하여 따로 관리

●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 산업기능요원 명부 관리와 복무실태를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점검부에 의하여 점검하되, 다음 사항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해고 또는 퇴직 여부
  -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 복무 여부
  - 기술자격·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후계 농·어업경영인의 자격상실 여부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 여부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변경·소재지 이전 및 후계 농·어업인경영의 사업장소 변경여부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신상변동통보 및 자원관리 실태
  - 그 밖에 농어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와 관련된 사항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2조

문 의 18

의무복무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편입된 날로부터 기산하게 되며, 전문연구요원은 3년간,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편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입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편입자 복무기간 = {(종전의 의무복무기간-복무한 일수)/종전의 의무복무기간}×산업기능요원 의무복무기간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39조

문 의 19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해당분야는 무엇인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업체와 연구분야 또는 직무분야에 근무해야 하며,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연구요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 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하게 지정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 학과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지도교수 사무실에서의 연구 활동은 제외됨)
  -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 포함) 또는 우수 집단인 연구기관의 장이 두뇌한국 21 계획에 의한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 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
-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복무분야변경(겸직)신청서 제출)
  - 다른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에 복무하거나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 외의 다른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라 겸직하는 경우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중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결과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생산·제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에 복무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화재, 폭설, 폭우 등 재해로 인하여 공장 및 생산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임차(무료사용 포함)하고 생산설비를 옮겨 임시로 조업하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일부 생산설비의 폐쇄, 이전, 축소 등 제조•생산 공정의 변화로 편입 당시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의 제조•생산 분야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관련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6조

문의 20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른 직무의 겸직이나 수학이 가능한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 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직무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 「민법」 및 「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 편입당시 연구 분야 또는 제조·생산 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 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경우
-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 일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관련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

문 의 21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직이 가능한지요?

답 변

● 의무복무기간 중 당연히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편입한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자 및 위반행위 신고자 등(병역법시행령 제85조제2항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⑥, ⑧~⑫)은 전직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직접 제출가능

①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함)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전직할 업체 채용동의서 첨부)

- 전문연구요원 : 1년 6개월
- 산업기능요원 : 6개월(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

②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전직 업체가 결정돼 있어야 함)

③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 기간 만료로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⑤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해고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⑦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전직업체가 결정돼 있어야 함)

⑧ 병역지정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영 제91조의3제3항(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시)의 따라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 확인결과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전직은 신고자에 한하며,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⑨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 담당하는 사람이란 병역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함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

⑩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60일 이내까지 제출가능)

⑪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함)가 발생한 경우(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⑫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전직승인신청서를 전직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⑬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방사선·유해화학물 등 유해물질 취급 중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 폭행 등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한 피해로 해당업체에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기소유예 처분도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독가스, 방사선 등 유해물질 취급 업체 복무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을 희망할 경우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전직 승인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39조 내지 제44조

문 의 22

승인전직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14일(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12호까지는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신청. 다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부터 직접 받아 처리할 수 있음.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인 여부를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

● 당연 전직의 경우는 전직 사유 발생일, 승인전직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승선복무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14일 이내 전직

① 전문연구요원(자연계대학원전문연구요원은 제외)이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함)부터 의무복무기간이 전문연구요원 1년 6개월, 산업기능요원 6개월을 경과한 경우

②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복무를 원하는 경우

③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외의 연구기관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

●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보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

문 의 23

전직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떠한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전직승인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승인전직대상자로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다만, 전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
- 편입 및 복무관리부실 등으로 배정인원의 회수 또는 그 해 인원배정이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동일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인원채용하지 아니한 업체는 제외)
- 당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 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 당해 전문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 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 방위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 중견기업과 대기업인 산업체로의 전직(단, 보충역의 중견기업 전직은 제외)
-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이 농업회사 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 편입 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병역지정업체로의 전직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 이외의 연구기관으로 전직
- 정보처리 직무 분야 편입요건(관련학과 전공, 복무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의 정보처리 직무 분야로의 전직
- 병역지정업체장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업체로의 전직

관련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3조

문 의 24

전직 대기기간은 어떠한가요?

답 변

● 전직 과정 시 전직 대기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전직의 경우에는 전직사유 발생일, 승인전직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날, 승선복무자의 경우에는 하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함. 이 경우 전직 대기 기간(3월)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
- 2016년 6월 14일부터는 본인의 원에 의한 승인전직의 경우,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어야만 전직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전직대기기간이 14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3개월 범위 안에서 전직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당연전직 대상자가 3개월이 지나도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지 못한 경우
-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연구 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승선복무 중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하선한 경우 또는 선박 수리 등으로 3개월 이내 재승선이 어려운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통틀어 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또는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함)가 발생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 그 밖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행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42조

문 의 25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 시 다른 기술자격으로 복무가 가능한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 전직할 병역지정업체는 편입 당시의 전공 분야에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할 경우에는 편입 당시의 기술자격(다른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포함)으로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편입 당시 기술자격 이외 다른 기술자격으로 제조·생산 분야 복무가 가능하며, 또한 현역병으로 편입한 사람이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은 경우 편입 당시 기술자격 외의 제조·생산 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 분야의 근무도 가능합니다.
  - 복무분야 변경(겸직) 신청 시 구비서류
    - 복무분야변경(겸직)신청서
    - 새로운 분야 기술자격증 사본(보충역은 필요 없음)
    - 정보처리 분야 전공, 기술훈련 과정의 수료 또는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관련 증명서

    ※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복무분야변경(겸직)신청서를 지방병무청에 제출 시 해당 산업기능요원의 동의여부 및 추가 이유를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정보처리 분야로 복무분야 변경을 위해서는 (문의 8번) 정보처리 분야 편입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복무분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6조, 제40조

문의 26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 중 승인전직의 사유에 해당되어 소속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 승인신청을 했을 때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에 동의하지 않고 14일(「병역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으로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 제 6호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 제 8호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제 9호 : 병역지정업체의 장(병역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포함)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제10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
- 제11호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사망에 이른 경우만을 말함)가 발생한 경우
- 제12호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경우

● 이때 지방병무청장은 전직하고자 하는 사람과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의견을 비교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9조

문 의 27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출장 및 산업기능요원의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 국외여행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 국외여행 허가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추천 기간까지입니다.

- 의무복무 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국외여행 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문 의 28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사유 국외여행허가 범위와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국외여행 범위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 적	세 부 내 용	구 비 서 류
공동연구 (산업기능요원제외)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 계약서사본, 공동연구 협약서 사본 또는 기술협력 협약서사본 중 해당 서류
기술연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협약에 의한 국외기술 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 계약서 사본 또는 기술협력 협약서 사본(연구장비의 도입 계약서에 기술연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기술지도	국외에서 소속 국내 병역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 관계에 있는 OEM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 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단, 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7조

문 의 29

복무 중 국내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가 가능한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 교육훈련 및 국내 파견(출장 포함)근무는 다음 기간과 범위 안에서 가능하며, 그 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

- 국내 교육훈련은 의무복무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 국내 파견(출장)근무는 전문연구요원은 통틀어 2년, 산업기능요원은 통틀어 1년

● 국내 파견 범위

전문연구요원

-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
- 공동연구를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또는 동일 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연구소로의 파견
-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구소로의 파견
-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로의 파견
-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산업기능요원

- 동일 업종 또는 분야 병역지정업체 간 파견
- 동일법인 내 비병역지정업체 제조·생산공장 파견
  ☞ 무등록공장, 조건부공장, 사업장 제외

● 출장의 범위

전문연구요원

-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 간 출장
- 연구 분야와 관련한 국내 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 전문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시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산업기능요원

-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병역지정업체간 출장
- 산업기능요원이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 및 출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파견근무 제한 】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의 해당 업체체로의 파견
- 그 해 고발.경고.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그 해의 인원배정 제한된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의 파견은 제외)

【 국내출장 제한 】

- 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영업소
-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훈련승인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국내 교육훈련·국내 파견(출장)근무와 병역지정업체 간의 파견근무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통보로 승인에 갈음합니다.

- 승인신청 :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출장), 동일법인내 비병역지정업체 파견
- 신상변동통보 : 8일 이상 3개월 미만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병역지정업체간 파견
- 복무기록표 기재.정리 : 7일 이내의 교육훈련 및 파견(출장)



관련규정 :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6조

문 의 30

군사교육소집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일로부터 가급적 6월 이내에 4주간(30일 이내)의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게 됩니다.

- 군사교육소집통지서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30일 전에 작성하여 병역지정업체·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입영(소집)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다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전직 대기 중인 때(군사교육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잔여 의무복무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전직 대기 기간에서 제외)
  - 30일 이상 병가 중인 때

- 의무복무기간 중에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67조, 제68조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8조

문의 31

산업기능요원이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병역지정업체는 군사교육소집기간중의 보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회사사규에 의거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문 의 32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하다 퇴사 시 복무기간 단축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퇴직하여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기간은 군사교육소집기간만큼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제외한 의무복무기간은 매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 다만, 전·공상 사유로 인한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신분이 복귀된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군사교육소집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분이 복귀된 경우에는 현역병의 군사교육과 훈련과목 및 훈련기간 등 교육과정을 달리하므로 현역에서 실시하는 기초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며,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신분이 복귀된 경우에는 다시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문의 33

의무복무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 승선 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
  - 군간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20일 이상 군사훈련을 받고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그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문 의 34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 휴직(「근로기준법」, 「선원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 군사교육소집 중 입게 된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제외) 또는 정직 기간
- 병역지정업체의 휴업, 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운용 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 또는 통틀어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여행 기간(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에 관련된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국외여행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
- 승선복무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 중 3개월(영 제85조제2항제1호, 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을 초과하는 기간
-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기간

  ※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복무
- 의무복무기간 중 통산 8일 미만의 무단결근 기간
- 연간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기간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문 의 35

복무만료 처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복무만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자명단과 복무기록표 원본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
  - 복무만료 처분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송달

- 다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 또는 승선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 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만료 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시행령 제90조

문 의 36

신상변동통보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변

● 병역지정업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농기계수리 · 운전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장은 지방자치단체장 경유)에게 신상변동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의무자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유>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퇴사 : 사직서, 복무기록표
  - 해고 : 해고예고 통보서, 징계위원회 결정문, 복무기록표
  ※ 자퇴/제적 : 자퇴서, 제적처분 관련서류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휴직하거나 정직된 경우 또는 다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전입한 경우
  - 휴직 : 휴직원, 정직 : 징계위원회 결정문, 전입 : 재직증명서
- 의무복무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틀어 30일을 초과하는 휴가.휴직 및 결근을 한 경우
  - 7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
- 의무복무기간 중 3개월 미만의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경우
  - 출장 또는 파견 명령서 등 관련 서류
  ※ 7일 이내인 경우에는 복무기록표의 기재 · 정리로 갈음
-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동일 법인 내 병역지정업체로 전직하게 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 간에 파견근무를 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등 기타사유로 의무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무단결근 확인서 등
-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

〈 업체 관련 신상변동통보 사유 >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휴업, 영업정지, 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 영업정지 관련 서류
- 병역지정업체가 부도 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로서의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또는 공업 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병역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업종변경,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업체와 합병한 경우
  - 각종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합병 : 법인등기부등본,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합병계약서, 고용승계서
- 공장 내에 다른 법인(또는 개인사업장)이 입주하였을 경우
- 병역지정업체가 속한 법인의 기업규모가 변동된 경우
  - 전년도 감사보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91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54조

문 의 37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취소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법」 제38조의2(병역지정업체 장의 4촌 이내 혈족 편입 또는 전직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 병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군 전공의 수련과정이수자의 경우는 37세)
-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휴학하거나 제적된 경우
-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을 무단결근한 경우
-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 또는 자격상실 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기능요원이 수학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병역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최소 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41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92조

문 의 38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은?

답 변

● 신상변동통보 불이행(병역법 제84조제1항)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않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 위반 등(병역법 제92조)

- 고용주가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중인 사람을 당해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복무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아닌 사람이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병역지정업체에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하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복무할 수 있도록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 처벌을 받은 경우 취득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며, 몰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병역법 제93조제3항)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복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자료제출 위반 등(병역법 제95조제2항)

•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법인처벌(병역법 제96조)

• 고용주나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병역법 제84조제1항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84조제1항, 제92조, 제93조제3항, 제95조제1항, 제96조

문의 39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을 경우 구제 절차는?

답 변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한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 신청서 사본이나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유보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 참고로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 결과 확정 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 결과 확정시 처리
    : 적법,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 편입취소 후 의무부과
    : 위법,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 : 복직하거나 전직이 가능하며, 업체는 인원배정 제한
    ※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는 구제신청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
  - 의무자가 복무 중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취하하였을 경우
    : 의무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취하한 경우 : 편입취소
    : 화해가 성립하여 복직과 동시에 취하한 경우: 신분유지
    ※ 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법원 등 화해 성립 시 : 신분유지(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 업체장이 법원의 화해성립 이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화해한 경우 구제신청 소요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업체 2년간 인원배정 제한)

관련규정 : 병역법 제41조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2

문 의 40

휴가 등 복무관련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요?

답 변

● 휴가에 대하여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휴가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 휴가일수 초과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 병가에 대하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무복무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7일 초과 병가인 경우 진단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0일 이내의 병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합니다.

* ‘16.6.13.이전 편입자는 3개월

다만,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 병역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중 발생한 부상.질병 또는 장해(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의 진단서상 치료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 지참·조퇴·외출 등에 대하여

- 지각·조퇴·외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조퇴·외출 등을 할 때는 사전에 복무상황부에 기재하여 병역지정업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예상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 허가)
  - 지각·조퇴·외출(업무상 외출 제외).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복무

- 1일 결근은 1일 연장복무대상. 그러나 결근이나 병가로 인한 연장복무 대상을 연·월차 휴가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연장복무 비대상(신상변동통보 비대상)

• 무단결근

–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함

– 병역지정업체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무단결근 사실을 통보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무단결근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무단결근기간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복무기간의 계산 시 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하고 계산 (단,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기간 및 연장복무기간 계산 시에는 **휴일 포함**)

※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 → 편입취소 및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 8일 미만의 무단결근은 연·월차 휴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연장복무 사항

관련규정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8조, 제41조 내지 제54조

문 의 41

저는 인문계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재학중입니다.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한가요?

답 변

- 산업기능요원은 매년 6월 말까지 다음 해 배정인원을 업체별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현역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산학협력 약정을 맺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중소기업 기술사관학교 졸업자일 때 1, 2 순위로 인원이 배정됩니다. 대학생은 3순위로 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배정인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다만 9~10월쯤 각 업체에서 배정받은 인원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인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반납된 배정인원을 취합하여 지역별로 선착순으로 추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대학생이나 일반고 졸업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역지정업체에 이미 취업하여 근무중에 있다가, 지역별 배정인원 범위 내 선착순으로 편입신청을 하시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는 11월 1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팩스로 편입신청을 받았으며, 업체별 배정인원은 1~2명으로 제한됩니다.

- 아울러 현역 대상인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학력에 맞는 국가기술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격증은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이어야 합니다. 병역지정업체는 '병역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근무분야나 여건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03 승선근무예비역



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승선근무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의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토록 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대상 기관

-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소요인원 신청 등 방법

- 소요인원 신청
  - 해운업체 등의 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
    ※ 접수기관 :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
- 인원 배정
  - 병무청장은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지원 규모를 결정
  - 해운업체 등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실태 등을 고려, 업체별 배정
- 배정인원 통보
  -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통보 및 병무청홈페이지에 게재

※ 용어해설

- 해운업체 :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체 : 총 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편입 대상, 절차 등

• 편입 대상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

교육기관명		지 정 학 과	
		항 해	기 관
해운부문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해사수송과학부, 해양경찰학과, 해양플랜트운영학과, 해사글로벌학부	기관공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해양경찰학과, 해양플랜트운영학과, 해사IT공학부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기관시스템공학부, 기관·해양경찰학부,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
	부산해사고	항해과	기관과
	인천해사고	항해과	기관과
수산부문	부 경 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기계시스템공학과
	전 남 대 (여수대)	해양생산관리학전공, 해양경찰학과	기관시스템공학전공, 해양경찰학과
	군 산 대	해양생산학과	동력기계시스템공학과
	제 주 대	해양산업경찰학과	기계공학과
	경 상 대	해양경찰시스템학과	기계시스템공학과
	강원도립대	해양경찰과	해양경찰과
	인천해양과학고	정보해양과	동력기계과
	충남해양과학고	해양생산과	동력기계과
	포항해양과학고	해양산업기술과	해양산업기계과
	경남해양과학고	자영해양생산과	해양기술과
	포항과학기술고		해양시스템기계과
	울릉고	해양생산과	
	완도수산고	자영해양생산과	자영해양생산과
	성 산 고	해양산업과	

• 편입절차
  - 의무자가 해운업체를 취업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신청서를 업체의 장에게 제출
    ※ 첨부서류 : 항해사 · 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해운업체 등의 장은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자 5일전까지)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 편입 결정
    ※ 승선근무예비역이 법 제23조의 4 각 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음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편입
  - 승선근무예역에 편입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적에 편입
  ① 예비역 장교의 병적 :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② 예비역 부사관의 병적 :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중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부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③ 예비역 병의 병적 :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소집시기 기산
  - 편입 이후 승선 : 선박에 승선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봄
  - 편입 이전 승선 : 편입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봄

■ 승선근무예비역 복무관리

● 복무기간 등

• 복무기간 : 편입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3년간 승선근무(30세까지)

• 승선근무 기간
  - 「선원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받은 선원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또는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 승선근무 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선원법」에 의한 휴가 일수 및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 군사교육소집 기간
    : 이동하여 승선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 승선근무한 기간은 합산

• 이동근무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본인이 희망하거나 선박매각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중인 업체에서는 승선할 수 있는 적합한 선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업체로

이동하여 근무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이동근무 하는 경우에는 업체의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가능
-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동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정인원과 관계없이 이동근무 가능. 단, ③호부터 ⑤호까지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②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③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④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⑤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매각, 선박관리업체 변경, 선발관리업체의 위탁(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

● 겸직 금지

-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만료 시까지 승선근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
  -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 승선근무 외에 개인의 영리활동 추구 등 다른 업무에 복무

● 편입자 관리

- 관할 지방병무청장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의 개인별 복무기록표 출력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통보
- 해운업체 등의 장은 복무기록표에 신상변동 등 기록관리하고, 복무관리 담당자 임명 등 자체 복무관리 체계 유지
  - 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
    :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란 : 군사교육소집 사항
    : 복무사항란 : 승선기간, 유급휴가기간, 선박변경, 업체변경(이동 승선근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
    : 신상변동 사항란 : 승 · 하선 등 신상변동과 관련된 사항
    : 업체장 확인란 : 해운업체 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의 개인별 복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명 날인

- 신상변동통보 : 아래 사항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상변동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해운업체등의 명칭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② 감선 등의 사유로 영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영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④ 영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⑤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한 경우

● 기 타

- 국외여행 허가
  - 허가기관 : 관할 지방병무청장
  - 허가기간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로 부터 5년 범위 내
    ※ 편입과 동시에 직권으로 국외여행 허가 후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송부
- 복무확인서 발급 : 지방병무청장 또는 업체의 장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

● 편입취소 사유

-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편입취소 절차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본인 및 해운업체 등의 장에게 통보

● 의무부과 및 복무단축

- 의무부과 :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복무기간 단축

- 군사교육소집된 기간 :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 군사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

-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 :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 단축

(단,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에 의한 전·공상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 기간이 6개월인 사람은 단축되지 않음)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음

■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등

● 기 간

- 군사교육소집은 30일 이내(4주간 기초군사훈련)
-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 시 기

- 최초 승선근무 전에 군사교육소집
- 승선근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

※ 군사교육소집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 시 감점(30점), 인원배정 제한

※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하여 30일 이상 휴직 중인 때에는 그 기간 동안 군사교육소집 유보

● 통지 및 연기

- 입영일 30일전까지 해운업체등의 장을 경유 입영일 15일전까지 본인에게 통보
-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는 영 제129조를 준용하되 해운업체 등의 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복무만료

- 해운업체 등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때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만료 처분

■ 실태조사 등

● 실태조사 범위

- 신상변동 사항의 통보 여부
- 승선근무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 여부
- 선박의 보유·관리 상태 및 승선 여부
- 승선근무예비역의 명부,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의 비치 및 기록실태

-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방법

- 정기조사 :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조사 :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실태조사 처리기준

- 허위통보 : 고발
-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 위반기간이 1월 이상이면 주의, 1월 미만이면 시정
-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 위반기간이 3월 이상이면 주의, 3월 미만이면 시정

해운업체 등 평가

- 실태조사 시 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
  - 합 격 :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 불합격 :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
- 평가결과의 적용 : 불합격 업체 인원배정 제한

문 의 1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무엇이며, 어떤 업체가 해당되는지요?

답 변

-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의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해운·수산업체의 선박에 승선 근무함으로써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 해운업체와 수산업체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해운업 분야 :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는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관련규정 :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9호,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문 의 2

승선근무예비역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및 배정절차는?

답 변

- 승선근무예비역을 활용하려면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해운업 또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수산업 업체가 해당됩니다.

-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체의 장은 다음 해의 승선근무예비역의 필요 인원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신청
    ※ 접수기관 :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7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

- 배정인원 결정은 아래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병무청장은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지원 규모를 결정하여
  - 업체의 규모, 신청한 필요인원 및 복무관리 실태 등을 고려, 업체별로 인원 배정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3조 내지 제4조

문 의 3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 대상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답 변

● 「선박직원법」에 따른 항해사.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아래 사람 중에서 해운업분야 업체(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수산업분야 업체(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기로 결정된 사람이 해당됩니다.

-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선박직원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 해운부문 :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 수산부문 : 부경대, 전남대, 군산대, 제주대, 경상대, 강원도립대, 인천/충남/ 포항/경남 해양과학고, 포항과학기술고, 울릉고, 완도수산고, 성산고

● 또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자가 해운업체등에 취업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를 업체의 장에게 제출
  ※ 첨부서류 : 항해사·기관사 면허증 사본, 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업체의 장은 업체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경우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 편입 결정

관련규정 : 병역법 제2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

문 의 4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과 휴가나 병가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는 5년 이내에 3년간 승선하면 되며, 승선 근무 기간은 「선원법」에 따라 해양항만관청에서 공인 받은 선원 명부에 기재된 승선일부터 하선일 또는 같은 법에 따라 공인받은 선원수첩이나 신원보증서의 하선일까지 입니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휴가에 대하여는 「선원법」 제62조제5항,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4조에 따른 휴가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선원법」에 의한 휴가 및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승선 근무 기간에 포함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23조의2,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문 의 5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다른 업체로 이직하여 근무하고 싶은데, 조건은 어떠한지요?

답 변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이동하여 근무하는 해의 업체별 배정인원의 범위에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에 이동근무가 가능합니다.

- 해운업 분야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해상 화물 운송사업 및 외항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수산업 분야는 총톤수 100톤 이상을 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어업을 경영하는 업체

● 그러나 복무 중인 업체가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동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정인원과 관계 없이 이동근무 가능합니다. 단, ③호부터 ⑤호까지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①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② 복무 중인 업체가 감선 등의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③ 해운업체등의 장(해운업체등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의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129조에 따른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그 위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④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원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⑤ 승선근무 중인 선박의 매각 등으로 복무 중인 업체의 선박에서 승선근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매각, 선박관리업체 변경, 선박관리업체의 위탁(자회사를 설립하여 위탁한 경우 포함)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문 의 6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요?

답 변

-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만료 시까지 승선근무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승선 근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복무하지 못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 승선근무 외에 개인의 영리활동 추구 등 다른 업무에 복무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 제7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9조

문 의 7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에 편입이 취소되는 사유와 그동안 복무한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변

● 승선근무예비역이 취소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를 원하는 경우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편입 취소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데, 군사교육 소집된 기간은 군사교육소집 기간만큼 단축, 군사교육소집된 기간을 제외한 승선근무기간은 4일마다 1일씩 복무기간이 단축됩니다. 다만, 부·모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순직에 의한 전·공상 보충역에 편입되어 복무기간이 6개월인 사람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23조의4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7 제1항 내지 제5항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제14조

문 의 8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 퇴직 등 신상변동 사유는 무엇이며 조치사항은?

답 변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 중에 퇴직 등의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업체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승선하여 복무하고 있던 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
-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 항해사·기관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본인이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를 원하는 때
-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일부터 5년 이내에 3년간의 승선근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30세까지 승선근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 복무 중인 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한 경우
-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 감선 등의 사유로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 휴가를 준 경우
-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및 허위 통보 시 병역법 제84조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관련규정 : 병역법 제23조의3,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6

문 의 9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업체의 장은 병무청에서 통보한 복무기록표에는 군사교육소집 사항, 복무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신상변동통보 관련서류 등 기타 복무관리 관련 서류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복무기록표 정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군사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란 : 군사교육소집 사항
  - 복무사항란 : 승선기간, 유급휴가기간, 선박변경, 업체변경(이동 승선근무), 업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
  - 신상변동사항란 : 승·하선 등 신상변동과 관련된 사항
  - 업체장 확인란 : 해운업체 등의 장이 승선근무예비역의 개인별 복무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명 날인

- 아울러 복무관리 담당자 임명 등 자체복무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5,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 제12조 내지 제13조

문 의 10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 시기 등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면 승선 전에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다만, 승선근무 중에 편입된 사람은 최초 하선한 때에 군사교육소집계획 일정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습니다.

- 군사교육소집통지서는 입영일 30일전까지 해운업체 등의 장을 경유 입영일 15일 전까지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그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업체의 장을 경유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병역법 제23조의2 제2항,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 제24조 내지 제25조

문 의 11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기간이 끝나는 경우 복무만료 절차는?

답 변

- 해운업체 등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이 있는 경우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만료 대상자의 명단과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록표 등 복무사항을 확인한 후에 복무 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복무만료일을 명시하여 복무만료 처분을 하고 업체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복무만료 대상인 승선근무예비역은 복무 기간이 만료된 날에 소집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8

문 의 12

승선근무예비역을 채용한 업체는 실태조사를 받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답 변

- 실태조사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 실태조사 시에 주로 점검하는 내용은 선박의 보유관리 상태 및 승선여부,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신상변동통보 이행 상태,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와 관련된 관계 서류의 비치 상태, 승선근무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여부 등 입니다.

-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허위통보 : 고발
  -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 위반기간이 1월 이상이면 주의, 1월 미만이면 시정
  - 의무자의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지연통보 또는 미통보 : 위반기간이 3월 이상이면 주의, 3월 미만이면 시정

- 또한, 실태조사 시 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 불합격 평가 받은 업체는 인원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합 격 :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 불합격 :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

관련규정 : 병역법제23조의5,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9, 승선근무예비역 관리규정 제16조 내지 제23조

04 병력동원소집



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력동원소집

■ 병력동원소집의 의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방위를 위하여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예비역 등을 소집하는 것

● 병력동원소집 대상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신분상실 보충역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전역년도)별 기준

• 장 교

계급 \ 전역년도	'91 ~ '92	'93 ~ '96	'97 ~ '99	'00 ~ '02	'03 ~ '05	'06이후
대 령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중 령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소 령	45세					
대위~소위	43세					

• 준사관 및 부사관

계급 \ 전역년도	'89.4 ~ '93.12	'94 ~ '96	'97 ~ '99	'00이후
준 위	53세	54세	55세	
원 사	53세	54세	55세	
상 사	50세	51세	52세	53세
중 사	45 세			
장·단기 하사	40 세			

• 병(일반하사 포함)

예비역·보충역의 병 : 40세까지

※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45세까지 연장

병력동원지정

● 소집대상 중에서 군 소요를 충원할 수 있도록 연차 이내 예비역 적격자(계급, 병과, 군사특기)를 최근 전역자부터 동원지정 함으로써 소집부대 전투력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유사시 신속 동원 대비

● 병력동원소집지정 절차

- 병력동원소집지정(이하 "동원지정"이라 함)은 병력동원운영계획서에 의한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지역단위로 전산에 의하여 지정
- 동원지정 된 사람이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동원지정을 해제하고 동원지정이 안된 사람 중에서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가 맞는 사람으로 대체지정

<유의사항>

: 동원미지정자라 할지라도 대체지정 과정에서 추가로 동원지정이 될 수 있음

: 전출·입자는 계급·군사특기에 따라 대체지정 범위가 각각 상이함



관련규정 :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법시행규칙」,
「군인사법」 제8조제1항 및 부칙 제3조제1항·제2항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조

● 병력동원소집지정 제외자

- 경찰관 등 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법규보류자
- 군무원 등 병역법에 의한 후순위 조정자
- 어민예비군 등 긴급단계 지정 보류자
- 직권 말소 등 동원 부적격자
- 보충역 (※ '09년부터 지정방침에 의거 원칙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나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일부 지정)

● 소집통지 및 입영

동원지정이 된 사람에게는 평시에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를 교부하며 TV나 라디오 등 매스컴을 통하여 전시에 동원령이 선포되면 통지서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로 입영하여야 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동원지정 해제 시(동원지정부대가 변경된 사람은 변경된 통지서)까지 보관

※ 입영일시 계산방법 예시
총동원령이 3월1일 13시 선포된 경우 통지서상 입영일시가 M+1일 12시부터 M+1일 13시까지라면, 총동원령(M) 선포시간에 상관없이 총동원령 선포일 다음날(M+1)인 3월2일 12시부터 13시까지 입영하면 됨.

전시근로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을 동원하여 전시 근로소집 소요에 충원하는 제도로써, 1950년대 군에서 필요한 단순 노무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후 현재까지 발전함

전시근로소집 대상자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 병력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자
- 전시근로역
- 병역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에서 제외된 자

※ 신체등급, 학력,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군사교육소집 미 실시자

전시근로소집 지정순위

- 1순위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중 병력동원소집지정에서 제외된 자
- 2순위 : 소집면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중 병역처분을 받은 해의 다음 연도부터 7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상자 중 연소자 순
- 3순위 : 제2순위 외 소집면제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후순위조정의 목적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서 전시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방위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필수요원에 대하여 소집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여 기관 또는 업체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음

● 후순위조정 대상

•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군무원
-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 그 밖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 후순위조정 신청절차

소속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동원정보체계 시스템으로 예비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국방동원정보체계 시스템이 없는 후순위조정대상기관 및 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 요청(승인)자 명부를 작성 신청)

※ 후순위조정 결정은 예비군편성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정

● 후순위조정자의 소집

긴급동원 단계에서는 소집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장교와 주요병과(특기)소지자는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조정을 취소하여 소집하고, 지속동원 단계에서도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후순위로 소집

● 후순위조정자의 신상변동 통보

- 후순위조정자의 소속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후순위 조정된 사람이 퇴직, 보직 변경, 면허취소, 자격상실 또는 거주지 이동 등 후순위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편성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
- 신상변동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지)청장은 신상변동 정리
  - 타도 전출 시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에 의해 통보된 신상변동 자료에 근거하여 취소 처리를 하고 해당 예비군 부대에서 국방동원정보체계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으로 통보
  - 자도 전출 시

    자도 전출자 중에서 예비군 부대를 변경하는 전출 시에만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에 의해 통보된 신상변동 자료에 의거 취소 처리하고, 해당 예비군 부대에서 국방정보체계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으로 통보

후순위조정의 취소

- 퇴직, 보직변경 또는 후순위 조정된 지방병무청에서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후순위조정이 취소되며, 또한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차질이 있을 때도 취소하게 됨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다시 후순위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 후순위조정자 중 후순위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않거나 허위 통보한 때에는 「병역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신상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후순위조정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이 동일 지방병무청 관내에서 전보된 때에는 후순위조정 승인이 계속 되는 것으로 처리)



문 의 1

평시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편성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 군인사법에 정한 계급별 연령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장교

계급 \ 전역년도	'91 ~ '92	'93 ~ '96	'97 ~ '99	'00 ~ '02	'03 ~ '05	'06이후
대 령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중 령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소 령	45세					
대위~소위	43세					

- 준사관 및 부사관

계급 \ 전역년도	'89.4 ~ '93.12	'94 ~ '96	'97 ~ '99	'00이후
준 위	53세	54세	55세	
원 사	53세	54세	55세	
상 사	50세	51세	52세	53세
중 사	45 세			
장·단기 하사	40 세			

● 병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역 · 보충역의 병 : 40세
- 전시 · 사변 동원령이 선포될 경우 : 45세까지

관련규정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조

문 의 2

병력동원의 단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병력동원은 긴급단계와 지속단계로 구분 실시합니다.

• 동원 단계

구 분	긴급단계			지속단계	
	1 단 계	2 단 계	3 단 계	4단계	5~12단계
일 정	M~M+1	M+2~M+3	M+4~M+6	M+7~M+30	M+31~M+364
기 간	2일간	2일간	3일간	24일	334일

※ 동원응소시간 기준은 일수제를 적용하며, 각 단계별 응소시간 기준은 다음과 같음

- M+1일 대상부대 : 당일 10:00 또는 14:00 이내
- M+2일 이후 대상부대 : 당일 14:00 이내

※ 단 부분동원은 시간제를 적용(PM+20H)

관련규정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

문 의 3

병력동원소집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46조에 의거 병력동원소집을 실시하고 제53조에 의거 전시근로소집을 실시합니다.

  ※ 다만, 국가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별명 없이 실시

- 병력동원소집과 전시근로소집, 사회복무,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의 병력동원소집 전환은 병무청장이 실시하고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인 자와 부분동원소집 중인 자의 병력동원소집 전환은 각 군 참모총장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증·창설요원은 정예자원위주로 지정하고, 손실보충부대는 향방작전소요를 고려하여 동원지정합니다.

- 육군은 배정지역내 해당특기자로 최대한 지정하고 자원부족시 전국으로 확산지정

  - 확산지정은 시군구확산특기, 인접시군구확산특기, 시도확산특기, 전국확산특기로 구분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보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규보류 : 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 의한 보류
  ※ 긴급단계 동원보류 :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에 의한 보류자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전시 국가동원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는 병력동원소집을 후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속단계에 후순위로 동원

문 의 4

병력동원소집 지정보류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답 변

● 동원소집 대상자 중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 법규보류자 및 동원부적격자는 긴급단계 동원지정을 보류하며 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긴급단계 동원지정 보류자
  - 광부(갱내 종사자에 한함)
  -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군 제외)
  - 어민예비군
  - 군에 동원되는 장비의 조작요원(동시동원 대상자)
  - 기동대 편성자
  - 직장예비군 부대 지휘관(독립부대 소대장 포함)
  - 당해 연도 국방부 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 법규 보류자
  - 국회의원
  - 국외에서 365일 이상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외국군 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과 등대 및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자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 지하철 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통상부 외신업무 담당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단, 법규보류자라 하더라도 동원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특기 소지자는 동원지정 가능

• 동원 부적격자
- 직권말소자, 실종자, 수감자
- 이민자
- 질병사유 민방위편성 제외자
- 2종 인력동원 대상자

문 의 5

동원지정 방침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예비군은 연차 이내자와 연차 초과자로 구분합니다.
  - 연차 이내자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6년차 이내
    - 병 : 4년차 이내
  - 연차 초과자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7년차~해당계급 연령 정년까지
    - 병 : 5~8년차까지
- 평시 동원지정은 긴급단계와 지속4단계의 증·창설부대와 손실보충요원을 지정하되, 5단계 이후의 손실보충소요는 6일 전까지 소요를 받아 소집일 4일 전에 지정합니다.
- 당해 연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지정하되,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증·창설부대의 동원지정은 100% 동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동원소요의 120%(동원사단 및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은 130%)를 연차 이내로 지정하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연차초과 자원을 지정합니다.
- 대학생예비군(교직원 제외)은 증·창설 요원으로 지정 후 잔여 인원은 손실보충요원으로 지정합니다.
- M+30일 이내 창설되는 안정화사단은 대학생 및 7~8년차 예비군으로 지정합니다.
- 지정순위는 연차별 1~4년차 → 0년차, 특기별은 적소→유사 →비적소 특기 순입니다.

관련규정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조집 규정 제9조, 제10조

문 의 6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및 관리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매년 말 동원지정 되는 사람의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12월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이 본인에게 이메일 수령 미신청자에 대하여는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로 자료를 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메일 수령 신청자에게는 본인이 신청한 전자우편주소나 나라사랑 이메일로 병행 송부하게 되는데 수령신청자가 5일이내에 열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령 미신청자 발송방법에 따라 다시 우편발송합니다.

※ 통지서 유효기간은 지정 해제 시까지임

● 통지서 교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예비군 자원
  - 지방병무청장이 전자우편센터를 이용 12월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교부하거나 대면교부 또는 E-mail로 송부(E-mail수령신청자에 한함)
  - 등기반송통지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재통지하고, 최초 E-mail 송부자 중 미 수신자는 E-mail 안내문을 발송하며, 이후에도 E-mail미수신시 재송부, 대면 교부

    ※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등기우편 영수증을 수령증으로 갈음
- 직장예비군 자원
  - 직장의 장에게 교부 의뢰

● 신상변동자와 비적소특기 지정자를 동원지정방침에 따라 월 1회~2회 이상 대체지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체지정된 사람들의 통지서 교부 방법은 매년 말 동원지정된 사람들에게 교부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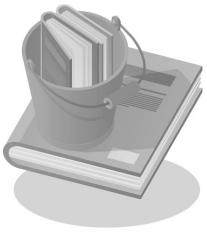
- 병력동원훈련소집 중인 자와 부분동원소집 중인 자는 소집부대장이 대상자에게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갈음하며, 전환사실을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사전 교부한 사람의 실제 동원일시는 국가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 TV와 라디오 등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동원훈련·예비군 → 병력동원소집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46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96조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23조



문 의 7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답 변

-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예비군을 동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동원지정된 예비군에게 미리 보내드리는 통지서이며,
  - 동원지정 대상 : 예비역,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신분상실 보충역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하여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유사 시 신속·정확한 병력동원소집 보장을 위하여 훈련소집 대상자에게 연 1회(3월~11월) 부대별 일정계획에 따라 2박3일 동원훈련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들을 소집하기 위하여 보내드리는 훈련통지서를 말합니다.
  - 훈련 대상
    - 긴급단계 및 지속 4단계 증·창설 부대 동원지정자 중
      : 복무1~6년차이내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복무1~4년차이내의 병

- 참고로 전시를 대비하여 미리 보내드리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분홍색상, 평시훈련을 위한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는 파란색상의 통지서입니다.

문 의 8

저는 예비군 5년차인데, 얼마 전 병력동원 소집점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연기가 가능한가요?

답 변

- 병력동원 소집점검대상자는 전시 동원편성 및 임무를 확인시키고, 동원소집 절차 및 경보전파체계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병력동원 소집점검대상 :병역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육군 병 예비군 복무 5~6년차 예비역

- 병력동원 소집점검대상은 소집부대 주둔지 또는 자원관리부대 훈련장에서 4시간 점검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집점검통지서는 입영일자 2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연기는 훈련소집 연기처리 기준(원거리출장 사유 포함)을 적용하되 입영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없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기 신청으로 갈음하고, 향방작계 기본훈련 대상으로 훈련차수를 적용합니다.

- 무단 불참자는 병역법에 의한 고발처리는 생략하며, 1차 보충훈련 대상자로 훈련차수 적용,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부과합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제18절

문 의 9

예비군 6년차로서 전시근로소집점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참하면 고발되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답 변

-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의 전시임무는 탄약 및 식량운반, 전투진지 구축, 전상자 후송 등이며 예비군복무 5~6년차 보충역으로 지정합니다.

  ※ 점검대상 :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 복무 5~6년차 보충역

- 전시근로소집 점검대상자는 연1회 소집부대 주둔지 또는 자원관리부대 훈련장에서 4시간 점검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집점검통지서는 입영일자 20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연기는 훈련소집 연기처리 기준(원거리출장 사유 포함)을 적용하되 입영일 전일까지 구비서류 없이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기 신청으로 갈음하고, 향방작계 기본훈련 대상으로 훈련차수를 적용합니다.

- 무단 불참자는 병역법에 의한 고발처리는 생략하며, 1차 보충훈련 대상자로 훈련차수 적용, 향방작계훈련 6시간을 부과합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제17절

문 의 10

국방동원정보체계 시스템에 대해 알려 주세요.

답 변

- 국방동원정보체계 연동시스템은 국방부, 병무청, 각 군 본부, 소집부대, 수임군부대, 예비군부대를 연계한 종합전산망으로서 동원준비태세 향상으로 예비군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5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병무청과 국방부간 연동자료는 다음과 같이 운용됩니다.
  - 매일 0시~5시에 자료 송· 수신
  - 국방부에서 병무청으로 전송되는 자료(21종)
    - 전역자, 보류자, 손실보충 부대대상자, 예비군 지원자 통보
    - 동미참 이수 등 교육훈련결과 주특기 재분류, 예비역 장교 진급 등 통보
  - 병무청에서 국방부로 전송되는 자료(32종)
    - 예비군 편성카드 송부
    - 지역/직장예비군 후순위 조정자 승인·해제 통보
    - 신상변동자, 신규 편성자, 추가 편성자 전·출입자 통보
    - 해외 출·귀국자 통보
    - 동원소집자, 대체지정자, 지정삭제자, 등 통보
  -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 후 기대 효과
    - 예비군자원 통합관리 체계 구축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 예비군편성카드 전산화로 우편료 절감/분실 우려 해소
    -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명부(지정자/대체지정자 등) 전송 처리로 예산/인력/행정력 절감
    - 예비군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확보 용이
    - 국방동원정보체계 구축으로 직장 예비군부대 인터넷망 미가입 우려 해소

문 의 11

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변

● 입영신체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차량수송 병력은 집결지에서 지방병무청장 책임 하에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을 활용, 입영일로부터 2일 이내 신체검사 실시 후 질병자는 귀가 조치

  ※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전시 병역판정검사 실시 이전까지 집결지 신체검사 및 의료지원 임무수행
- 소집부대가 인도인접지일 경우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실시
- 신체검사 결과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조치

● 귀가자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집부대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을 명시하여 귀가시킨 자는 그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
- 신체등급이 명시되지 아니한 귀가자 중 경미한 질병을 제외하고 전원 신검 조치
- 신검결과 7급자는 현역입영 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기준을 준용 처리

관련규정 : 병역법 제47조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1조제3항, 제4항

문 의 12

병력동원소집 초과 및 착오 입영자와 지연 도착자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변

- 집결지에서 초과 입영한 병력은 소집부대에서 인수 후 보충부대로 전환하여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하게 되며

- 다른 소집부대로 착오 입영한 사람은 인수 후 소집부대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손실보충자원으로 활용, 소집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기록표 송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2일 이내 지연도착한 자는 소집부대장이 사유 확인 후 입영조치하고, 소집부대가 아닌 다른 소집부대로 지연도착한 자는 인수 후 소집부대 및 지방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고, 손실보충요원으로 활용합니다.

관련규정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1조 5항

문 의 13

국외체재 귀국자 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 변

- 병무청장은 전시 · 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동원령 선포 시 국외체재 예비군은 병무청장의 귀국명령에 따라 재외공관장이 귀국명령서를 교부하여 M+30일 이후부터 귀국하게 되며, 재외공관장은 항공기로 예비군을 수송하여 도착지 비행장에서 병무청 직원에게 병력을 인도합니다.

- 자진 귀국자는 M+30일 이전부터 귀국할 수 있으며,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가중 처벌되어 7년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83조제1항제9호

문 의 14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대상 직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전시동원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다음 해당하는 사람과
  - 각 원·부·처·청 및 시·도의 비상계획 업무 담당공무원
  - 시·도 및 시·군·구 민방위, 인력 및 물자동원, 주민통제 담당 공무원
  - 병무청 직원 및 전시 병무행정 분야 종사자로 임명된 시·군·구의 공무원

-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필수요원도 후순위조정 대상입니다.

- 방위산업체의 필수요원 중 다음 요건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며,
  -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또는 당해 기술직종 6월 이상 종사자
  - 비상계획 업무(인력 및 물자동원)담당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의 방위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민법 등에 의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 법인 연구소의 방위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박사급 연구요원

- 동원업체 복무자로서 업종별 필수기술 요원 중 다음 요건 해당하는 사람
  -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술직종 6월 이상 종사자
  - 주식회사 케이티 (KT) 및 산하기관 종사자로서 다음 해당자
    - 중앙통신운영센터
    - 공중전기통신시설 분야의 기술요원
  - 비상계획 업무(인력 및 물자동원)담당자

- 기타 국가 및 공공기관의 다음에 해당하는 필수요원도 후순위조정 대상입니다.
  - 국가기관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 국가정보원소속 공무원
- 5급 이상 공무원(단, 사법연수생은 제외)
- 보도관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기상 및 통신직 요원 중 필수 최소인원
- 상수도용 수원지 양수 관계 기술자 및 전기 관계 기사(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
- 민방공 경보요원 (경보통제소 및 지방 경보단말요원)
- 산림청 소속 항공관리소의 항공기 조종사 및 정비사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에 종사하는 시험연구 및 검사 분야의 기술직요원
- 우편물 운송요원 및 우편물 집배원
-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 중 사업관리 담당,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담당, 방위력개선사업 계약 담당, 국방부 규격 담당, 방산지원 담당
- 정부통합 전산센터의 시스템 운영 담당 공무원

• 공공기관
- 대한적십자사 및 산하 지사의 병원 및 혈액원의 의사, 병리사
- 한국도로공사의 특수근무요원
  : 정보통신직의 전자통신요원
  : 안전직의 안전순찰원

• 기타 필수직위
- 지역예비군의 일선 지휘조직 간부로 임명(예정)된 자
  : 향방소대장, 타격대장, 동원부동대장, 향방부동대장, 향방부읍대장, 향방부면대장, 부기동대장, 타격소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정작, 지원, 통신)
- 국가보안 목표 직장예비군 부대장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동원훈련예비군 → 병력동원후순위대상직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2조, 별표3

문 의 15

국가동원령 선포와 동시에 후순위 대상이 되는 직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해당하는 사람과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소방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유급상비대원 포함)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기타 국가 및 공공기관의 필수요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 국가기관
    - 국회의원
    - 외교통상부 외신담당관실요원
    - 항로표지공무원(항로표지정비 공무원과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함)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와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 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차관급 또는 동등 이상의 국가공무원

- 공공기관
  - 철도 근무자로서 다음 해당자
    : 기관사
    : 차량 · 장비 관리원
    :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 지하철근무자로서 다음 해당자
    : 승무사무소의 기관사
    : 시설사업소의 보선원(補線員)
    :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을 포함) 및 교육감
-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으로 한정)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등 기타 예비군설치법 제5조, 동시행령 제 11조, 동시행규칙 제17조에서 정하는 동원 보류자

※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기관 및 업체의 장을 통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



관련규정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2조, 별표4

문 의 16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승인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후순위조정 대상기관(업체)의 장은 국방동원정보 체계시스템으로 예비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다만 국방동원정보체계 시스템이 없는 후순위조정 대상기관(업체)의 장은 후순위 조정 요청(승인)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예비군편성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승인 요청 하여야 합니다.

  ※ 병무행정 분야 복무자는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승인 가능

- 지방병무청장은 지역별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후순위조정 여부를 결정하면 후순위 조정 승인(미승인)처리결과를 국방동원 정보체계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다만 국방동원 정보체계시스템이 없는 업체의 승인(해제)결과는 문서로 통보합니다.

  (직장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 된 사람의 예비군편성 관할 예비군중대장에게 승인자 명부 통보)

- 후순위조정 승인(미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업체)의 장은 후순위조정 승인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예비군 읍·면·동대장은 예비군편성카드의 “병력동원후순위조정자”란을 정리합니다.

관련규정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3조

문 의 17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후순위조정 취소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상실 또는 후순위조정 된 지방병무청에서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로 거주지를 이동한 때,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이 동일 지방병무청 관내로 전보된 때에는 후순위조정 승인 계속 유효).

- 희소병과 또는 주요특기자로서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차질이 있는 때,

- 후순위조정자 실태조사 결과 후순위조정자의 관리실태가 극히 불량한 때,

-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입니다.

관련규정 :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6조, 제47조

문 의 18

후순위조정자에 대한 신상변동(퇴직, 보직변경, 면허취소, 자격 상실 등)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병역법에 의거 고용주(고용주를 위하여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가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84조,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46조



05 병력동원훈련소집



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력동원훈련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의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실시하여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임무를 숙지시켜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함에 있음

※ 전시근로소집점검은 전시근로소집에 지정된 예비군 복무 5년차 와 6년차를 대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 배양에 목적이 있음

훈련소집 대상 및 훈련기간

- 긴급단계 및 지속4단계 증·창설부대에 동원지정 된 사람으로서 장교(준사관 포함) 및 부사관은 복무 1~6년차 이내의 사람, 병(일반하사포함)은 복무 1~4년차 이내의 사람에게 실시하며 당해 연도 전역한 사람은 그해 훈련소집을 제외하고, 41세 이상의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훈련을 보류

  ※ 복무 연차는 전역한 다음 해부터 1년차로 기산

- 훈련 기간 : 2박 3일(28시간)
- 훈련방법
  - 계획동원훈련과 불시 동원훈련으로 구분
- 훈련내용은 소집부대별로 부대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증·창설 절차훈련, 직책수행훈련, 전술/작계시행 훈련, 안보교육,지휘관 교육 및 군법교육, 사격 등

전시근로소집점검

- 대상 :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 복무 5~6년차 보충역
- 훈련시간 : 4시간
- 훈련방법 : 전시근로소집부대 동원훈련 1일차 오후(13:00~17:00)에 지휘통제요원과 통합하여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날짜를 정하여 실시 가능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 및 통지서 교부

- 입영일자 45일전 등기우편(이메일 수신 미동의자)과 이메일(수신 동의자)통지서를 동시에 전송하고, 이메일 통지 후 5일 이내 미열람자는 등기우편 송달방법에 의하여 40일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 '13.3.31일 이전에는 500명이상 부대만 이메일 통지를 하였으나, 이후에는 전 소집부대를 대상으로 이메일 통지
  - 이메일 통지 대상 : '09. 1. 1. ~ 통지일 현재까지 수신동의자

- 등기우편 통지서 송달 절차는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일자 45일 전까지 동원훈련 소집(재입영대상자 포함) 대상에 대한 정보화 자료를 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면, 병무청장이 전자우편센터를 통하여 입영일자 40일전까지 자동처리 / 발송

- 수취인 없음·이사(전출) 등 반송된 훈련소집 통지서는 안전행정부의 주민전산망을 활용하여 주소지 및 직장 등 연락처를 확인하여 다시 송부

- 직장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전산 출력하여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장예비군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예비군의 경우도 해당 직장주소지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음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열람 및 출력 가능**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예비군 조회 및 발급 → 병력동원훈련소집(전시근로)소집통지서

  ※ 공인 인증서 필요

※ 입영일 7일전까지 통지서 교부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통지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이사감(이사불명) : 본인귀책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귀책사유자 : 행불연기 후 병역법 제 84조에 의거 고발
  - 귀책사유가 없는사람 : 직권연기
- 수취인 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폐문부재, 주소불명등 : 직권연기처리 하되 상담과정등를 통하여 본인 귀책사유가 확인된 사람은 행불연기 후 병역법 제 84조에 의거 고발

- 수취거절 :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병역법 제85조(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에 따라 고발

※ 행발불명 연기 처리자는 주민등록표 보유기관(읍·면·동)에 거주불명 등록 의뢰 등 조치

■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 처리

● 기피자 감축

-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기피자 감축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추진사항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 등 기피자 감축목표 (지방청별 성과관리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 우려자를 사전 파악하여 입영 당일까지 집중 입영 독려 하여야 함
  (1) 전년도 훈련소집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2) 통지서 송달기일까지 통지서를 송달하지 못한 사람
  (3) 생업을 목적으로 타 시·도 등에 장기 출타중인 사람
  (4) 연기원 부결자 등 기피우려자로 판단되는 사람
- 기피우려자는 필히 연락처를 확인하여 입영독려시 활용하며 입영독려 실적을 기록 유지
- 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 감축활동을 적극 전개, 기피자 감축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예비군 및 동원관련 행사 표창시 적극 반영

● 기피자 고발처리의 정확

-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행정 시스템에 집행 결과를 정리하고 소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 충무훈련 등 불시동원훈련 기피자 고발 시에는 병역법 제5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의한 통지서 송달 기간 단축대축대상자 임을 명시하여 고발

  ※ 계획동원훈련과 불시동원훈련 기피자를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여 불시동원훈련 기피자를 송달기일 경과 등의 사유로 무혐의 처분하는 사례가 있음.
- 기피자 고발은 본인 또는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
  (1) 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직접 교부한 경우와 대리수령인이 수령하여 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

→ 병역법 제90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자를 고발

※ 대리수령인 : 본인을 대신하여 통지서를 수령한 가족중 성년자로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함.

(2) 대리수령인이 방치하여 의무자에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

→ 병역법 제85조(통지서 수령거부 및 전달의무 태만)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수령인을 고발

※ 대리수령인이 무지 등으로 인하여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경비원, 이웃주민 등 통지서 전달의무가 없는 사람이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리수령인을 고발하지 않고 의무자는 통지서 미교부로 연기처리

※ 무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예시를 참조 사안별로 확인하여 처리

예시) 한글 미해독자, 정신지체, 인지기능/언어발달 장애, 70세 이상 고령자, 치매 ·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3) 대리수령인이 수령하였으나 입영일 전일까지 소재불명으로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지 못한 경우

→ 대리수령인의 진술서를 받아 행방불명자로 연기처리하고 병역법 제84조(신고 불이행)에 의하여 의무자를 고발

(4) 대리수령인이 본인에게 전달하였고 본인은 전달받지 않았음을 주장할 경우

→ 대리수령인과 의무자를 동석시켜 대리수령인이 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였음을 진술 받은 후 진술내용과 의무자의 당시 행선지 등을 종합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

ㅇ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의무자를 병역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ㅇ 대리수령인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대리수령인을 병역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고 의무자는 입증서류를 보완하여 통지서 미교부로 연기 처리

※ 대리수령인과 의무자 양자 고발사례가 없도록 유의

- 지방병무청장은 기피자 고발시 “발송 후 배달증명서 또는 우편물 종적조회 결과” 등 공소유지 관련서류를 첨부
- 지방병무청장은 대리수령자를 고발하고 의무자를 행방불명 연기 또는 통지서 미교부로 연기처리 하였을 때에는 기피자에서 제외하고 연기자로 현황을 관리

- 반복 기피자는 고발인 진술서에 반복 기피사항을 기록하여 형사처벌에 참고하도록 하고 경각심 촉구를 위해 관할 지방 경찰청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협조
- 병역법 제69조에 의한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으로 고발한 사람은 이중고발 방지를 위하여 고발 처리결과를 지역예비군 부대에 통보
- 훈련소집 통지자중 지역(직장)예비군 부대에서 행방불명자로 고발하여 거주불명 등록 의뢰 중이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은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에 의한 고발을 생략할 수 있음

권역화부대 동원지정자 훈련소집

● 권역화 동원지정은 현역 복무 시 숙지한 지형, 작계, 경험요인 등으로 인하여 개전 초 동원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동원속도 및 초기 전투력 발휘에 부합하는 지정제도임

● '09년~'12년까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현역복무부대 동원지정자 훈련소집이란 명칭으로 시험 적용하였으나, '13년부터는 「권역화부대」란 명칭을 사용

● '16년 훈련대상은 권역화 시험운영 대상부대 지정자이며, 지역확산범위는 권역화확산특기의 경우 소집부대별 확산 지정지역, 전국단위확산특기의 경우 연차이내 적소특기자는 지방청별 전국단위 자원관리지역(※ 전국단위 확산특기 확산기준 : 소집부대 소재지 지방청)

- 훈련대상/부대 : 사단(상비8,기계화5), 여단(기갑3,포병4), 동원사단(66,72,73,75), 3군(1·5·6·7·수도군단 통신단, 1·5·6·수도군단 특공연대), 1군 (15·27사단, 2·3·8군단 정보통신단), 수방사(1경비단, 1방공여단, 35특공대대), 1군(22사, 3·102기갑여단, 12포병단, 1170야전공병단, 11정보통신단, 8군단 본부대, 헌병대, 특공대대, 148정보대대, 308경비연대, 518방공대, 5·8군단내 육·국직7개 부대), 3군((5공병여단, 2군지사, 13정보통신단, 5군단 본 부대, 헌병대, 145정보대대, 305경비연대, 15방공단, 15화생방대대, 5·8군단내 육국직13개 부대), 수방사(60사, 1113공병단, 수방사 본부근무대, 헌병단, 보충대, 의무근무대,122정보통신단, 22화생방대대, 1문서고)
- 소집부대 관리청 : 서울, 경인, 인천, 경기북부, 강원, 강원영동청

● 통지 후 소집부대별 지역 확산 범위지역 내로 전출한자는 입영하여야 하며 범위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자는 원칙적으로 통지취소

※ 권역화부대의 통지·집행·결과정리·제외자등록·통계보고·연기처리·여비지급·기피자 처리 등 일체를 소집부대 관리청에서 업무처리

훈련소집 자원입영 희망자 처리

목적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 확대 및 동원훈련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

대상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 또는 학생예비군 중 본인이 동원훈련 이수를 희망하는 사람

신청서류

- 보류자, 학생예비군
  - 동원훈련 자원입영 희망신청서
  - 예비군 동원(교육훈련) 보류해소 신고서
- 해당 지방병무(지)청에 제출

● 신청 접수를 한 지방병무(지)청에서는 지원한 사람의 배정지역, 소요특기나 소요계급 등을 감안하여 훈련 희망일과 소집부대를 최대한 반영 개별 지정 후 훈련부과

※ 이 경우 자격시험, 주요업무, 교육, 회의참석사유 연기는 제한되며, 자도의 범위를 벗어난 지역으로 전출한자는 통지취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미입영자는 다른 부대에 1차에 한해 대체지정하고 2차 불응(연기포함)시 보류신청서 등을 받아 원신분 회복(향후 동원훈련 자원 제한)

● 통지 후 소집부대별 지역 확산 범위지역 내로 전출한자는 입영하여야 하며 범위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자는 원칙적으로 통지취소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자연기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때에는 입영일자 5일 전까지 훈련소집 일자연기원을 출원해야 함. 다만, 불시동원이나 천재지변 등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구두신고(유선 신고) 후 3일 이내 출원가능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출원가능)

  ☞ 인터넷신청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예비군민원신청 → 동원훈련 연기 신청

-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화면 입력사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질병, 천재지변, 시험응시, 주요업무 및 생계곤란자, 농어업종사,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를 별도 징구하여 처리하고, 시험응시자는 합격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처리

- 접수된 훈련소집일자연기원서는 지방병무(지)청장이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본인에게 알림

● 훈련소집 일자연기 처리기준

연기사유	처 리 기 준	확인기관(사항) 등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사람 ○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법정전염병 등 다른 사람에게 감염우려가 있는 질환자. 단 B형간염 건강보균자 등 전염성이 없는 질환자는 연기제한 ○ 그 밖의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 장애인은 행정관서에 조회하여 처리 ○ 보건소에서 전염병환자로 관리 중인 사람은 진단서 없이 관할보건소 확인 후 처리
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배우자와 직계가족(외조부모 포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사람이 없는 경우 ○ 직계가족(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증조부모 포함),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백·숙부모(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포함)가 사망하여 소집기일이 사망한 날부터 7일까지의 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 사망확인서 발급 의료기관 또는 장례식장 확인
3. 천재지변 등 재난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수습중인 경우	○ 구·시·읍·면장 발행 사실확인서 첨부 또는 사실여부 확인
4. 행방불명 등	○ 전가족 행방불명이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없어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 수령인이 본인에게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	○ 우편송달관련 증명서와 통지서 수령인의 진술서 ○ 주민등록 말소자는 말소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로 직권처리
5. 재감	○ 범죄가 발생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을 경우	○ 경찰관서·교도소 등에 조회하여 직권처리
6. 출국(예정)	○ 국외체재기간(입·출국 1일 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소집일 이후 출·입국 사항을 확인하여 직권처리

연기사유	처 리 기 준	확인기관(사항) 등
7.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과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 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응시일(합격자의 면접시험일 포함)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에 연기처리 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동일연도 연기사항은 횟수에 관계없이 한 차례로 간주)에 한정하여 연기처리. 운전면허,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검정시험 및 그 밖의 자격시험 등의 상시 검정시험 응시자는 연기 제외 – 자격·면허시험에 전년도에 이어 반복 응시한 경우에는 시험일자가 훈련 기간과 중복된 사람이나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번째 일요일까지 응시한 사람만 연기 –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및 국외기관에서 주관 하는 시험은 동일 분야(등급)의 연간 시험 횟수가 연간 5회 이내인 경우에만 연기 – 사법·행정고시, 회계사, 변리사 등 관련법에 따라 시험방법을 2차 이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응시자로서 1차 또는 2차 시험합격자는 2차 또는 3차 시험 응시일까지 연기하되 다음 시험응시일이 훈련소집일 6개월 이후에 도래되는 사람은 연기제외 다만, 1차 또는 2차 시험을 격년제로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이 있는 해당 연도에 응시하는 사람만 연기 – 1·2차 등 단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시험응시자는 단계별로 합격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 응시 접수증 또는 합격증 첨부

연기사유	처 리 기 준	확인기관(사항) 등
8.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 시험 응시	○ 시험접수한 사람으로서 시험완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관 (접수여부 확인)
9. 직업훈련기관의 재학	○ 기술 분야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습 과정이 3개월 이상인 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재학기간과 소집기간이 중복된 사람	○ 교습학원 재학증명서 및 출석여부 확인증서
10.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수업 수강 등	○ 방송통신, 원격수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과정에 수학하는 사람이 출석 수업을 받거나 시험과 소집 기간이 중복된 경우(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o 대학(원)에 재학중인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 유급된 사람의 학교 수업수강일자 또는 학교 시험응시 일자와 소집기간이 중복된 경우(시험응시는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 재학여부 및 시험일정 확인 o수강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11. 주요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참가	○ 국제규모 또는 전국규모 대회 참가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합숙훈련일부터 대회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소집 기간과 중복된 경우 또는 훈련 종료일 14일 이내에 대회 참가 예정자	○ 경기 및 대회 주최단체 또는 시·도 단위 이상 단체 (사실확인)
12. 본인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본인 결혼일자가 소집일이 속한 주간의 1주일 전·후인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일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부모, 처부모의 회갑 또는 고희연 등이 소집기간 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이 소집기간 14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입영일 14일 전 출산, 유산 포함) ○ 육아휴직자(훈련기간이 휴직기간과 중복이 된 때)	○ 예식장 또는 식당 예약 여부 확인(주민등록·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포함) ○ 배우자 출산의 경우 의료기관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 포함) ○ 휴직 증명서

연기사유	처 리 기 준	확인기관(사항) 등
13. 주요업무 수행	○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안별로 심사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 기간 중 통틀어 두 차례로 제한. 이 경우 '가' 와 '나' 에 대한 연기처리는 공공기관, 공·사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 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근무자는 처리 제한 – 주요프로젝트 수행 (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전 · 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복무기본교육은 제외 – 주요회의 참석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1일 전 · 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종료일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주요업무수행확인서('가' 와 '나' 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만 작성) 및 사유입증에 필요한 서류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의 경우 문서에 의거 처리 가능 ※ 악용방지를 위하여 신중히 심사하되 구비서류를 징구하여 처리 ○ 교육기관 (교육명령 확인) ○ 주최기관 또는 단체 (사실 확인)
14. 저소득층 생계보장	○ 시내버스 기사, 시외여객버스 기사 등 대중교통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단, 개인택시 및 관광버스기사는 제외) 또는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서 훈련소집이 생계에 지장을 준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고용주·사업주(재직여부) ○ 그 밖에 저소득 사유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15. 농·어업 종사	○ 후계 농·어업인 등으로 농사, 어획 등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후계 농·어업인 확인서나 사실관계 확인 처리
16. 재판출석	○ 재판 출석 일자가 변경이 불가하여 훈련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 출석요구서 또는 사실관계 확인 처리

문 의 1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 및 훈련기간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답 변

-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소집부대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동원훈련 대상은 긴급단계/지속4단계 증·창설부대 동원지정자 중에서
  -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복무1~6년차 이내
  - 병(일반하사 포함)은 예비군 복무1~4년차 이내자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훈련기간은 1년에 2박3일(28시간)

- 당해 연도 전역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종료부대에 지정하여 그해의 훈련소집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각부대의 훈련은 대대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통제능력(훈련장 수용여건, 훈련물자, 지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계획훈련은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소집부대별 일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불시훈련은 사전예고 없이 연습동원령 발령하여 실시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49조 동시행령 제100조,
2017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2

동원훈련은 전국단위 또는 휴일훈련을 받을 수 없나요?

답 변

- 병력동원 훈련소집(동원훈련)은 동원지정자 중 유사시를 대비 소집부대에서 연 1회 훈련기간을 정하여 훈련대상자를 2박3일간 부대편성 및 동원절차의 숙지를 위한 편제훈련입니다. 따라서 일반훈련과는 달리 전국단위 또는 휴일 예비군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참고로 전국단위 예비군훈련은 예비군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장기간 여행하거나 출타 시 그 곳 훈련장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훈련부대에서는 훈련일 1개월 전에 주간훈련계획을 공지하고, 예비군은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 훈련을 받고자하는 지역으로 훈련참석 신청을 하면(단 훈련장별 학급편성 10%범위 내) 원하는 기간에 훈련장과 학급편성범위 내에 있으면 자동 접수 및 승인처리가 됩니다.

- 휴일 예비군 훈련은 평일에는 시간을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 등 예비군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예비군 훈련장별 분기 또는 반기단위로 계획하여 1개월 전 인터넷에 공지하고, 훈련일 3일전까지 인터넷 또는 예비군동대에 방문신청을 받아 실시하게 됩니다.

문 의 3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재소집 훈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재소집훈련의 목적은 동원훈련 불참자들에게 최초 훈련 참가의무를 주지시키고, 훈련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적관리 개념의 훈련체계 운영에 있으며

- 훈련대상은 최초 훈련에 불참한 기피, 연기, 귀가자와 통지취소 및 통지제외된 자 중 재소집훈련 통지시점까지 지정사항이 유지되는 사람이며 2015년 재소집 훈련부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16년 재소집 훈련대상
    - 동원훈련 불참간부 : 육군(71, 72사 제외), 공군전부대, 해군(해병동원지원단)
    - 병 : 육군(동원사단6개, 동원포병단6개), 동원보충보병대대 (93개), 공군전부대, 해군(해병동원지원단)

※ 최초 훈련 통지 후 대체지정이 된 사람은 재소집 비대상

- 최초 훈련에 무단 불참하여 고발된 사람과 법 제84조(신상변동통보 불이행)로 고발된 사람이 재소집훈련에 다시 불참할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한 사유로는 고발하지 않으나 연기, 귀가자로 재소집통지 된 사람이 불참하는 경우는 고발 조치합니다.

- 재소집 훈련 대상자는 동원미참석자 훈련 실시 대상이 아니며 동원지정된 부대로 재입영하여 2박3일 훈련을 받습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제9절

문 의 4

연차 이내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미참석자 훈련시간이 궁금합니다.

답 변

- 병의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미참석자는 , 동미참 훈련 24시간(출·퇴근 3일), 향방 작계 훈련 12시간(상·하반기 6시간씩)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단, 공군은 2박 3일(28시간) 동미참 입소 훈련 이수

- 간부(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는 2박3일(28시간)입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5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별 소집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단위 : 시간)

구 분			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신규전역(간부/병)			160						160
병	1~4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4		12		124
		공군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5~6년차	동원지정자	160			8	6	4	142
		동원미지정자	160			8	12 (6H×2)		140
	7~8년차		160						160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7~8년차		160						160

※ 해당 연도 전역자 : 그 해의 동원훈련제외, 41세 이상 간부 : 동원훈련보류

- 병력동원훈련소집은 현역에서 복무 중인 기간편성요원 및 전시전환 요원, 예비군을 통합하여 소집부대를 편성·훈련 실시합니다.

-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를 하게 됩니다.

관련규정 : 예비군 설치법 제6조 및 병역법 제49조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6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일정의 사전확인이 가능합니까?

답 변

● 개인별 병력동원 훈련소집일자 확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일자/교통편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며

※ 공인인증서 및 공공아이핀, 핸드폰 인증으로 조회 가능

● 지방병무청장은 소집부대장으로 하여금 아래 내용이 포함된 지휘서신을 훈련소집 대상자 개개인에게 사전 송부토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 훈련소집일자, 입영 시 유의사항, 교통편, 소집부대 위치, 소요시간 등
- 입영기준시간 이후 지연도착한 자는 기피자로 고발되고, 차후 동원미참훈련 부과 등 불이익 강조
- 전투화, 허리띠, 모자 등 경미한 복장불량자는 훈련장 내 간이판매소(P·X)를 운영, 현지시정

※ 당일 입영 소요시간은 훈련시간 불인정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제9조

문 의 7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대상자 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거리별 교통비 지급 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거리별	지급기준	지급액(원)			
		계	교통비	식비	숙박비
24㎞ 이내	기본 교통비	3,500	3,500	0	0
25~30㎞	평균 교통비 + 1식비	9,500	3,500	6,000	0
31~40㎞	평균 교통비 + 1식비	10,500	4,500	6,000	0
41~50㎞	평균 교통비 + 1식비	11,500	5,500	6,000	0
51~60㎞	평균 교통비 + 1식비	12,500	6,500	6,000	0
61~300㎞	교통비(㎞*116.14원) + 1식비	별도계산	거리요금	6,000	0
301~400㎞	교통비(㎞*116.14원) + 2식비	별도계산	거리요금	12,000	0
401㎞ 이상 및 당일 입영 불가 지역	교통비(㎞*116.14원) + 3식비 + 1박	별도계산	거리요금	18,000	40,000

● 교통비 세부 지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입영자
  - 거주지 구·시·읍·면에서 입영부대(인도인접지)까지 편도거리 기준(㎞당 116.14원)에 따라 지급
- 교통수단 : 대중교통 기준(버스)
- 차량수송 입영자 : 입소차량 출발지까지 이동소요 시내교통비 지급(3,500원)
  - 차량수송 시 일반버스 및 전세 관광버스 활용

● 식비(1식: 6,000원)와 숙박비(1박: 40,000원) 다음에 따라 지급합니다.

• 입영부대 거리별 소요시간에 따라 지급

- 개별입영

: 24㎞ 이내 : 식비 미지급

: 25㎞ 이상 300㎞ 이내 : 1식비 지급

: 301㎞ 이상 400㎞ 이내 : 2식비 지급

: 401㎞ 이상 및 당일입영불가 지역 : 3식비와 1숙박비 지급

: 해·공군 중 이동거리가 121㎞ ~ 400㎞인 부대 : 2식비 지급

- 차량수송입영 : 1식비 지급

※ 숙박비는 400km 이하 중 당일입영 불가지역 적용기준(개별 입영 자에 한함)

: 출발지역에서 입영부대까지의 실 소요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

: 첫 교통편을 이용해도 입영기준시간 내 입영부대에 도착이 불가능한 때

※ 입영기준 시간 : 육 군 : 자도 09:00, 타도 10:00,
해·공군 : 13:00(제주도: 09:00)

● 지급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시기 : 동원훈련(소집점검)종료 후 퇴소 시 또는 귀가 시

※ 귀가자 및 조기퇴소자는 퇴소 당일 또는 퇴소 후 지급

※ 직장예비군으로 주민등록지에서 개별 응소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지를 기준하여 여비 재산정 지급

• 지급방법 : 소집부대에서 퇴소여비와 함께 지급 (계좌입금)

※ 입영 전 지급 및 차량수송대상자 중 개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한 경우 본인 계좌에 입금

☞ 여비사전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예비군민원신청 → 여비지급신청

• 단 본인의 과실(음주, 명령불복종, 복장불량)로 강제 귀가된 사람은 퇴소여비 지급 제외와 시간공제 없음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8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 차량수송 대상자인데, 개별로 입영하고 싶습니다. 개별입영 신청 방법 및 여비지급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차량으로 집단수송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는 따로 지급하지 않고, 지방병무(지)청장이 운수업체 장에게 차량임차비로 지급하며, 식비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 입영여건을 고려 급식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차량수송 대상자 중 입영일 5일 전까지 개별입영 신청하여 입영한 사람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한 여비(교통비+식비)를 따로 지급하여 드리며,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개별입영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예비군 민원신청 → 병력동원 입영방법(개별/차량)변경신청
    ※ 차량/개별 변경 신청 시 팩스, 방문, 우편도 신청가능함.
  - 여비는 퇴소 시 훈련부대에서 위탁 지급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

- 또한 입영일 5일전까지 사전신고 없이 개별입영 후 통행료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여비지급 요구 시에도 거리별 기준에 의한 교통비와 1식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개별입영 통지자 중 수송차량 이용 신청자

: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팩스, 방문, 우편 신청

: 교통비와 일비 지급

- 교통비 : 집결지까지의 거리 기준 해당 금액
- 일 비 : 본인에게 당초 지급 예정이던 숙박비 지급액 범위 내에서 40㎞ 미만은 20,000원, 40㎞ 이상은 40,000원 지급

관련규정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제20조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문 의 9

거주지를 이동하였습니다. 통지취소 처리 및 입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전출형태(전가족, 단독)와 관계없이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되 타시도와 자도내로 구분하여 처리됩니다.

- 타시도 전출자 : 입영일 전일까지 전출자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취소
- 자도 내 전출자 : 전출일자에 관계없이 당초 일정에 입영조치
- 제주도,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은 타시도로 간주
- 직장예비군부대 전출자는 직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처리

※ 입영일 전 : 월요일 입영일인 경우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일요일까지 인터넷 전입신고 접수가 확인되고 영수증 등 이사 관련 입증서류로 확인 가능한 경우 포함

● 자도의 범위 :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와 행정구역 경계를 같이하는 경기도 지역으로 입영통지 후 전출하거나 동일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경우에는 자도 전출자로 간주하여 당초 일정에 입영 조치

『자도 전출 간주지역』

서울특별시 ⇔ 부천, 성남, 안양, 과천, 광명, 하남,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
안양, 군포, 과천, 의왕 ⇔ 광명,시흥,안산

※ 해군 관할 지역 중 김포(육군 관할 지역인 김포1.2동, 장기동, 구래동, 고촌면, 풍무동, 사우동 제외), 강화, 옹진(육군 관할 지역 영흥면 제외)으로 자도 내 전출한 자는 타도 전출로 간주)

※ 권역화 부대 : 소집부대별 지역확산 범위 지역내 전출자는 입영하고, 범위 이외지역 전출자는 원칙적으로 통지취소

● 전출자 처리의 예외

- 전출 후 배정지역 내 복귀자: 훈련시작이전 복귀자는 당초 일정에 입영하도록 하고, 훈련종료 후 복귀자(사후 확인자 포함)는 훈련예정부대로 대체 지정하여 통지

- 권역화 부대(시범운영) 지정자: 당초 일정 입영조치
- 동원훈련 자진 입영희망자: 당초 일정 입영조치
- 전국단위 확산지정자로 권역 내의 타시도로 전출자
  - 병, 준/부사관은 입영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원할 경우 직권연기
  - 영관장교는 당초일정에 입영조치
- 자원부족으로 인접(2개)지방병무청으로 확산 지정한 위관장교는 당초일정에 입영조치

● 전국단위 확산지정 대상

- 전 지방청 : 영관장교, 정보사 및 777사령부 요원, 공군조종사.
- 지방청 권역별 : 육군 전국확산특기 및 해·공군 해당 복무부대 특기자원.
  단, 손실보충요원 부대는 제외

● 전국단위 확산 지정 범위

지방청별	활용지역 순위
서 울 청	경기북부 → 경인 → 강원 → 충북
부 산 청	경남 → 경북 → 광주전남 → 전북
대구경북청	경남 → 부산 → 대전충남 → 충북
인천경기청	서울 → 경기북부 → 강원 → 대전충남
광주전남청	전북 → 경남 → 대전충남 → 부산
대전충남청	충북 → 전북 → 경인 → 대구경북
강 원 청	강원영동 → 경기북부 → 서울 → 경인
충 북 청	대전충남 → 전북 → 경인 → 대구경북
전 북 청	광주전남 → 대전충남 → 경남 → 부산
경 남 청	부산 → 대구경북 → 광주전남 → 전북
인 천 청	경인 → 서울 → 경기북부 → 강원 → 대전충남
경기북부청	서울 → 경인 → 강원 → 강원영동
강원영동청	강원 → 서울 → 경인 → 경기북부



관련규정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제17조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제5절

문 의 10

동원훈련 연기처리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입영일자 5일 전(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지)청장에게 병력동원훈련 소집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 다만, 불시동원 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구두신고(유선신고 포함) 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기 사유는 본문「동원훈련 연기처리 기준표」참조

  ※ 사전에 구두신고를 하지 못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연기도 가능

- 연기원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접수된 민원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화면 입력사항의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질병, 천재지변, 시험응시, 주요업무 및 생계곤란, 농어업종사, 자영업자 사유 등에 대하여는 구비서류를 별도 징구하여 처리합니다. (시험응시자는 합격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여 처리)

- 접수된 훈련소집일자 연기원서는 지방병무(지)청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 참고로,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동원훈련/예비군 → 병력동원훈련 소집연기를 참조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점검 규정 제19조

문 의 11

육군 대위로 전역 후 예비역 간부 진급시험에 합격하여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보수 교육을 이수한 경우 동원훈련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예비역 간부 진급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진급 복무지도교육을 이수한 경우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훈련을 면제합니다.

- 만약, 해당 연도에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훈련을 이미 받았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교육훈련을 면제 받게 됩니다.
  (훈련소집 통지된 사람은 교육사유로 연기 처리)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제2장 제1절

문 의 12

현역복무 부대에서 동원훈련을 받고 싶은데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 변

- 현역으로 복무한 부대 동원훈련 신청은 현역복무 부대에서 요청한 계급 및 주특기의 일치 여부와 공석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뉴스 > 공지사항 ‘검색창’ 에서 현역복무부대 혹은 동원훈련으로 검색하시면 ’현역복무한 부대에서 동원훈련 받자’라는 글에 첨부되어 있으며 신청서를 출력 작성하여 소집부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다만, 전시 동원속도 보장과 악용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유의 경우에는 제한됩니다.
  -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미 지정된 부대보다 가까운 거리 부대로의 희망
  - 희망자 본인 및 전역부대가 동원훈련 통지중이거나 훈련이 종료된 경우
  - 강원지역 예비군이 강원지역 외 부대로 희망할 경우

문 의 13

올해 동원훈련을 받았는데 충무훈련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훈련을 또 받아야 하나요?

답 변

- 충무훈련은 비상 대비 종합훈련으로서 민·관·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실제훈련입니다.
  따라서 동원훈련 등 올해 예비군훈련을 마친 사람도 충무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90조에 의거 고발처리 됩니다.

- 충무 훈련에 참가한 동원훈련 대상자는 차기 훈련시간에서 6시간 공제해 드리며, 올해 이미 훈련을 마친 사람은 다음연도 훈련시간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관련규정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4조
병역법 제49조, 50조

문 의 14

장기출타를 할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수령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본인이 별도의 희망 수령지를 신청할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원하는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으며,

- 이메일로 통지서 받기 원할 경우에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소집통지서 수령신청을 하면 이메일로도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장기 출타를 하실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서 희망 수령지를 신청하거나, 이메일 수령 통지 신청을 하시면 편리합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예비군민원신청 →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2조

문 의 15

부분동원 제도의 도입배경과 개념은 무엇입니까?

답 변

● 부분동원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하여 조기 군사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동원령 선포 이전의 동원을 말하며, 평시에는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전시에는 긴요전력을 사전동원하여 적시에 전투 준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 시 현재에도 국방부장관이 명령하는 형태의 향방예비군 동원은 가능하지만, 차량 등 물자동원은 제한되며 동원된 예비군도 예비군 중대단위로 운용되는 등 군 작전지원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 또한 충무2종 사태 이후 총동원령 발령은 전투준비 시간부족으로 동원 완료 이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고, 총동원령 발령이후 전쟁 미 발생 시에는 국민적 혼란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동원령 조기/지연 발령 사례(이스라엘, 제4차 중동전쟁)
    - '73.5월 조기 동원령 선포로 1,100만 달러 경제적 손실 초래(전쟁 미발발)
    - '73.10월 동원령 선포 지연으로 초전 대량피해 발생
  * 동원 보상 비용(1주간) : 총동원(약 2조원), 부분동원(약 200억원)

● 국가비상사태 시 부분동원을 시행하여 총동원에 따른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고, 초전 대비를 동시에 보장함으로써 동원의 효율성 제고 및 국가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관련근거 : 국방부 동원기획과-1689호('11.5.24)부분동원제도 시행지침 수정 하달

문 의 16

부분동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통지서를 교부받았는데, 부분동원령 선포 시 어떻게 입소하면 되나요?

답 변

- 병력동원(부분동원)소집통지서(백색)상 부분동원령 선포 시 입영부대가 동원 대상 부대로 별도 안내된 경우에만 입영하도록 표기하여 통지서를 평시 교부하며,

- 동원 대상 부대는 군(軍)에서 국지도발 대비 해안경계 부대나 해병대 접적부대, 적 전면 공격 대비 접적사단이나 전방군단 경비연대, 항만/비행장 방호부대, 적 특작부대 위협 대비 집결지 경계지원부대나 호송지원부대 등을 선정합니다.

- 부분동원령 발령이 되면 병무청, 예비군중대 또는 소집부대에서 개인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거나 TV나 라디오 등 보도매체에 해당 부대가 보도됩니다.
  이 경우에 통지서의 「부분동원령 선포된 경우」의 입영일시 및 장소를 확인하여 입영하시면 되며, 통지서의 입영부대가 부분동원 해당 부대로 별도 안내되지 않은 사람은 「총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의 해당 입영일시 및 장소에 입영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 : 국방부 동원기획과-1689호('11.5.24)부분동원제도 시행지침 수정 하달

문 의 17

병력동원소집 지정자로서 거주지 예비군중대에서 실시하는 향방교육 훈련을 이수한 후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 변

- 병력동원소집지정자는 국가 비상사태 시 예비군동원을 목적으로 평시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병력동원소집지정자 중 동원훈련 대상자에 한하여 매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부대별 일정계획에 의하여 2박3일 동원훈련을 실시합니다.

- 거주지 지역예비군동대에서 교육 대상 착오로 인하여 향방훈련 8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동원훈련이 취소가 되며, 8시간 미만 이수한 사람은 동원훈련부대에 입소하여 향방훈련 이수시간을 공제받은 후 퇴소하게 됩니다.

※ 입영 시 훈련이수확인서(예비군 읍·면·동대장 발행 또는 군사교육소집필증) 지참
※ 민원편익을 위해 향방훈련 8시간 이상 이수자가 동원훈련 입영시 원할 경우 잔여시간을 교육

관련규정 : 2017년도 병역동원훈련소집계획서(일반)제2장 제8절

문 의 18

지역예비군부대에서 동미참 훈련통지서를 받았는데 어제 병력동원훈련소집지서를 또 받았습니다. 어느 훈련에 참가해야 하나요?

답 변

- 동원미참가자 교육훈련과 병력동원 훈련소집이 중복 통지되었을 경우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입영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대체지정된 동원훈련 대상자는 동원훈련을 위해 향방 작계훈련 취소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예비군이 이미 소집통지된 향방 작계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훈련을 허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 국방부 예비전력과-1229('13.4.12)
동원 대체지정자 향방 작계훈련 통제 지침
2017년도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서(일반) 제1장 제4절

문 의 19

병력동원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는데 얼마 전 동원지정이 삭제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원훈련에 입소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 변

- 동원지정자 중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지 변경이 있는 경우와 배정 지역내 적소특기자 등 신규자원이 전(편)입된 경우 동원지정방침에 따라 지방병무(지)청에서 월 2회 이상 대체 지정을 하게 됩니다.

- 훈련통지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대체지정은 계속되므로 이 과정에서 당초 지정자가 삭제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 그러나 당초 지정내용이 삭제된 경우에도 동원훈련 통지사항은 유효하기 때문에 당초 통지된 소집부대로 입영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서(일반) 제4절

문 의 20

거주지에서 가까운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답 변

- 병력동원지정은 시·군·구별, 군(軍)별, 연차별, 계급별, 병과(주특기)별로 동원소요의 충족 가능성 및 행정구역별 자원분포를 감안한 지역배정(수임군 부대장) 결과에 따라 지정됩니다. 단 일부 희소 병과(주특기) 및 계급은 지역배정과 관계없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 또한, 지역배정은 자원 활용의 지역 간, 소집부대 간 균형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원지정 부대 또는 동원훈련 장소를 개인별로 선택할 수는 없으며 동원지정된 부대의 그 해 훈련일정에 따라 훈련을 받게 됩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21

병력동원훈련소집(동원훈련)을 3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연기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 동원훈련 통지된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때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훈련소집일자연기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불시 동원이나 천재지변 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구두신고(유선) 후 3일 이내에 출원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훈련을 3일 앞두고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해당 지방병무(지)청에 먼저 구두로 신고한 후,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발행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연기신청서를 제출(팩스, 우편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도 가능하며, 입원확인서나 의사소견서는 악용 우려로 반드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전에 구두신고를 하지 못한 정황이 인정되는 경우 증빙서류에 의거 사후연기도 가능

- 참고로 입영일자 연기신청은 출원기일(입영일 5일 전)까지는 인터넷, 팩스, 우편 출원이 가능하나 출원기일이 경과하면, 인터넷 출원은 불가합니다.

- 따라서 훈련소집 통지서에 첨부된 일자연기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서 서식(병역판정검사 ·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을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해당 지방병무(지)청에서 심사를 거쳐 2일 이내 처리결과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22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으나, 회사 내 주요업무 수행사유로 연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구비서류 및 출원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주요업무 수행 사유로 인한 동원훈련 연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드시 공공기관, 공·사단체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처리하되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틀어 2회로 제한됩니다.
  - 대체 불가능한 업무수행
    ※ 특별한 법적 자격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보안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되, 행정이나 일반사무, 공무수행, 공공기관 T/F근무자는 처리 제한
  - 주요 프로젝트 수행(수행기간, 성격 등 세부요건 확인)
-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의 교육
  - 교육기간(5일이상 합숙교육은 소집기간 1일전·후 포함)이 소집기간과 중복된 경우. 다만 단순한 직무교육 및 복무기본교육은 제외
- 주요회의 참석
  - 학술회의 및 연구발표회의 참석자로 회의기간이 소집기간1일 전·후와 중복된 경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기관 내의 자체발표회의 등은 제외하며 같은 유형의 회의가 훈련종료 일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는 연기 제한

● 연기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민원서식27번 → 첨부파일의 병역판정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한글) 출력)
- 주요업무수행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서식 8번 → 첨부파일의 주요업무수행 확인서(한글) 출력)
  - 대체 불가능한 업무 수행의 경우 해당 업체의 문서에 의거 처리 가능
  ※ 위 서류 외에 입증서류 필요 시 지방병무(지)청장이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교육 등 사유는 교육기관 교육명령 또는 주최기관(단체)에 사실 확인

● 출원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이나 해당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우편, 팩스로 출원가능

  ☞ 인터넷출원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예비군민원신청 → 동원훈련 연기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인터넷으로 연기신청시 주요업무수행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는 이미지 파일로 첨부

- 입영일 5일 전까지 출원

● 처리결과(처리기간 2일)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전화(핸드폰 문자메시지) 또는 e-mail 송부
- 팩스 송부 후 처리 결과는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민원안내 - 민원처리 결과조회'에서 결과 확인 가능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먼저 뜻을 크게 세워야 한다

– 율곡 이이 –

문 의 23

중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는데, 연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 6개월 이상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여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는 예비군 교육훈련 방침 보류 대상자이므로 동원훈련 연기신청이 아닌 보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소속 예비군 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 지휘관이 확인하여 방침보류자로 관리하게 되며, 지방병무(지)청에서 이를 확인 후 동원훈련 통지를 취소 처리합니다.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5조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2항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

문 의 24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편성기준 및 동원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은 「예비군법」 제3조의2(예비군의 편성 및 해체 등) 규정에 의거 편성되며,

- 편성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 전문(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은 제외
  -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 고용원 중 예비군 대상자
  - 지원자

  ※ 대학 직장예비군 부대가 편성되지 않은 대학의 재학생은 지역예비군 부대에 예비군 교육훈련 보류 신고를 하면, 동원훈련 제외(향방훈련 대상)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재학생은 편성 제외(훈련 연기는 가능)

-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자 중 학생은 손실보충요원으로 지정하고, 교직원은 증·창설부대에 지정합니다.
  - 연2회(3월, 9월)명부를 출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편·입학, 졸업, 수업연한을 초과한 졸업유예자, 유급자, 휴학, 복학자 등을 신속히 파악 정리

-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은 학교 예비군부대에서 실시하는 방침보류교육훈련(향방기본 8시간)을 받게 되며, 동원훈련은 제외됩니다.
  - 학생들의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방학 중에 학교 예비군부대에서 별도교육 실시

- 동원훈련통지가 된 사람은 통지취소가 됩니다.
  - 대학생으로 확인된 사람은 예비군 편성사항 확인 등으로 직권처리하고, 의무자에게 재학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요구 금지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

문 의 25

신분증을 분실하였습니다. 동원훈련 입영 시 조치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변

- 훈련소집 부대 입소 시에는 대리입소자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분증(본인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모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영하면 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확인서」를 발급하러 갈 때에는 6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26

동원훈련을 마치고, 소집부대에서 교부 받은 훈련필증을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나 분실하였습니다.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변

- 동원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소집부대에서 퇴소 시 훈련필증을 교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훈련필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소집부대 또는 해당 지방병무(지)청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확인 후 「훈련소집 입영확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예비군 조회 및 발급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 출력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27

질병으로 인해 예비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의료기관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일반)진단서로 재신체검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출원 : 관할 지방병무(지)청
  인터넷 출원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병역판정검사 - 병역판정검사민원신청 → 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신체검사 가능(1일 수검인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불가)
- 병역판정검사 종료 후에는 별도 일정 지정

※ 참고로 정확한 판정을 위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수술기록지 사본이나 MRI 또는 CT 영상자료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전신기형 등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와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사람 등은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가능합니다.

- 단 일부 장애등급자 및 전·공상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이 결정된 자라도 필요 시 신체검사 실시
- 유관기관에 관련 서류 확인 및 조회하여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 가능

- 인터넷 출원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예비군민원신청 → 장애인 및 국가유공등록자 병역처분변경신청
- 우편·팩스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민원서식
  → 민원서식 32번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진단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등록증 등과 함께 제출
- 직접 방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외 일반 질병자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동원훈련·예비군 → 질병, 심신장애 예비군 복무면제'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65조,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

문 의 28

동원훈련과 동원미참(향방훈련)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동원지정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훈련받을 부대의 계급별, 병과(주특기)별 필요한 인원에 따라 훈련받을 부대와의 거리, 지역별 자원분포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전역년도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원지정이 되지 않아 동미참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군에서 필요한 인원의 자원분포가 맞지 않는데서 오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신상변동이나 지역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 2박 3일 동원훈련 대상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출·퇴근 훈련(동미참훈련)으로 변경할 수 없음

- 동원지정자 중 연차 이내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2박3일 받게 되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동미참훈련(출·퇴근24시간)과 향방작계훈련 12시간 총 36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29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법규보류 대상자와 방침보류 대상자의 직종이 궁금합니다.

답 변

● 국방부장관은 국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비군 대상자는 「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교육훈련 사항을 모두면제하거나 또는 일부훈련을 면제합니다.

- 전면보류자는 예비군 교육훈련 사항을 모두를, 방침보류자는 일부를 면제(법규보류자는 동원지정을 제외)
- 방침보류자의 경우 병력동원 훈련소집 비대상

●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법규보류자

근 거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확인책임
「예비군법」 제5조	• 국회의원 •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국회사무처 병 무 청 해외공관장 소 속 장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과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 항공기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소 속 장 〃 〃 〃 〃 〃 〃

근 거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확인책임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소 속 장
	• 지하철 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지하철 : 도시철도, 광역철도를 의미함	〃
	• 외교통상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

● 예비군동원(향방, 재해동원) 및 훈련방침 보류직종(병력동원 훈련 소집대상자 미 적용)

※ 방침보류자는 병력동원 훈련소집 비대상(손보부대 지정 대상)

× : 훈련보류 ○ : 훈련참가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직위 보류 대상	향방·재해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	예비시간	
우편집배원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 (일반집배원, 상시위탁집배원)	×	×	×	×	×	우체국장
41세 이상 예비역간부	만41세 이상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단 특전예비군에 편입한자는 제외) (기산일: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	×	×	×	직권처리
청와대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요원, 경호요원	×	×	×	×	×	비서/경호실장
국군정보사	특수임무요원	×	×	×	×	×	정보사령관
법무부 출입국 관리직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	×	×	×	×	소 속 장
국가유공장 (보훈대상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	×	×	×	보훈청장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당해 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자)	×	×	×	×	×	자원관리 부대장
세관의 조사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	×	×	×	×	관세청장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	×	×	×	×	학교장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적용 받은 자	×	×	×	×	×	관할지방경찰서장
보호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직 공무원	×	×	×	×	×	소 속 장
질병 및 심신장애자	180일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	×	×	×	×	진단서
구속수감자	수감중인자(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 기간 포함)	×	×	×	×	×	교도소장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자)	×	×	×	×	×	지방자치 단체장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	×	읍 · 면 · 동장
여군출신 예비역	- 임신 및 출산후 12개월까지 - 유산 또는 사산시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시 :3개월, 임신기간이 16주~27주시 :6개월, 임신기간이 28주이상시 :12개월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배우자가 군인, 군무원,예비군인 경우 - 불임치료중인 경우	×	×	×	×	×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직위 보류 대상	향방·재해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	예비시간	
심신질환으로 역종이 변경된 자	–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로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되어 복무후 예비군에 편입된 자 – 심신장애8~9급으로 전역한 간부 * 군복무 적응곤란자 및 군복무 적응곤란 질환자 제외(2017.1.1부터)	×	×	×	×	×	직권처리
민영교도소 직원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 직원(민영 소망교도소)	×	×	×	×	×	소 속 장
국가정보원	정보수사요원	×	×	○ (2회)	×	×	국정원장
국가안보 통신요원	중앙통신운용센터 근무요원	×	×	○ (2회)	×	×	소 속 장
민방공 경보요원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 경보통제소 근무자	×	○	×	×	×	소 속 장
법관 및 검사	판사 및 검사	×	○	×	×	×	소 속 장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항공기유도 및 견인, 전원공급 및 급유, 지원정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근무자	×	×	○ (1회)	×	×	소 속 장
특수경비원	국가중요 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	○ (1회)	×	×	관할 경찰서장
각급학교 교 사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기술·특수학교의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평생교육법」 제31조, 32조, 33조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사 제외) ※ 유치원교사 (교육부장관의 자격을 받은 자)	×	○	×	×	×	학 교 장
대학교수	전문대학,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학문연구전담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	학 교 장 (총장)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직위 보류 대상	향방·재해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	예비시간	
각급학교 학생	각급 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기능)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중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른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재입학, 반·학사편입학, 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그 외에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 졸업유예자, 유급자 제외('14.1.1부) * 국방대학교 학생 포함(예비전력과4559)참고	×	○	×	×	×	소 속 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 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 및 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선 등), 해도제작 위한 연간 6개월이상 해상근무자	○	○	×	×	×	소 속 장
전파감시직	중앙전파감시소 예하분소, 분실근무자, 감시1과의 감시계요원, 감시2과의 분석계 및 통제계 요원	○	○	×	×	×	소 속 장
철도종사자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	×	○ (2회)	×	×	소 속 장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조작), 차장	×	×	○ (1회)	×	×	소 속 장
철도사법경찰관	철도사법경찰관	×	×	○ (2회)	×	×	소 속 장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에 재학중이자	×	○	×	×	×	소 속 장
코레일 지자체 운용 도시철도, 광역철도 특수근무자 (지하철, 도시철도, 전철, 경전철 등)	관제사(사령원)(운전, 신호, 전기)	×	×	○ (2회)	×	×	소 속 장
	역무원, 통신원, 전기원, 설비원, 신호보안원, 건축원	×	×	○ (2회)	×	×	소 속 장
	차장, 검수원, 구내원	×	×	○ (1회)	×	×	소 속 장
광 부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종사자 (간접부요원 제외)	○	○	×	×	×	소 속 장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직위 보류 대상	향방·재해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	예비시간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 직업훈련 시설에 재직 중인 교수 및 교사 * 공공 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	×	×	소 속 장
직업훈련생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 직업훈련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교육 과정 훈련생	○	○	×	×	×	소 속 장
국방과학 연구기술직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기술직,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기술직,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기술직	○	○	×	×	×	소 속 장
선박, 어민 승선자	선박 및 어민예비군 직장에 편성된 승선요원	○	○	×	×	×	소 속 장
산불방지헬기 운용요원	산림청 예하 산불방지 헬기승무원 및 정비사	○	○	×	×	×	소 속 장
도로공사 근무요원	한국도로공사 교통 정보센터(종합상황실) 근무요원	○	○	×	×	×	소 속 장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30

동원훈련과 예비군교육훈련(향방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 변

● 동원훈련과 예비군교육훈련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동 원 훈 련	향방교육훈련
○ 법적근거	○ 병역법	○ 예비군 설치법
○ 훈련목적	○ 평시 동원훈련을 통하여 유사 시 병력동원소집에 대비	○ 평시 훈련을 통하여 유사 시 향토방위 대비
○ 소집대상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긴급 및 지속4단계 증·창설부대에 동원지정 된 사람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복무1~6년차 이내 • 일반하사 및 병 : 복무1~4년차 이내 ○ 동원훈련 자원 입영희망자 • 장교, 준사관, 부사관 1~6년차 학생예비군 및 보류자 • 병 1~4년차 학생예비군 및 보류자	○ 예비군편성 대상자 중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복무 6년차까지 • 일반하사와 병 : 복무 6년차까지
○ 자원관리 책임	○ 지방병무청장	○ 수임군 부대장 ○ 예비군 부대장
○ 훈련소집권자	○ 지방병무청장	○ 수임군 부대장
○ 통지서 교부	○ 지방병무청장	○ 예비군 읍·면·동대장
○ 연기원 처리	○ 지방병무청장	○ 수임군 부대장
○ 인터넷 연기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예비군홈페이지
○ 응소방법	○ 개별 또는 차량수송	○ 개별
○ 불참자 처리	○ 1회 불응 시 병역법에 의거 고발 ※ 자원입영 희망자는 1차에 한하여 대체지정 후 재 통지	○ 1회 불참 시 보충교육기회 부여 후 2회 불참 시 예비군법에 의거 고발

문 의 31

공중보건의사로 복무를 마친 사람의 동원지정 및 동원훈련 실시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 변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이나 2009년부터 지정방침에 의거 동원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후 소집해제된 사람은 사단 의무대나 군병원급 이상 소집부대에 동원지정이 될수 있으며 이들은 2박3일 동원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동원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훈련 또는 향방훈련을 이수하면 됩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32

병력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답 변

● 동원훈련 입영 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규정된 복장(모자, 예비군복, 군화, 요대, 명찰 등)을 착용입영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전역증, 자격·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 신분증 분실된 경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관서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지참(사진부착)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33

각 군별 병력동원 훈련입영시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병력동원훈련소집 각 군 입영기준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 별	입영기준시간	입소 허용시간
육 군	○ 자도 : 09:00	○ 자도 : 10:00
	○ 타도 : 10:00	○ 타도 : 11:00
해 군	○ 13:00 (제주방어사령부: 09:00)	○ 14:00 (제주방어사령부: 10:00)
공 군	13:00 (제주도 09:00)	14:00 (제주도 10:00)

※ 권역화 동원훈련부대 : 입영기준 12:00, 입소허용 13:00
※ 자도의 범위 : 지방병무청 관할지역 내(단 서울의 경우 수방사 예하부대 표준 동원훈련장 포함)
※ 지연입소 : 입영기준 시간 1시간 이내 도착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지연 도착시간을 고려 보충훈련 실시

● 퇴소시간 : 오후 5시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제3절

문 의 34

병력동원훈련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답 변

- 병력동원훈련에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장이 입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

-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시킬 수 있으며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귀가 조치된 사람은 훈련시간(4시간) 공제

관련규정 : 병역법 제51조 동시행령 제103조

문 의 35

국외로 출국하고 1년 정도 후에 귀국하려고 하는데, 예비군 훈련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답 변

- 365일 이상 외국체류 시 체류기간 동안 발생한 훈련에 대하여는 면제가 됩니다. 체류기간 중 발생한 훈련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는 것이며, 출국 이전 발생한 훈련이나 입국 이후 발생한 훈련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입국 후에 출국 이전 발생한 훈련 등 당해 연도에 부과된 예비군훈련은 이수를 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



문 의 36

전역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진 1매(2.5cm×3cm)를 지참하여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하여 민원마당을 클릭 후 전역증 재교부신청을 이용하셔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진(증명사진)은 스캐닝하여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동원/예비군 → 동원/예비군 조회 및 발급 → 전역증 재교부 신청

- 아울러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발급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규칙 제9조

문 의 37

예비군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알려주십시오.

답 변

● 예비군 복무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규 내 용	벌 칙
정치운동 등의 금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전 중인 예비군대원의 검문에 불응자 작전 중인 예비군대원에 대한 폭행협박	3년 이하의 징역
지휘관의 지휘권 남용(업무 이외의 업무행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원을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로 거주지를 변경한 자, 동원 불응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비군 무기고 등 경비업무 수행 중인 자가 과실로 분실 또는 탈취당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원 시 지휘관의 명령에 반항 또는 불복종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고용주가 대원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기피, 대리훈련 참가, 교관에 반항, 주민등록 말소자 등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통지서 전달의무 불이행, 지연전달, 수령거부자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원 또는 교육연기서류 허위 조작자	3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동원발령 지역에서 거주지 이전신고 불이행 보류해소신고 지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병력동원훈련소집 대리 입영자	2년 이하의 징역
병력동원훈련소집 불응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관련규정 : 병역법 제84조, 제90조, 예비군법 제15조

문 의 38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동원미참 훈련을 8시간을 받았는데 동원훈련 통지서를 또 받았습니다. 이 경우 동원훈련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교육훈련(소집점검 포함) 8시간 이상 이수자는 통지취소 처리 됩니다 이는 조기퇴소조치에 따른 차량 확보등 소집부대 부담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동원훈련입영시 원할 경우 민원편익을 위해 잔여시간을 훈련(교육) 받게 됩니다.

- 만약, 교육훈(소집점검 포함) 8시간 미만 이수자인 경우는 입영하여야 하며 잔여시간을 교육훈련을 받게 됩니다.

관련규정 : 2017년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제2장 제8절

문 의 39

동원훈련 일부시간 이수 후 조기 퇴소한 경우 잔여 훈련 시간은 어찌 되나요?

답 변

- 동원훈련 일부시간 이수 후 조기 퇴소한 경우 아래와 같이 훈련시간이 부과됩니다.
  - ㅇ 정당한 사유(관,혼,상,제,질병)로 조기 퇴소한 경우
    - 28시간에서 이수시간만큼 공제하고 잔여시간을 동미참기본부과
  - ㅇ 지시불이행 등 강제 퇴소한 경우
    - 36시간에서 이수시간만큼 공제하고 잔여시간을 동미참1차보충 부과

※ 재소집훈련이 있어도 조기퇴소자는 재소집대상 아님 단, 귀가자는 재소집대상



관련규정 : 예비군실무편람 제 34조 (보충훈련)

06 예비군 편성



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예비군 편성

예비군 임무

예비군은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격멸과 무장소요를 진압하고,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하며 기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업무를 수행

예비군 편성

- 예비군 조직편성은 법령 및 방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지역예비군은 당해 지역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행하고, 직장예비군은 지방병무(지)청장 감독 하에 직장의 장이 편성

- **예비군자원은 지역, 직장, 대학, 어민, 선박예비군으로 구분하여 관리**
  - 지역예비군은 관할행정구역 읍·면·동내에 거주하는 예비군편성 대상자로서 직장예비군이 아닌 사람을 지방병무청장이 관리
  - 직장예비군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를 직장장이 관리
  - 대학직장예비군은 재학 중인 학생과 교직원 및 고용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를 대학총(학)장이 관리
  - 어민예비군은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5톤 이상 동력어선의 선주 및 승선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와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를 지구 및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장이 관리
  - 선박예비군은 지방해운항만청 직원 중 예비군편성 대상자와 지방해운항만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으로서 예비군편성 대상자를 지방해운항만청장이 관리

예비군 편성(제외) 대상 및 훈련

● **편성대상 및 기간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인사법」 계급연령 정년까지

• 장교

계급 \ 전역년도	'89.3이전	'89.4~'90	'91~'92	'93~'96	'97~'99	'00~'02	'03~'05	'06년 이후 전역자
대 장	60세	63세						
중 장	60세	61세						
소 장	56세	59세						
준 장	54세	58세						
대 령	50세	51세	52세	53세	54세	55세	56세	
중 령	47세	48세	49세		50세	51세	52세	53세
소 령	43세	44세	45세					
대위~소위	43세							

• 준사관 및 부사관

계급 \ 전역년도	'83~'84	'85~'86	'87~'89.3	'89.4~'93.12	'94~'96	'97~'99	2000 이후
준 위	50세			53세	54세	55세	
원 사 (일등상사)	47세	48세	50세	53세	54세	55세	
상 사 (이등상사)	47세	48세	50세		51세	52세	53세
중 사	45세						
하 사 (장·단기, 전문하사)	40세						

●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과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일반하사, 분대장요원, 사관학교를 중퇴 후 부사관으로 임용된 자 포함)

: 군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유급지원병으로 지원하여 하사로 전역한 자 :** 40세까지(군인사법 제6조, 제8조)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여 지원자**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3조,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예비군편성 제외 대상

-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군복무 미필자는 '94. 1. 1부터 편성 제외)

※ 군복무필 예비군 편성된 사람 중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부사관후보생 등)에 편입된 자 포함

- 「병역법」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전역 또는 소집이 해제된 사람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 전·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1년 6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군인사법」 제41조에 해당되어 퇴역한 사람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 연령 정년에 달한 자
  -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 여자군인으로 현역을 마친 자
-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 상실된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병역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된 의무, 법무 및 군종의 장교
- 41세 이상의 병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별 훈련시간

(단위 : 시간)

구 분			계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	향방작계훈련	소집점검	예비시간
신규전역(간부/병)			160						160
병	1~4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4		12		124
		공군 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5~6년차	동원지정자	160			8	6	4	142
		동원미지정자				8	12		140
	7~8년차		160						160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160	2박3일					132
		동원미지정자	160		2박3일				132
	7~8년차		160						160

-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훈련방법은 현역에서 복무 중인 기간편성요원 및 전시전환요원과 동원예비군을 통합하여 소집부대편성 훈련 실시
-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
- 재복무 후 전역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과 관계없이 전역한 다음 해에 신분에 맞는 1년차 훈련부터 부과한다. 단 동일한 신분으로 재복무한 자와 '11.12.31 이전 상이한 신분으로 재입대한 자는 재복무 이전 이수한 예비군 훈련을 합산 적용
- **예비역 간부 진급시험 최종합격자**
  - 진급 보수교육 이수자 : 훈련소집을 포함한 해당연도 훈련 면제(해당연도 훈련 이수자는 다음연도 훈련 면제)
  - 훈련소집 통지자 : 연기처리(교육)



관련근거 : 예비군법 제6조,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8조
병역법 제49조 및 제52조

● 예비군동원 및 훈련 법규보류 직종(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제32조 관련)

근 거	기관(업체)별 보류대상	확인책임
예비군법제5조	• 국회의원('15.12.31부 훈련대상에 포함) • 외국에 365일 이상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국회사무처 병 무 청 해외공관장 소 속 장
예비군법시행령 13조	• 경찰관, 교도관 및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과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 무선표지소 근무요원 * 국내외 노선 왕래 항공사 소속 정비업체(하청, 계약 포함)의 정비사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소 속 장 〃 〃 〃 〃 〃 〃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 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소 속 장 〃 〃
예비군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통상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소 속 장

● 예비군동원(향방동원, 재해동원) 및 교육훈련방침 보류직종

※ 방침보류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비대상(손보부대지정대상) ×: 훈련보류, ○: 훈련참가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직위 보류 대상	향방·재해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	예비시간	
우편집배원	우체국의 우편물 집배원 중 우편물 배달원 (일반집배원, 상시위탁집배원)	×	×	×	×	×	우체국장
41세 이상 예비역간부	만41세 이상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단 특전예비군에 편입한자는 제외) (기산일: 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	×	×	×	×	직권처리
청와대	대통령 수행비서 및 전문통역요원, 경호요원	×	×	×	×	×	비서/경호실장
국군정보사	특수임무요원	×	×	×	×	×	정보사령관
법무부 출입국 관리직	출입국심사, 선박검색, 외국인보호, 체류관리 직종에 근무하는 자	×	×	×	×	×	소 속 장
국가유공장 (보훈대상자)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	×	×	×	보훈청장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적격업체의 필수요원으로 선발된 자 (당해 연도 수임군부대 명령조치자)	×	×	×	×	×	자원관리 부대장
세관의 조사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자	×	×	×	×	×	관세청장
경찰학교	재학 중인 자	×	×	×	×	×	학교장
청원경찰	「청원경찰법」에 적용 받은 자	×	×	×	×	×	관할지방경찰서장
보호직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보호직 공무원	×	×	×	×	×	소 속 장
질병 및 심신장애자	180일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진단서 제출자	×	×	×	×	×	진단서
구속수감자	수감중인자(6개월 이상 사회봉사명령 이행 기간 포함)	×	×	×	×	×	교도소장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자)	×	×	×	×	×	지방자치 단체장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	×	읍 · 면 · 동장
여군출신 예비역	- 임신 및 출산후 12개월까지 - 유산 또는 사산시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시 :3개월, 임신기간이 16주~27주시 :6개월, 임신기간이 28주이상시 :12개월 -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 배우자가 군인, 군무원,예비군인 경우 - 불임치료중인 경우	×	×	×	×	×	진단서, 또는 증빙서류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직위 보류 대상	향방·재해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	예비시간	
심신질환으로 역종이 변경된 자	-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로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전환되어 복무후 예비군에 편입된 자 - 심신장애8~9급으로 전역한 간부 * 군복무 적응곤란자 및 군복무 적응곤란 질환자 제외(2017.1.1부터)	×	×	×	×	×	직권처리
민영교도소 직원	법무부의 위탁을 받은 민영교도소 직원(민영 소망교도소)	×	×	×	×	×	소 속 장
국가정보원	정보수사요원	×	×	○(2회)	×	×	국정원장
국가안보 통신요원	중앙통신운용센터 근무요원	×	×	○(2회)	×	×	소 속 장
민방공 경보요원	중앙통제소 및 광역시·도 경보통제소 근무자	×	○	×	×	×	소 속 장
법관 및 검사	판사 및 검사	×	○	×	×	×	소 속 장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항공기유도 및 견인, 전원공급 및 급유, 지원정비 작동 및 정비 등의 직종근무자	×	×	○(1회)	×	×	소 속 장
특수경비원	국가중요 시설에 배치되어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	×	○(1회)	×	×	관할 경찰서장
각급학교 교 사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교사, 기술·특수학교의 교사(「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재직자 포함, 「평생교육법」 제31조, 32조, 33조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교사 제외) ※ 유치원교사 (교육부장관의 자격을 받은 자)	×	○	×	×	×	학 교 장
대학교수	전문대학,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학문연구전담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초빙교수 등은 제외)	×	○	×	×	×	학 교 장 (총장)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직위 보류 대상	향방·재해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	예비시간	
각급학교 학생	각급 학교(중, 고, 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기능)대학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대학의 재학생 중 고등교육법과 학칙에 따른 표준 재학기간의 학생, 재입학, 반 · 학사편입학, 출석수업심화과정만 해당, – 그 외에 학교, 논문과정 등록자, 원격(사이버, 방송, 통신, 방송 · 통신), 평생교육시설 재학자 제외) ※ 졸업유예자, 유급자 제외('14.1.1부) * 국방새학교 학생 포함(예비전력과4559)참고	×	○	×	×	×	소 속 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국립해양조사원 및 해양조사사무소 측량과의 수로원 및 해양과의 해양원, 해양조사 및 측량(수심, 해저지형, 해안선 등), 해도제작 위한 연간 6개월이상 해상근무자	○	○	×	×	×	소 속 장
전파감시직	중앙전파감시소 예하분소, 분실근무자, 감시1과의 감시계요원, 감시2과의 분석계 및 통제계 요원	○	○	×	×	×	소 속 장
철도종사자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	×	○ (2회)	×	×	소 속 장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조작), 차장	×	×	○ (1회)	×	×	소 속 장
철도사법경찰관	철도사법경찰관	×	×	○ (2회)	×	×	소 속 장
소방학교 (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소방학교에 재학중이자	×	○	×	×	×	소 속 장
코레일 지자체 운용 도시철도, 광역철도 특수근무자 (지하철, 도시철도, 전철, 경전철 등)	관제사(사령원)(운전, 신호, 전기)	×	×	○ (2회)	×	×	소 속 장
	역무원, 통신원, 전기원, 설비원, 신호보안원, 건축원	×	×	○ (2회)	×	×	소 속 장
	차장, 검수원, 구내원	×	×	○ (1회)	×	×	소 속 장
광 부	채탄 및 일반광업소의 광부로서 갱내종사자 (간접부요원 제외)	○	○	×	×	×	소 속 장

보류직종	기관(업체)별 직위 보류 대상	향방·재해동원	교육훈련				확인 책임
			향방기본	향방작계	소집점검	예비시간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과 동법 제2조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 직업훈련 시설에 재직 중인 교수 및 교사 * 공공 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공단체가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	×	×	×	소 속 장
직업훈련생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한 기능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 직업훈련 시설에서 6개월 이상 교육 과정 훈련생	○	○	×	×	×	소 속 장
국방과학 연구기술직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기술직,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기술직, 국방기술품질원의 연구기술직	○	○	×	×	×	소 속 장
선박, 어민 승선자	선박 및 어민예비군 직장에 편성된 승선요원	○	○	×	×	×	소 속 장
산불방지헬기 운용요원	산림청 예하 산불방지 헬기승무원 및 정비사	○	○	×	×	×	소 속 장
도로공사 근무요원	한국도로공사 교통 정보센터(종합상황실) 근무요원	○	○	×	×	×	소 속 장

● 벌 칙

예비군 동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5조, 제6조, 제15조
예비군법시행령 제13조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별표3

문 의 1

예비군 편성 대상이 궁금합니다.

답 변

-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일반하사 제외)은 그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군인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계급의 연령 정년까지 편성이 됩니다.

- 현역,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은 복무(「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 사회복무요원 등 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대상입니다.

- 예비군 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분 또는 남녀 구분 없이 18세 이상이며,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 연한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원에 의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
군인사법 제8조제1항

문 의 2

재복무 후 전역한 사람의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재복무 후 전역한 사람은 재복무 이전 예비군 복무 기간 중 해당되는 훈련은 모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동일신분 재복무자는 이전 예비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복무연차 적용하며,

- 상이신분 재복무자는 다음과 같이 연차를 적용합니다.
  - '11. 12. 31. 이전 재복무 입대자: 이전 복무기간 합산
  - '12. 1. 1. 이후 재복무 입대자: 신규전역자로 간주, 1년차부터 훈련 재부과

  ※ 예) 병으로 예비군 4년 복무 후 '12. 1. 2. 재입대 후 전역한 사람
  → 재복무 전역 다음 해를 1년차로 기산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 군인사법 제8조제1항,
재복무 후 전역자 예비군훈련 적용추가지침(국방부)
2017년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서(일반)

문 의 3

예비군편성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현역,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군복무 미필자는 '94. 1. 1부터 편성 제외),
  ※ 군복무필자로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군간부후보생(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부사관 후보생 등)에 편입된 사람 포함
- 「병역법」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전역 또는 소집이 해제된 사람
-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등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 전·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1년 6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고아, 귀화자
- 「군인사법」 제41조에 해당되어 퇴역한 사람,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자
  - 연령 정년에 달한 자
  - 전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자
  - 여자군인으로 현역을 마친 자
- 「군인사법」 제10조 임용결격사유로 제적 또는 신분 상실된 보충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 「병역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된 의무, 법무 및 군종의 장교,
- 41세 이상의 병은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됨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제2항

문 의 4

직장예비군부대 편성방침 및 기준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답 변

- 직장예비군은 지역과 직장의 특성에 따라 일반, 국가기관, 대학, 어민, 선박직장예비군으로 구분 편성이 됩니다.

-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예비군자원으로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을 합니다.

  • 자원규모에 따른 제대편성 기준

제대	분 대	소 대	중 대	대 대	연 대	여 단
자원	9명 이상 40명 이하	41명 이상 80명 이하	81명 이상 400명 이하	401명 이상 1,600명 이하	1,601명 이상 7,200명 이하	7,201명 이상

관련규정 : 예비군법시행령 제5조 제2항

7 문 5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승인, 승격, 격하 및 해체절차가 궁금합니다.

답 변

● 신규편성(승인)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직장 장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을 갖춘 후 직장예비군편성 승인신청서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직장예비군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에 의거 수임군부대장에게 편성 협의 요청
  - 단,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시설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편성하고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
- 수임군부대장은 서류접수 후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통보
- 수임군부대장의 의견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당해 직장 장에게 통보
- 편성승인을 접수한 직장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예비군편성 명부와 편성현황을 작성,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3일 이내에 송부

● 승격·격하는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

- 최초 직장예비군편성 절차에 의거 시행
- 독립분대급 이상 직장예비군부대 및 중대급 이상 예속제대의 신규편성, 승격, 격하, 해체 등 부대조정은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필요

● 해체가 되는 경우와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임군부대장에 의해 감사 결과 운영 실적이 부진할 경우
  - 수임군부대장의 의견서 첨부, 지방병무청장에게 해체요구
  - 해체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당해 직장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해체하도록 조치
- 직장의 장이 예비군 운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 직장의 장은 소대급 직장예비군을 해체하고자 할 경우는 직장예비군해체건의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건의
- 해체 건의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장에게 해체사유 통보
- 수임군부대장은 통보된 직장예비군의 해체사유와 실태를 확인 후 해체여부에 대한 의견을 10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통보에 따라 직장의장에게 해체통보
- 해체통보를 받은 직장의장은 직장예비군을 해체하고 3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해체된 예비군의 편성카드 및 관련서류를 거주지 지역예비군 지휘관에게 송부
- 수임군부대장은 해체된 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하던 장비물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 조치하고 해당 경찰서에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 여부를 통보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



문 의 6

예비군 자원관리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답 변

● 지방병무청장은

- 예비군자원관리 세부지침 수립하고 직장예비군 편성 직장에 대하여 편성 및 자원관리업무를 지도·감독,
- 병무청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상변동자료와 직장장의 신상변동통보에 의거 예비군 자원 관리,
- 예비군편성 대상자를 신분별, 연차별, 연령별, 계급별, 병과/특기별로 관리하고 통계유지를 합니다.

●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대학은 대학총(학)장)은

- 직원 및 고용원 중(대학의 경우 학생, 교직원, 고용원포함)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파악하여 예비군에 편성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사실을 통보하고 거주지 지역 예비군지휘관에게는 직장예비군편성확인서 1부를 송부(국방동원 정보체계 이용 가능)하여 거주지 예비군지휘관으로부터 편성카드와 관련서류를 송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 직장예비군이 퇴직 등의 사유로 당해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직장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성제외 사실을 신상변동자명부로 통보(국방동원 정보체계 이용)함과 동시에 예비군편성카드와 관련 서류를 신직장의 장 또는 거주지 읍· 면· 동 대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 예비군의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하여 전산예비군편성카드 및 바인더를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통계 작성 유지,
- 예비군편성카드에 의하여 예비군에 대한 개인별 보직 부여,
- 예비군에 대한 전출입 및 기타 신상변동사항 정리를 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

문 의 7

예비군자원 신규편성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전역권부대장 및 복무기관장

-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역인사명령서(전산자료 포함)를 전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
- 전역인사명령서는 예비군편성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기재하여 발령통보하고 전역당시의 최신 주소지를 파악하여 기재
- 전역인사명령서 누락여부 확인을 위하여 전역권 부대 및 복무기관의장은 전역인사명령서 송부 현황을 매분기 말일기준 10일 이내에 명령호수 및 인원현황을 종합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
- 부대관리 대상 자원은 전역인사명령서 통보 시 해당자에 부대관리 요원임을 표기하여 통보

※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 대체복무자의 경우 근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소집해제처분에 의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편성

● 병무청장

-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역인사명령서에 의하여 예비군편성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전산입력
- 인사명령서 미 송부 및 기록사항착오, 누락자의 경우는 해당 전역권 부대에 조회

● 지방병무청장

-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예비군에 편성
- 주소지 착오로 예비군부대 미편성자는 별도명부로 관리 후 주민전산망을 활용하여 추적 편성
- 지역예비군중대별 신규 편입자 명단과 전산 예비군 편성카드를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일 전송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

문 의 8

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사람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예비군훈련 면제가 가능할까요?

답 변

-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제외)은 형사재판확정증명서(지방검찰청 발행)나 판결문 또는 수형인명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예비군 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형기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법의 수형자 처리기준은 단일형량을 적용
  - 형이 부정기형으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경우에는 장기형량을 적용

-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적에서 제적되게 됩니다.

관련규정 : 예비군법 제3조

07 병적증명



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적증명서 등 발급

병적증명서

- **신청대상 :** 본인,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대리인
- **발급대상 :**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자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 휴대폰 정지, 대학 군 휴학 등은 군입영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 대학 복학 등에 필요한 전역예정 증명자료는 해당 부대에서 발급

- **발급 방법**
  - 행정기관 방문 :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등 주민센터(FAX민원),우체국(민원우편)
  - 인터넷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정부민원포털,
  - 민원24,무인민원발급 : 다중시설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군필자는 전역한지 1개월이 경과한 사람
    - 병역면제자는 1989.1.1.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공직자 신고용, 영문병적증명서, 구체적인 군경력 발급 안됨

- **대리인 발급 신청**
  - 구비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병적증명서발급위임장

    * 병적증명서발급위임장 : 병무청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신청서/구비서류>26번 병적증명서 발급 위임장

군입영 사실확인서

- **용도 : 군 입영자의 휴대폰 정지**

  - 대학 군 휴학 등에 필요한 경우 가족에게 병적증명서 발급 대신 군입영 사실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입영일로부터 1년 동안 확인가능

- **발급방법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병무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 현역/상근 조회 및 발급> 입영결과 확인(입영 후 가족)

복무확인서

- **발급대상 :**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 **발급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 산업지원-대체복무자(사회복무,산업/전문요원) 복무확인서 발급

* 복무중단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

병역증·전역증(재)발급

- **신청방법 :** 병역법 시행규직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역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구비서류 :** 병역증서 발급(재발급)신청서

전역증 신청시에는 사진(규격2.5cm *3cm)1매

지방병무청 민원실 연락처

지방청명	전화번화	지방청명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355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510
대구 · 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54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95
광주 · 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56	대전 · 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58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58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57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56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371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58	인천병무지청	032-454-2296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58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58

병적기록 등 개인정보 열람

● **신청방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별지제4호서식 열람 청구서를 작성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 **대리인 발급 신청**

- 구비서류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인감증명서, 병무청 개인정보 보호 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

* 병무청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별지 제8호 서식 위임장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병무민원포털>민원안내>민원서식>기타서식>9번 개인정보 열람등 위임장

문 의 1

병적증명서 발급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은 병역준비역, 보충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및 병역 사항 확인불능자 등이며,

● 병적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지방병무(지)청을 방문
  - 본인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 신분증
  - 가족 : 주민등록증 등 방문한 가족의 신분증(단, 가족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제적등본 등 가족사실 확인 증빙서류 필요)
  - 대리인 :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 위임장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에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반드시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 지참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발급
- 농협, 법원, 구청,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하철역, 터미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신청·발급

  ※ 발급대상 : 군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발급일 기준 약 1개월 전 전역자와 1989년 이후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으로서 병역이 면제된 사람, 병역준비역 전원(18세부터 입영하기 전까지의 사람)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민원신청을 통하여 신청·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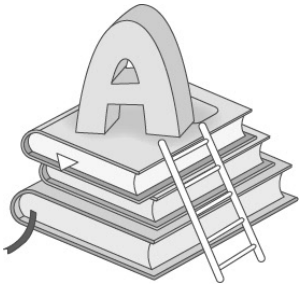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에서 신청·발급

  ※ 공인인증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에서 확인가능

● 주민등록초본으로 병적증명서를 갈음하는 경우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입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제2조, 4조, 5조



문 의 2

공직자신고용 병적증명서는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 병역사항공개와 관련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공직자신고용』으로 신청해야 하며 무인민원발급기(Kiosk)나 인터넷 발급(출력)이 불가하고, 반드시 어디서나 민원(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특히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과 병역이 면제된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시부터 병역의무 종료 시까지의 모든 병역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에 따라 발급 가능한 병적증명서(용도)
    - 병무청 홈페이지(인터넷) : 일반, 경력, 영문
    - 어디서나 민원(팩스) 또는 직접 방문 : 일반, 경력, 영문, 공직자 신고용
    - 민원 24시 또는 무인발급기 : 일반

문 의 3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답 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병적증명서를 대신 발급 받으려면 본인이 위임한 위임장을 가진 대리 신청인만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하실 때에는 대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한 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에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그러나 가족(직계 존비속·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거 가족임이 확인되면 위임장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는 없습니다.



관련규정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

문 의 4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현역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사람(현역 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및 병적제적된 사람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무기한이며,

- 병역준비역이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학군간부후보생,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의 병적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관련규정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제13조

문 의 5

사병으로 복무중 부사관, 장교로 임관 전역한 사람의 군경력 확인용 병적증명서 발급절차는?

답 변

- 사병과 부사관, 장교의 군번과 전역년도를 각각 명시해서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또는 가까운 시·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민원처리 운영기관)에서 군경력 확인용으로 요청하시면 군경력 사항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각군 본부에서도 군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육군의 경우 장교/부사관을 대상으로 (병 제외) 자력표사본을 발급하며,
    - 종류 : 경력증명서(자력표사본:장교/부사관 대상), 군운전경력확인서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www.army.mil.kr), FAX
  - 해군의 경우 발급대상은 해군, 해병의 예비역이며
    - 종류 : 경력증명서(근무, 파월, 교육, 상훈 등), 승함증명서, 비행증명서
    - 신청방법 : 우편, 전화, 인터넷(www.navy.mil.kr), 방문
  - 공군의 경우 발급대상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단기사병 및 면직공무원이며
    - 종류 : 군경력증명서, 군복무(재직)확인서, 조종기관 교육확인서, 비행경력증명서, 계기비행교육확인서, 운전경력확인서
    - 신청방법 : 우편, 전화, 인터넷(www.airforce.mil.kr), 방문

문 의 6

병역증과 전역증 재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 병역증 또는 전역증 재교부는 병역증서(재)발급신청서를 지방병무(지)청으로 신청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증 재발급을 위하여 증명사진(2.5cm×3cm) 1매가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 방문 :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 인터넷(전역증만 해당) :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 안내
      (증명사진은 이미지파일로 첨부)

관련규정 : 병역법 제7조, 병역법 시행령 제5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9조

문 의 7

영문으로 된 병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변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시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며, 여권이 있을 경우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제시하시면 여권의 영문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 다만, 어디서나 민원 또는 직접 방문으로 신청했을 때만 가능하며, 민원 24시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 6조



문 의 8

군입영사실확인서, 대체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입영사실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와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자의 복무확인서는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이 신청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신청인이 지방병무(지)청이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 또는 가족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복무확인서는 복무기관에서도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현역·상근·사회복무민원 - 대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산업/전문요원) 복무확인서 발급」에서 출력 가능
- 휴대폰 정지 등을 위한 입영사실 확인 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 안내에서 신청 가능

※ 위임장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안내」에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그러나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의 군복무확인서와 전역예정증명서는 지방병무(지)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없으며, 복무 중인 소속부대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 제5조

문 의 9

병적기록표 사본 발급 절차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답 변

● 군복무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 사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등이 직접 지방병무(지)청을 방문신청 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 읍·면·동 「어디서나 민원신청」 발급 불가

● 본인이 직접 방문 시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지만, 부득이 가족이나 대리신청인이 가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본 인 : 신분증 지참
- 가 족 : 위임장, 위임자신분증, 출두자신분증
- 타인(대리신청인) : 위임장, 위임자인감증명서, 위임자신분증, 출두자신분증

※ 가족의 범위 : 본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문 의 10

부의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군번을 모를 경우 군번확인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 변

- 국가 또는 참전용사(6.25, 월남)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본인 또는 가족이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 또한 각군본부에 신청하실 때에는 확인대상자의 군입대 당시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군복무당시 부대, 복무기간 등 가족이 알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 각군본부 홈페이지에 접속 전자민원 신청
  - 우편신청
    - 육군 : 충남 계룡 신도안 부남 사서함 501-57호 육군본부 민원실(32800)
    - 해군 : 충남 계룡 신도안 부남 사서함 501-290호 해군역사기록관리단(32800)
    - 공군 : 충남 계룡 신도안 부남 사서함 501-307호 공군본부 민원담당자(32800)

  ※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76년 이후 제정되어 이전의 군복무사항은 주민등록번호로는 확인 불가

문 의 11

현역 복무중 현역부적합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편입 후 소집 해제된 사람의 병적증명서는 어떤 내용으로 기재되나요?

답 변

●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현역부적합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어 소집해제 된 경우에는 아래내용으로 병적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군별 : 현역병 당시 군별
- 계급 : 현역병 당시 계급
- 군번 : 현역병 당시 군번
- 역종 : 보충역
- 주특기:현역병 당시 주특기
- 입영(임관)연월일 : 현역병 입영일자
- 전역연월일: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연월일
- 전역사구분(사유) : 복무만료(소집해제)
- 군경력

  군복무제외기간 : 보충역 편입 후 소집대기기간

관련규정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병무청훈련 제1317호)

문 의 12

사회복무원으로 대체복무를 마쳤습니다 복무시 임무 수행을 위해 관용차량을 운전을 부수임무로 수행하였습니다. 군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발급이 가능하나요?

답 변

● 네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아래사유 적용기준에 해당된다면 군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경력인정대상자 : 복무기관에서 운전분야 수행 당시 1,2종 운전면허소지자로서

- '99.4.21 이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와 관련한 차량운전을 주임무로 수행한사람
- '03.3.5 이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의 협의를 거쳐 관용차량 운전을 주임무로 수행한 사람
- '10.1.1이후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의 협의를 거쳐 임무수행을 위해 관용차량 운전을 부수임무로 수행한 사람

▶ 경력인정기간 : 운전분야 임무 수행기간

- 2년이상 임무수행자 :2년
- 2년미만 임무수행자 : 실제 임무 수행기간

※ 경력인정은 병적기록표(2005. 5.1 이후 소집해제자), 전산(복무기록관리)자료 (2005.4.30 이전 소집해제자)에 따라 확인

관련규정 : 병적증명서 발급규정(병무청훈련 제1317호)

08 병역공개



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문의 1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신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답 변

● 병역사항 공개는 1999. 5. 24 제정 공포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고 있으며,

● 일반적으로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포함)
-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실의 경호공무원
- 법관 및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대령 이상의 장교 및 2급 이상의 군무원
-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 장,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교육위원, 교육장
-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지방소방정을 포함) 이상의 소방공무원
-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재산등록의무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유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

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다음 공직유관 단체의 임원(「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
  : 한국은행
  : 공기업
  :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 임원의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 공직 선거 후보자
•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
  - 국회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 :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 국회선출 공직후보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련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문 의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대상자 /신고 시기/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답 변

● 신고 대상자는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외손자 포함)이며, 연령적용 기준의 "18세 이상인 직계 비속" 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만18세 이상이 되는 직계 비속을 의미합니다.

● 신고 시기는

-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신고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적은 "병역사항 신고서" 를 신고의무자의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 등록일 전 1개월 현재의 병역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 신고하여야 하며,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일 전 1개월 현재의 신고 대상자의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병역사항신고서입니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 및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문 의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사항 공개는 언제, 어떻게 하는지요?

답 변

● 병역사항 공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직자의 경우에는 신고기관으로부터 신고병역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공직선거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공고 시
- 국회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임명동의(또는 선출)안 처리 전

● 공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직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병무청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하며,
- 공직선거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공고
-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는 국회의장이 국회공보에 게재

관련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문 의 4

아들이 만18세가 되면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생일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인지요?

답 변

- 병역사항 신고일 현재 만18세 생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병역의무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병역준비역으로 편입되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이는 생일이 아닌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 또한, 최초 신고 시에는 아들이 17세 이하로서 병역사항 신고 비대상 이었으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18세가 되는 아들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1월 중에 병역사항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문 의 5

최초 병역사항 신고와 병역사항 변동신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변

- 최초 병역사항신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의 사유로 신고 대상 직위에 보직되어 신고 의무자가 된 사람이 본인과 18세 이상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것이고,

- 병역사항 변동신고는 18세가 되는 신고 대상자가 있을 경우 그 해 1월 중에, 가족관계 변동이나 공개보류자의 경우 다음 해 1월 중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병역사항이 공개된 신고 대상자의 병역 변동사항은 병무청장이 직접 분기별로 확인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문 의 6

질병으로 면제를 받은 경우 질병명을 비공개로 할 수는 없나요?

답 변

-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시부터 병역의무 종료 시까지의 모든 병역사항(질병, 수형, 장기대기 등의 면제사유와 함께 질병으로 인한 면제자는 질병명 포함)을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신 질환이나 수치성 질환 등 44개 질환과 3개 처분 사유(혼인 외 출생자, 혼혈인, 고아)로 면제된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원할 경우 질병명 또는 처분 사유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질병명 또는 처분 사유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신고할 때 신고서의 비고란에 “질병명 비공개 요구” 또는 “처분 사유 비공개 요구”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문 의 7

병역사항 신고 시 신고기관에서는 관련서류 원본과 사본 중 어느 것을 병무청에 보냅니까?

답 변

- 병역사항(변동)신고서와 병적증명서·복무확인서는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신고기관의 장은 반드시 병역사항신고서와 첨부서류 원본을 병무청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기관에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다음 병역사항 변동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사본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문 의 8

신고의무자가 병역사항 신고 이후 퇴직 등 직위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답 변

- 신고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소속 신고의무자가 승진·전보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운 신고의무자가 되거나 신고의무를 면하게 된 때
  - 신고 대상자의 가족관계 변동으로 신고의무가 소멸한 때
  - 신고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때

- 또한, 신고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신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신고기관의 장에게 당해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역사항 관련 서류를 송부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다만,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병역사항(변동)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신고대상자의 병역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신고기관에서 승진·신규채용이 되거나 다른 신고기관으로 전보·신규채용이 되는 경우로서 신고의무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
  - 퇴직·강임 기타의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후 그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복직되거나 동일기관 또는 타 신고기관으로 신규채용이 되는 경우

관련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문 의 9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이 있는지요?

답 변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고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신고 대상자를 위반하여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신고한 사람
- 6月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병무청장 등이 행하는 병역사항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 비밀엄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하지 않은 병역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

관련규정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09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등



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문 의 1

병무사범이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변

● 병무사범이란 병무청에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역 의무자에게 발부한 통지서의 지정기일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등 「병역법」(제84조 내지 9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 병무사범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람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사람
- 현역병 입영 및 소집을 기피한 사람
- 병역의무를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
- 병역의무 신고 불이행자 및 허위신고 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 또는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 또는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사람
-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규정을 위반한 사람
-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로서 허위증명서, 진단서 등을 발급한 사람
-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를 위반한 사람
-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 등을 이탈한 사람

관련규정 : 병역법 제84조 내지 제96조

문 의 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임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변

●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의 병무사범의 발생 예방과 단속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특별자치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종사의무 위반 등 단속 및 점검
-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도
-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병무사범의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관련규정 : 병역법 제83조의2

문 의 3

병역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는데 38세부터 면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답 변

●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연장되어 38세부터 면제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공익법무관으로 임명되지 못한 사람, 수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
- 군사교육소집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거나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않아 편입이 취소된 사람, 35세까지 의무복무 기간을 마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 국외여행 허가 대상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등

※ 1979. 12. 31. 이전 출생자는 36세부터 면제 : 2010. 7. 26.

※ 1980. 1. 1. 이후 출생자부터 38세부터 면제 : 2011. 1. 1.

관련규정 : 병역법 제71조

문 의 4

병역의무 불이행자들은 사회적 활동 및 각종 인·허가가 제한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변

● 병역판정검사 기피, 징집·소집의 기피,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 조치하여야 하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관허업의 특허,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하여서는 되지 않으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게 됩니다.
- 또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국외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위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지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7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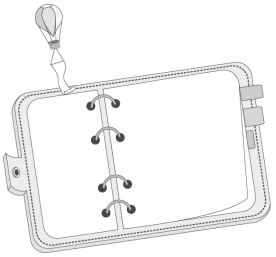
문 의 5

입영 기피자를 채용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판정검사 및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이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해직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병역법 제76조



문 의 6

행방불명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변

● 행방불명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병역의무자 본인의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없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며 관리 대상 행방불명자와 별도관리 대상 행방불명자로 구분됩니다.

- 관리 대상 행방불명자는
  - 병역의무자나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사람
  -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수령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통지서 수령인이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 별도관리대상 행방불명자는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한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후 말소된 사람 중 17세 이전에 가출하여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부·모 또는 친·인척 등이 진술한 사람
  - 주민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소재지를 알 수 없는 사람
  - 전쟁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으로 그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 18세 이전에 정신질환으로 의료시설 또는 요양소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질환으로 가출하여 생사 또는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관련규정 : 병무사범 발생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2조

문 의 7

병무사범에 대한 벌칙 및 제재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여 주십시오.

답 변

조	항	호	주 체	위반내용	처벌 형량	관련조항
84조 (신상변동통보 불이행 등)	삭제					
	1	1	고용주	1.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2. 허위통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23조의3, 제40조, 제67조제2항
		2	공공단체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	1. 신상변동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2. 허위통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
	2		의무자	거주지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제69조제1항
85조 (통지서수령거부 및 전달의무태만)			의무자,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	1. 통지서를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통지서 미전달한 경우 3. 통지서 전달 지체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6조
86조 (도망·신체손상 등)			의무자	기피/감면 목적으로 1.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2. 신체를 손상한 경우 3. 사위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1		대리수검	병역판정검사나 신체검사를 대리한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2		모든 사람	병역판정검사 이외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자의 정보 등을 공개, 다른 사람에게 제공 등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1조의2제2항
	3		의무자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88조 (입영의 기피 등)	1		의무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전시근로소집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전시근로소집은 제53조제2항
	2		대리 입영자	대리하여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전시근로소집은 1년 이하의 징역)	전시근로소집은 제53조제2항

조	항	호	주 체	위반내용	처벌 형량	관련조항
89조 (사회복무요원의 대리복무)			대리복무자	사회복무요원을 대리 복무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1	사회복무요원	1.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한 경우 2.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1. 통산 8일 이상 근무지역 이탈한 경우 2.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3	공익법무관	1. 통산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한 경우 2.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공중방역수의사	1. 통산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 지역을 이탈한 경우 2.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1. 편입당시 해당 분야 종사하지 않아 편입이 최소된 경우 2.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 편입이 취소된 경우		제40조제2호 및 제3호
89조의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1.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를 통틀어 8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제3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5호
90조 (병력동원 훈련소집의 기피)	1		의무자	1. 입영을 하지 않은 경우 2. 점검에 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		대리 입영(점검)자	대리(代理)하여 입영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 (치과)의사	병역의무 연기 또는 면제, 복무기간을 단축 목적으로 허위의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병과 가능)	

조	항	호	주 체	위반내용	처벌 형량	관련조항
92조 (전문연구 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 위반 등)	1		고용주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하도록 한 경우와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의2, 제39조제3항
	2		고용주, 국가기능검정 또는 면허사무를 취급하는 사람	병력동원소집 등 후순위 조정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67조
	3		고용주	전문(산업)요원 편입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제36조
	4		고용주가 아닌사람	전문(산업)요원 편입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6조
	5		의무자	전문(산업)요원 편입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2조제3항과 제4항
	6		고용주·의무자	전문(산업)요원 편입에 부정한 행위에 따른 이익	몰수(그 가액 추징)	제36조
92조의2(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위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 장	사회복무요원을 공익목적외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6소제1항제1호 및 제2호
93조 (고용금지 및 복직 보장위반 등)	1		고용주	병역의무불이행자를 채용 또는 해직하지 않은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
	2		학교의 장, 고용주	복학, 복직을 거부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제73조, 제74조 제1항
	3		고용주	1.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은 경우 2. 병역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4조제2항 또는 제3항

조	항	호	주 체	위반내용	처벌 형량	관련조항
94조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의무자	1.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과 국외체류자 2. 허가된 기간 내에 미귀국한 사람(귀국명령 위반 포함)	1.1년이상 5년이하 징역 2.3년이하 징역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 제83조제2항 제10호
95조 (과태료)			고용주	전문연구요원 해당분야 미종사 및 신상변동 통보 누락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료제출 요구나 질문에 불응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81조제3항
96조 (양벌규정)			법 인	고용주가 제84조제1항제1호,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제84조제1항제2호 또는 제9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97조 (전시 등에 있어서의 형의 가중)			병역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경우	전시특례	형의 장기의 2분의 1일까지 가중	

10 병역관련 기타 참고사항



www.mma.go.kr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병역관련 기타 참고사항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기준(2017년도)

관련근거

- 병역법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5조(여비지급 금액의 산정)

여비지급 단가

■ 식 비 : 6,000원/1식]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숙박비 : 40,000원/1박
■ 교통비 : 116.14원/Km – 시외버스 운임단가 기준
※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하고 선박료 및 항공료는 실비로 지급

여비지급 기준

형태별 / 거리별	병역판정검사 모집신검	현역, 모집입영, 공보의 등	사회복무요원, 전문·산업요원	병력동원훈련
소재지 30km이내	1식+7,000원	3,500원	3,500원	3,500원 (24km 이내)
31~60km	1식+교통비 (왕복)	교통비	교통비	1식+교통비 25~30km: 9,500원 31~40km: 10,500원 41~50km: 11,500원 51~60km: 12,500원
61~120km	〃	1식+교통비	1식+교통비	1식+교통비
121~200km	2식+교통비 (왕복)	〃	〃	〃
201~300km	3식+1박+ 교통비(왕복)	〃	〃	〃
301~400km	〃	2식+교통비	2식+교통비	2식+교통비
401km이상 (도서지역)	〃	3식+1박+ 교통비	3식+1박+교통비	3식+1박+교통비

상근예비역과 사회복무요원 비교

구 분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목 적	현역대체병력으로 군사지원업무	공익목적에 필요한 지원업무
대 상	현 역	보충역
신 분	현역군인	민간인
지휘·감독	관할 군부대장	소속기관장
근무 분야	군부대, 향토방위 분야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복무기간	21개월(기본군사훈련 5주포함)	24개월
계 급	병 장	이 병
신병교육기간	5 주	4 주

현역병과 전환복무(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비교

구 분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선발대상	징집 또는 지원입영	지 원 경찰대학 졸업자	지 원
선발기관	병무청장 각군참모총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모집기관	지방병무청	지방경찰청	중앙소방학교
주요임무	국토방위	대간첩작전 및 치안업무보조	소방업무보조
복무기간	육군, 해병 : 21개월 해 군 : 23개월 공 군 : 24개월	21개월	23개월

소집의 종류

종 류	대 상 자	목 적	시기 및 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보충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업무지원	연중 실시 매월 입영으로 4주
교육소집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에 대하여 필요시 군사교육을 시키기 위한 소집	4주
병력동원훈련소집	병력동원소집 지정된 예비군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	연중 1회실시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소집대상 예비군	전시병력동원	전시
전시근로소집	소집면제보충역 전시근로역	전시근로동원	전시

병력동원훈련과 향토예비군 훈련의 비교

구 분	병력동원훈련	향토예비군훈련
훈련목적	○ 전시 국가동원령선포 시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평시 훈련	○ 유사시 향토방위에 대비한 평시훈련
훈련대상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긴급단계 지정된 예비군 – 장교, 부사관 : 복무1~6년차 – 일반하사, 병 : 복무1~4년차 ※ 일부부대 5~6년차 1박2일	○ 예비군 편성자 – 장교, 부사관 : 복무6년차까지 – 일반하사, 병 : 복무6년차까지
관리책임자	지방병무청장	수임군부대장(향토사단),예비군부대장
훈련소집권자	지방병무청장	수임군부대장(향토사단)
통지서교부	지방병무청장의 우편송부	예비군읍·면·동대장의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부
연기원서처리	지방병무청장	수임군부대장(향토사단)
응소방법	소집부대까지 개별 또는 차량수송	훈련장까지 개별
훈련방법	2박3일간 군부대 숙영	집에서 출퇴근
불참자 처리	기피자로 고발	1회 불참 시 보충교육 2회 불참 시 교육훈련불참으로 고발
법적근거	「병역법」 제49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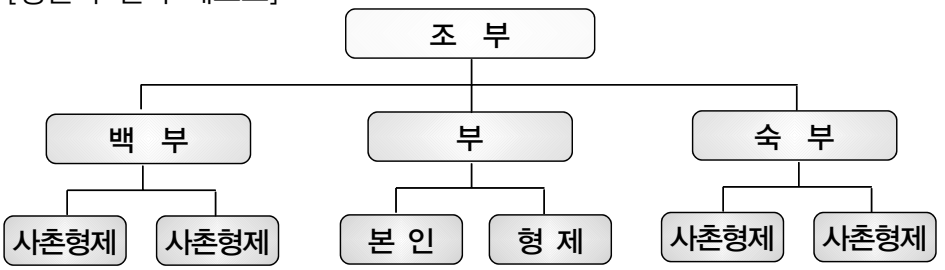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 **신청자격 :** 3(대)代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 3대 가족

-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

[명문가 친족 계보도]



•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상근예비역 포함)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단,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자1명이상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신청 제외대상

- 병역판정검사·입영기피·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 방위병,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 특수전문요원 단기복무 장교
- 질병·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 제적 또는 신분상실 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 신청일 현재 복무중인 사람(단, 의무복무기간 경과한 사람은 제외)

● **신청기간 :** 매년 1~4월 중(자세한 일정은 별도 공지)

- **제출서류 :** 신청서,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3대 가족 확인 가능 자료)
  - 신청서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명문가 찾기 안내' 서식 출력
- **신청방법 :**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FAX
- **선정방법 :** 전년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병역명문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2017년도 선정 기준**

기 본	‣1순위 : 병역이행 총 가족 수 ‣2순위 : 병(兵) 의무복무자 수 ‣3순위 : 총 복무기간
우 대	① 전사 및 순직자 가점 부여('08~'16년) · 전사자 1명 병역이행자 3명, 순직자 1명 병역이행자 2명 산정 ② 자원병역이행자 우대('08~'16년) : 1~2순위 같을 경우 3순위 우대 ③ 참전자 우대 신설 ('15년), 세부기준 명확화('16년) · 1~2순위 같을 경우 3순위 우대 , 6.25 · 월남 참전 및 해외파병 포함 ④ 여성군복무자 우대사항 반영('16년) · 표창심사시 군복무사항 반영 및 자원병역이행자 우대 기준 동일 적용

* 우대 사항 등은 표창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발표 :** 매년 3~5월 경 개별통보(신청자 전원)
- **표창 내역(2017년도)**

구 분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표창(가문수)	대통령(1)	국무총리(2)	국방부장관(5)	병무청장(16)
상 금	300만원	각 200만원	각 150만원	각 100만원

- **병역명문가 우대**
  - 자연휴양림, 궁·능원,국악원,영화관 음식점 요금 감면
  - 병·의원 등 의료시설 진료비 및 학원비 할인

- 국립국악원, 콘도(일부대명·금호·한화·롯데) 등 문화·레저시설 할인
- 은행 금리우대(5) : 국민, 광주, 경남, NH농협은행

※ 사회·문화 등 전 분야로 우대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우대 기관이나 단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관련근거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훈령 제987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 계획

스마트폰 앱 서비스『병역안내』이용

앱스토어에서 "병역안내" 로 검색 후 스마트폰에 앱 설치(무료) 후 사용

※ 앱 스토어 : 애플-스토어, 구글마켓, 올레마켓, T-스토어, OZ-스토어

서비스 내용

나의 병역	군지원	알아보기	상담센터	앱소개
○ 일자 조회 ○ 병역기본 사항 ○ 민원처리 결과	○ 모집계획 안내 ○ 지원현황 조회 ○ 지원가능 분야 ○ 합격자 조회	○ 적성찾기 ○ 병역일정 ○ 일자리 ○ 약도 ○ 공지사항	○ 전화상담 ○ 문자상담	○ 앱소개 ○ 개선신고 ○ 신규서비스
복무제도	**보관함**	**홈페이지**	**환경설정**	
○ 사회복무 ○ 전문/산업 ○ 승선예비역 ○ 특별보충	○ 저장정보 조회 ○ 동원소집 통지서 ○ D-DAY 보기 ○ PUSH 보관함	○ 병무청 모바일 홈페이지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등록 ○ PUSH 설정 ○ D-DAY 설정 ○ 인증서 관리 ○ PC에서 인증서 복사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방법

- PC나 USB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 후 이용
- 공인인증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기 : '병무청 홈페이지 (우측하단)→ 스마트앱 인증서'를 클릭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 일자조회, ○ 병역기본사항조회, ○ 민원처리결과조회, ○ 모병합격자조회,
○ 동원소집통지서, ○ 적성찾기

- 공인인증서 스마트폰으로 전송방법

PC	① 병무청홈페이지 우측 하단 "스마트 앱 인증서" 클릭 ② "인증서복사" 클릭 ③ 인증서 암호입력 ④ 주민등록번호 입력 ⑤ 스마트폰에 접속 진행 중
스마트폰	⑥ 병역안내 앱의 "환경설정" 선택 ⑦ "PC에서인증서복사" 선택 ⑧ 주민등록번호 입력 ⑨ 인증번호 확인
PC	⑩ 스마트폰에 나타난 인증번호 입력 ⑪ 스마트폰에 사용될 인증서의 비밀번호 입력 ⑫ "확인" 클릭
스마트폰	⑬ "인증서가져오기" 선택 ⑭ 인증서 가져오기 성공

※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방법은 거래은행 또는 나라사랑카드 발급시 문의

병무청 주소 및 전화번호 안내

청 별	주 소	전화번호
병무청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2동 우: 35208	042-481-2971
병무민원상담소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2동 우: 35208	042-611-4024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동구 첨복로 10 우: 41069	053-607-0221
서울지방병무청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 우: 07360	02-820-4352
부산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우: 48208	051-667-5258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 동구 동내로 63 우: 41069	053-607-6258
경인지방병무청	경기 수원팔달구 고화로 120 우: 16440	031-240-7151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양림로 119번길 8 우: 61489	062-230-4405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중앙로 16번길 5 우: 34944	042-250-4329
강원지방병무청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 우: 24342	033-240-6258
충북지방병무청	충북 청주흥덕구 남사로 33 우: 28653	043-270-1257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 우: 55033	063-281-3319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 우: 51439	055-279-9258
제주지방병무청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 청사 3층 우: 63219	064-720-3258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도 의정부시 전좌로 76 우: 11642	031-870-0258
강원영동병무지청	강원 강릉 율곡로 2705 우: 25590	033-649-4258
사회복무연수센터	충북 보은군 장안면 장안로 328-33 우 : 28912	043-251-6221
인천병무지청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 우 : 22205	032-454-2221

유관기관 연락처 안내

국방부

부 서	전화번호	비 고
국방부 종합민원실	1577-9090	군부대 전화번호 안내
국방여성정책과	02-748-5171	여군(정책)관련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04~6	군무원 인사 운영
예비군민원(예비전력과)	02-748-5245~6	교육훈련
국방부 전산정보원 국동체유지관리팀	02-748-0993 02-748-0997 (전국단위 훈련)	예비군홈페이지 장애 문의
인력관리과	02-748-5139	병역법, 병역제도 지원 관련



육군

부 서	전화번호	비 고
군부대 전화번호 안내	1577-9090	각 군 공통
육군본부 민원실	042-551-6969	
육군훈련소	041-740-7211 041-740-7007(민원업무)	육군 관련 민원사항 (장교, 부사관, 병 모집 포함)
102보충대	033-243-0222	
특전부사관 지원	02-3403-1420	
신병부대배치조회	1577-9600	
3사관학교	054-330-3114	
군수사 인사행정과	042-616-1134	
의무학교	042-878-4421~4	
미8군사령부(카투사모집)	02-7913-4452	
병적과	042-550-7354~9(병) 042-550-7352(부사관) 042-550-7351(장교)	
부사관모집/장교	ARS 1588-6953	장교모집 병행
부사관학교	063-836-9600	부사관 임관 확인
육군사관학교	02-2197-5910~11	행정(출입) 안내
수방사 민원관련	02-524-1813(주간) 02-524-0300(야간)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 (구)육군정보학교 어학처	031-640-7780,7781	내비게이션검색 : 이황휴게소
인력획득과	042-550-7116	
인사제도 담당관실	042-550-6446	현역복무중 부적합자 처분
전공상 확인	042-550-1624	
전사자 확인	042-550-7392	
훈장/상훈 확인	042-550-7333	
국군 재정관리단	02-3146-6667~9 (민원실) 02-3146-6418~6422 (병사급여안내)	전역자 전역비 미지급 등

해군

부 서	전화번호	비 고
해군본부 민원실	042-553-0632~3 02-819-0633~3	042-553-1163(모집분야)
병적/ 경력 확인	042-553-1156	
부사관 인사과	042-553-1162~4	현역복무중 부적합자 처분
인사기획과	042-553-1163	장교, 부사관 모집
인사근무과 (전사망자 확인)	042-553-1215	
인사근무과 (훈장/상훈확인)	042-553-1212	
전공상 확인	042-553-1235	6.25보훈, 고엽제 등
해군교육사령부	055-549-2563 (행정안내실) 055-549-2114,4646 (모병관실)	모병/입영, 일반사항
해군교육사령부	055-549-2551 (부사관교육대대) 055-549-2541 (신병교육대대)	기초군사훈련중 연락처

해병대

부 서	전화번호	비 고
해병대 민원실	031-8012-3683~4	
해병대 모병문의처	031-8012-3101, 3396~7	
해병대 교육훈련단	054-290-1611	입영부대, 인도인접
해병대사령부 인력획득과	031-8012-3395	
헌병 대표번호	031-8012-2112	해병관련 각종신고 접수

공군

부 서	전화번호	비 고
공 군 본 부	042-552-7945, 7940 02-506-7945, 7940	
공군사관학교	043-290-6025	
모 병 담 당	055-750-5812 1644-0953	사병 인사관리 등
배속지 확인 (공군교육사령부)	055-750-5101	
배속지 확인 (공군방공포병학교)	070-8896-3031	방공포 특기 해당 문의가능시간 (월~금 08:30~17:00)
병 인 사 과	042-552-1233	현역복무중 부적합자 처분

기타기관

부 서	전화번호	비 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1355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국립서울현충원	02-813-9625	묘지안장, 이장, 관람
국립대전현충원	042-718-7114	
문광부 공연전통예술과	02-3704-9530	
문광부 체육정책과	02-3704-9810	체육인 병역관련 지원 업무
법 무 부	02-503-7023(대표전화) 국번없이 1345 (국적상실)	국적
보건복지부	129	

문 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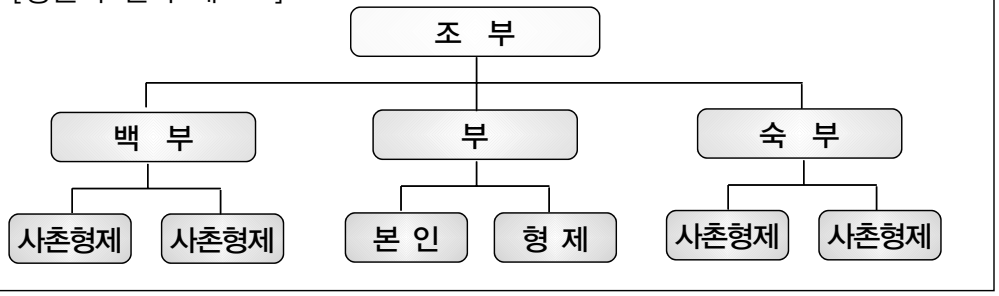
병역명문가 신청 자격과 선정 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변

● 병역명문가 신청 자격은 3代 가족 모두 현역의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3대 가족 :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

[명문가 친족 계보도]



•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하여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경비교도대원·의무소방원·상근예비역 포함)복무를 마쳤거나,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사람
(단, 3대째 남자가 없는 경우 여자1명이상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참전용사는 복무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대한민국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 다음과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 병역판정검사·입영기피·병역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 방위병,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 특수전문요원 단기복무 장교
- 질병 · 가사사유 등으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사람
-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 제적 또는 신분상실 보충역의 장교 · 준사관 · 부사관
- 신청일 현재 복무중인 사람(단,의무복무기간 경과한 사람은 제외)



관련규정 :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훈령 제987호)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 계획

한 때의 분을 참으면,
백 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 명심보감 –

문 의 2

스마트폰에서 병무청 앱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려 주십시오.

답 변

● 병무청에서는 2012. 2. 1부터 스마트폰 앱 서비스 『병역안내』를 개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아 설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앱 스토어 : 애플-스토어, 구글마켓, 올레마켓, T-스토어, OZ-스토어

• 서비스 내용

나의 병역	군지원	알아보기	상담센터	앱소개
○ 일자 조회 ○ 병역기본 사항 ○ 민원처리 결과	○ 모집계획 안내 ○ 지원현황 조회 ○ 지원가능 분야 ○ 합격자 조회	○ 적성찾기 ○ 병역일정 ○ 일자리 ○ 약도 ○ 공지사항	○ 전화상담 ○ 문자상담	○ 앱소개 ○ 개선신고 ○ 신규서비스

복무제도	보관함	홈페이지	환경설정
○ 사회복무 ○ 전문/산업 ○ 승선예비역 ○ 특별보충	○ 저장정보 조회 ○ 동원소집 통지서 ○ D-DAY 보기 ○ PUSH 보관함	○ 병무청 모바일 홈페이지로 이동	○ 주민등록번호 등록 ○ PUSH 설정 ○ D-DAY 설정 ○ 인증서 관리 ○ PC에서 인증서 복사

-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방법
  - PC나 USB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전송 후 이용
  - 공인인증서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기: '병무청 홈페이지(우측하단)→ 스마트앱 인증서를 클릭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 일자조회, ○ 병역기본사항조회, ○ 민원처리결과조회, ○ 모병합격자조회,
○ 동원소집통지서, ○ 적성찾기



문 의 3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이며 발급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 공인인증서는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하려고 할 때 주민등록증이나 인감날인 또는 서명 등이 필요하듯이 인터넷상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의 위조와 변조, 거래 사실의 부인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입니다.

- 그리고, 공인인증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인증 등록대행기관 방문
   -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여 현재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사이버트레이딩 신청

2) 대행기관(은행 등)은 신분확인 후 참조번호와 인가코드(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보안카드와 안내문 교부

3) 집에 돌아오면 은행, 증권사나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로드하여 PC나 보조매체에 저장하여 인터넷 민원 신청 시 사용
   - 해당 은행 등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발급/재발급 클릭
   - 이용자 ID와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약관 동의
   -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자금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숫자, 일련번호 등 입력
   - 인증서 받기 클릭 후 인증서 암호(본인이 부여) 입력 확인하여 저장

문 의 4

군복무 중 사망하거나 의병제대를 하였을 경우 국가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답 변

●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에 통보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1급 내지 7급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나 전사 또는 순직한 사람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인이며
-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는
  - 등록신청서 1부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람은 제외)
  - 사진(3×4㎝) 2매이며
- 등록신청서 접수처는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이며 방문이나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문 의 5

전화번호등 개인정보 수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 변

- 전화번호나 은행계좌번호등 개인정보 수정은 병무청홈페이지 “나만의 홈페이지” 메뉴를 통하여 공인인증서나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수정가능하며 병역의무자 본인이 병무청으로 유선상으로 가능합니다.

문 의 6

홈페이지 이용시 병무민원포털 접속에러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 홈페이지 이용시 에러는 컴퓨터의 개별적 환경이나 설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병무민원포털 접속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 본인인증 처리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접속 후 병무민원포털(http://mwpt.mma.go.kr) 이동
  - 로그인 클릭 후 본인인증서비스 화면 진입, 본인인증 실시
  - 본인확인서비스 화면 로딩 전, 공인인증서 안내 및 설치프로그램 안내 호출
  - 크롬(Chrome) 설치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는경우 크롬 브라우저 설치 실행
  - 공인인증서 프로그램(AnySign4PC) 설치 I
  - 공인인증서 프로그램(AnySign4PC) 설치 II
  - 공인인증서 인증 안내 페이지를 강제 종료하거나, 인증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 공인인증서 보안 프로그램 설치
  - 본인확인 서비스 화면 호출 후, 인증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팝업화면을 닫을 경우
  -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 인증이 완료된 경우, 병무민원 포털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인증이 필요한 화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 병무민원포털 본인인증(로그인) 전,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로 진입 하는경우

- 위변조방지 프로그램 설치
  - 병무민원포털 서비스 중 위변조방지프로그램이 설치 되어야만 문서 출력이 가능한 서비스가 있으므로
  - 화면 하단의 다운로드 버튼 클릭
  - 실행버튼을 클릭한 후 하단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Y)]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한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후 브라우저가 강제 종료되므로, 브라우저 재실행 후 포털 재 접속 시도

● 보안프로그램 반복 설치의 경우

- PC의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및 기능]에 들어간다.(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
- 아래 그림 빨간부분의 3개 파일을 제거한다.
  - MaWebSAFER_STDEP(remove only)
  - MarkAny WebDRM NoAX
  - AnySign4PC 1.1.0.5
- 브라우저(IE) 메뉴에서 [도구] → [인터넷 옵션]을 선택
- 삭제를 클릭 후, 검색 기록 삭제 항목을 모두 삭제 체크 후, 삭제 버튼 클릭
- 설정을 클릭 후, 웹 사이트 데이터 설정, 저장된 페이지의 새 버전 확인(웹 페이지를 열때마다(E)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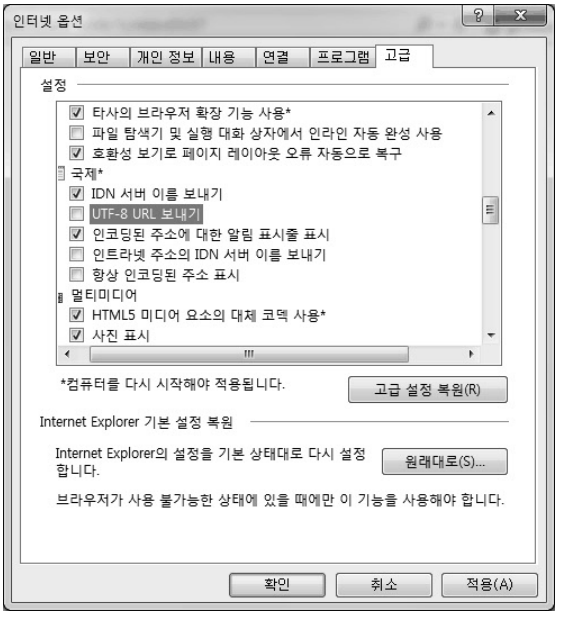
<각종 문제점 해결 안내>

● 다운로드한 파일이 열리지 않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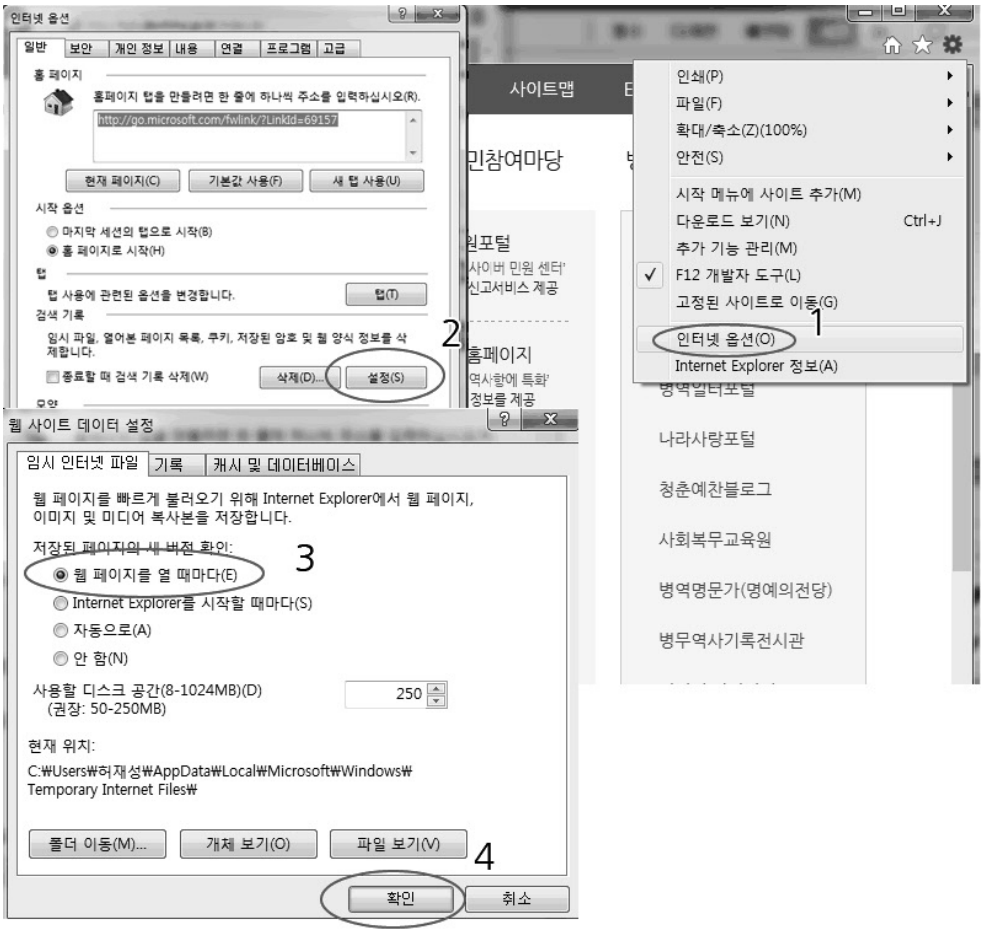
- 하단에 있는 [뷰어프로그램] 메뉴를 클릭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시고 설치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경우

- Explorer어 상단 메뉴에서 도구 → 인터넷옵션 → 고급 → (탐색)을 보시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UTF-8로 보냄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이 클릭 되어 있으면 한글 첨부파일 내려받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사오니 그부분의 클릭을 해제 하고 나서 적용시킨 후 열려있는 모든 Explorer를 여시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민원출원 (인터넷민원출원 시 Explorer옵션 설정방법)



- Explorer메뉴 → 도구 → 인터넷옵션을 선택
- 인터넷옵션에서 일반TAB의 임시 인터넷 파일의 설정버튼 클릭
- 설정화면에서 저장된 페이지의 새 버전 확인 중 페이지를 열 때마다 선택 → 확인버튼 클릭

● 윈도우7 이고 서비스팩1를 설치한 경우 설정방법

- 윈도우 버전이7이고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해서 서비스팩1(SP1)가 설치된 경우에서 Explorer →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TAB에서 반드시 팝업창 차단 체크옵션을 해제한다.

● 로그인 반복되는 경우

- 민원인이 민원포탈에서 병역판정검사 등 민원출원 시 인증창이 반복 되면서 민원출원 창으로 못들어가는 경우

<원인>

- 쿠키값 등의 충돌이 일어나거나
- 브라우저 툴바(Toolbar) 설치된 경우(툴바가 깔렸다고 100% 위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해결>

- 인터넷옵션에서 쿠키값 삭제
- 방문기록 삭제
- 브라우저 툴바(Toolbar) 삭제

● 민원인이 인증 성공 후 민원출원을 위하여 항목 입력하려는데 입력이 안되는 경우

<원인>

- teamviewer라는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동작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임

<해결>

- teamviewer를 종료시키면, 정상적 민원출원이 가능함

* 인증이나 보안관련된 오류는 상황이 워낙 다양하여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음 (상담시스템 문자 상용문구 기타 분야 참고)

2017 병무상담교재 Ⅱ

(사회복무·동원분야 등)

간행물등록번호 : 11-1300364-000002-10
초　　판 : 2004년 3월
재판수정본 : 2017년 2월
발 행 처 :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7호
전　　화 : (042) 611-4005/4023, 1588-9090
F A X : (042) 611-4081

병무청에서는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병무행정 관련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드리고자『병무상담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본『병무상담교재』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무분야가 있거나 개선·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